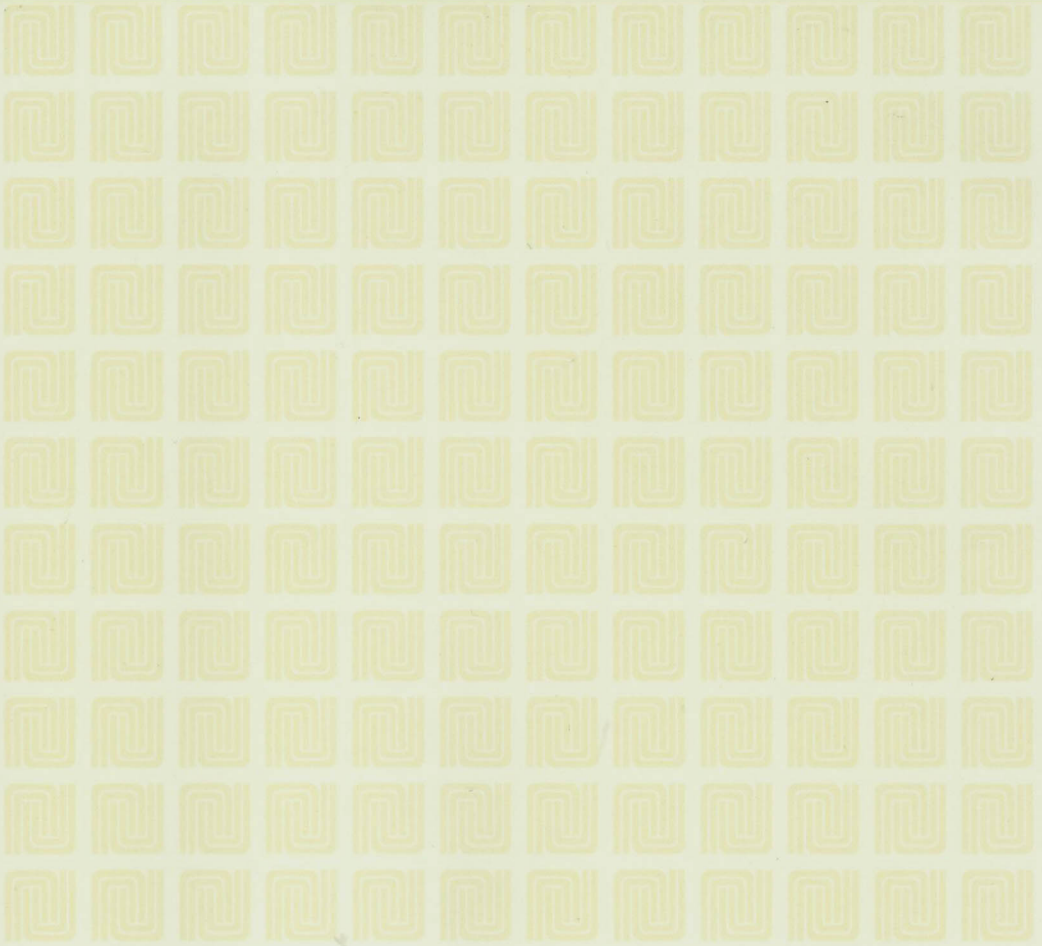




2005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5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인권백서

2005

이 금 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최 의 철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임 순 희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 수 압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통 일 연 구 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인 쇄 2005년 3월

발 행 2005년 3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2005) 북한인권백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 cm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286-1 93340

342.10911-KDC4
323.095193-DDC21

CIP2005000553

북한인권백서 2005 ▶▶▶

서 문

2004년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북한인권 개선 촉구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식량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 등 ‘안전권리’(security rights)를 위협받아왔으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여 왔다. 또한 북한당국의 핵무기 개발계획 발표와 함께 국제사회에 대한 문호개방 거부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엔인권위원회와 미국 등 서방세계의 대북 인권 개선 노력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이며, 각 사안별로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식량권은 개인의 생존과 직결된 것으로 다른 모든 권리를 향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북한에서 식량권의 침해는 다른 권리들의 악화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주민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사회일탈행위를 저지르거나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의 생존방식을 모색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체포, 고문 또는 경우에 따라 처형하여 왔다. 이와 같이 식량난으로 인한 고통과 인권 침해의 악순환은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서방국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내부적으로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개인의 경제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아직도 북한 핵문제 및 북한당국의 자유로운 현장 접근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원사업이 제약을 받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의 재현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 지속과 이에 따른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으로 인해 2003년과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 및 탈북자 보호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2005년도에도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로 논의될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국내외에 알리고 북한의 인권 남용 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중지와 개선, 그리고 북한 인권의 중장기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자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국·영문으로 발간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인권 침해실태를 독립적으로 모니터하거나 객관적인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당국의 문호개방 거부로 북한 인권실태를 직접 조사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보고서는 새터민들과의 지속적인 설문 및 면접조사, 다자간 정부기구의 보고서와 실무자와의 면담, 국제 NGO들의 실태보고서와 증언 등 다각적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가 북한 인권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건전한 매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2월

통일연구원 원장 박 영 규

요 약

2004년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일부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북한 인권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문타폰 교수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약간의 개선책이 있었으나 실천은 의문시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AI) 등 국제인권기구의 인권보고서들은 북한인권실태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지도자에 대한 우상숭배와 권력강화라는 정치체제, 비효율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 지속적인 자연재해, 핵개발에 따른 국제적 고립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통하여 북한은 인권이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정권안보 차원에서 주권의 원칙과 우리식 인권론이라는 문화상대주의 논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당국은 경제난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문제 제기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긍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04년도에 북한은 4월 29일 형법, 5월 6일 형사소송법을 대

폭 개정하였는바, 지속적인 형법의 개정을 통하여 체제방위를 위한 형법에서 범죄통제형법으로 순화시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받아 온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난 유추해석 조항을 삭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죄형법정주의를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형법에서 북한은 범죄구성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 기반하여 범죄처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4년 형법 등을 개정하면서 일반인들이 법률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대중용 법전(112개 법 수록)을 발간하는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계급적 본질과 임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등에 사형을 부과하는 등 정치적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형법도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지만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은 도(직할시) 재판소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터민(북한이탈주민)들은 공개처형의 경우 현장에서 판결이 선고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형법에서 5가지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 이외에 소와 구리 절도, 인신매매, 풍기문란 등 경제난에 따른 사회일탈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방식을 통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공개처형의 사례에서 보듯이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와 형사소송법 및 판결판정집행법 등 법규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생명권 유린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와 구속절차,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 금지를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인권보장을 위

한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와 고문 등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에서 고문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새터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북한은 형법을 개정하면서 무기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의 형벌을 신설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구체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교화소라는 공식적인 교정시설 이외에 정치범수용소(관리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등 불법적인 구금시설이 운영되어 왔다. 특히 정치범수용소는 여전히 해체되지 않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구금시설로 유지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그동안 강제노동의 존재를 부인하여 왔는데, 노동단련형의 신설을 통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처벌로 일반화되어 있던 노동단련형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노동단련대는 재판 없이 수용되고 있다. 또한 노동단련형의 경우 ‘일정한 장소’라고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노동단련형과 노동단련대와의 연관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교화소 이외 시설 명칭과 구금 사유 등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급노선의 관철을 유지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과 법에 따른 대우 등 인권유린 요소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 재판을 조직할 수 있는 규정과 함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민재판의 요소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형법 등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제도적인 긍정적 조치와는 달리,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 장애자에 대한 차별,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특히 해외여행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의 개

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말반동’에 대한 처벌은 완화되고 있으나 김정일과 가족에 대한 비판과 욕설은 용납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강제송환된 여성을 중심으로 강제낙태 등의 인권유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2003년 6월 장애인보호법을 채택하여 장애자들의 권익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최근 북한농업생산이 회복추세에 있으나 2004년에도 북한주민들은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보고서에서 국가배급량 축소와 곡물가 급등에 따라 2005년 4~6월 ‘춘궁기’가 오기도 전에 식량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공급의 부족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상당수의 북한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우월성을 주장하던 경제적 측면의 인권보장 수준이 크게 후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난에 따라 아동의 발육 부진이 지속되고 꽃제비가 거리를 횡행하는 등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의료 시설 및 의약품 부족 등으로 환자가 직접 약품을 구입해야 하고 정전에 따라 수술이 지장을 받는 등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빈부격차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범죄 등 사회일탈행위가 증가하여 인권이 유린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당국도 2004년 이러한 경제난에 따른 북한사회 내부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범죄행위를 대폭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체제보위를 위해 정치사상 교육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경제난으로 인한 출석률 저조 현상 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교과서 지급 상황 등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납북자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존재 자체의 부인으로 인해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납북자가족모임이 납북된 36명의 1974년 묘향산 촬영 사진을 공개하고 생환납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추가명단을 밝히는 등 북한내 납북자 존재가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보위부와 납치전문 공작조가 김동식 목사를 납치한 사실에서 보듯이 북한당국에 의한 납북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형법에서 정치적 성격의 월경자와 단순월경행위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등 탈북자 정책을 이원화하고 있다. 또한 7월 대규모 입국 이후 탈북자들을 남한당국의 조직적인 납치로 규정하면서 북한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당국이 법률을 개정하여 인권을 개선하는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권안보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한 법률의 개정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법과 인권현실과의 괴리 현상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 차

I.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인권	1
1.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과 인권	3
2. 북한 인권정책의 변화 추세	12
II.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25
1. 생명권	28
2. 신체의 자유	44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64
4. 평등권	77
5. 자유권	96
6. 종교의 자유	114
7. 참정권	134
8. 여성의 지위	138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실태	149
1. 식량권	153
2. 사회보장권	175
3. 근로권	187
4. 직업선택의 자유	190
5. 교육을 받을 권리	194
6. 아동권	203

IV. 주요 사안별 인권실태	215
1.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 실태	217
2. 납북억류자 실태	238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244
부록 1. 납북 및 억류자 명단	267
부록 2. 2004년 북한인권 주요 사건일지	285

표 그림목차

<표 II-1>	북한형법에서 사형의 경우	29
<표 II-2>	사형구성요건 변화 비교표	30
<표 II-3>	북한의 구금형태	52
<표 II-4>	구금시설에 보내지는 범죄	54
<표 II-5>	주민성분 조사사업	80
<표 II-6>	3계층 51개 부류 분류표	83
<표 II-7>	성분 분류표	84
<표 II-8>	복잡군중 분류표	84
<표 II-9>	해외여행 기각 실태	102
<표 II-10>	북한의 종교실태	119
<표 III-1>	1990년대 매년 식량생산	160
<표 IV-1>	해체된 수용소	228
<표 IV-2>	탈북동기별 현황	254
<그림 II-1>	북한 사회안전부 포고령	32
<그림 IV-1>	특별독재대상구역관리현황	228
<그림 IV-2>	납북자 사진	241

I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인권

1.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과 인권

북한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유엔의 인권전문기구와 국제 민간인권단체(NGO) 및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04년 제60차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또한 국제인권규약의 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해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윗뎀 문타폰 교수는 2005년 1월 10일 유엔 총회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2001)의 심의 결과와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내용(2003, 2004)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북한 지도층에게 인권관련 국제조약 준수,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법과 관행 등의 개선, 사법부 독립 구현 및 시민적·정치적 자유 확대 등 인권 개선을 촉구하였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약간의 개선책이 있었으나 그 실천은 의문시 된다고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고 인권남용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¹

또한 국제적인 민간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I)는 2004년 1월에 발간한 북한 인권실태 보고에서 식량 공급 부족이 지속되어 어린이의 40% 이상이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

¹ Special Rapporteur, Vitit Muntarbhorn,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in Any Part of the Worl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N.4/2005/34, 10 January 2005.

고 있고, 북한당국은 표현과 여행의 자유를 포함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² 미국의 인권감시단 (Human Rights Watch: HRW)은 「2005 세계보고서」에서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로 평가하고,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은 철권통치와 우상화로 북한을 통치하고, 정치, 사회 및 문화 등 거의 모든 부문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고, 국제인권규약 비준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³ 또한 미국의 민간 인권기구인 프리덤하우스는 「2005 세계의 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정치 자유와 시민 자유 모두 최하등급으로 분류하면 미얀마, 쿠바 등 9개국에 이에 속한다고 발표하였다.⁴

이와 같이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는 국제인권기구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실태를 가장 열악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증언들도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새터민들의 증언들은 비교적 일관성을 띠고 있어 우연한 일치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북한 인권실태의 심각성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에서 파생되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포드라비네크 러시아 인권운동가는 주장한바 있다.⁵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은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유산과 유교적 전통이 혼합되어 지도자의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한 전체주의적 특성을 띠고 있고, 지도층의 권력유지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물리적 힘의 남용은 인권 침해의 근원이 되고 있다.

² <<http://web.amnesty.org/web.nsf/print/COFA42909A0D4B0480256...>> (검색일: 2005.1.28).

³ <<http://hrw.drg/english/docs/2005/01/13/nkorea9850.htm>> (검색일: 2005.1.18).

⁴ 『조선일보』, 2004년 12월 22일.

⁵ 『조선일보』, 1999년 11월 28일.

가. 사회주의 건설의 유산: 권력의 집중과 물리적 힘의 남용

북한은 구소련의 사회주의 혁명 유산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북한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김일성의 평생 집권을 정당화하였다.

사회주의 혁명 완수와 국가 건설을 위해서 지도자와 국가에 대한 권력의 집중이 그 특징의 하나이다. 레닌과 스탈린의 유산이라고 불리는 사회주의체제의 전체주의적 특성은 노동계급의 독재를 주창하고, 이것을 위임받은 소수(지도자)의 권력독점 테러에 의존하는 권력 유지 및 사회주의 건설인 것이다.⁶ 레닌은 모든 권력은 지도자와 그가 이끄는 국가기관이 독점하고 동원체제에 의한 국가건설을 주창하였다. 이 과정에서 테러는 반대자들에 대한 숙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의 문제 해결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를 위해서 잘 훈련된 정당조직과 비밀경찰이 억압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레닌의 유산은 스탈린으로 이어져 국가폭력이 최고조에 달했고 모든 것이 독재자와 국가에 복종하게 하였다.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는 강화되고, 고도로 관료화되어 조직화된 국가권력의 복잡한 조직을 통해 통치되었다.⁷ 이와 같은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초기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후발 개도국들의 발전 모델로 간주되었고, 북한도 그 예외는 아니다. 소위 스탈린의 업적 및 성공으로 평가되는 구소련의 경제발전(1928~1940)은 중공업 발전과 사회복지 및 교육의 확대에서 성과가 인정되나 이것은 엄청난 인간 희생 하에 이루어진 셈이다. 곧 사회주의 혁

⁶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New York, N.Y.: Charles Scribner's Sons, 1989), Ch. 1 참조.

⁷ 위의 책, p. 23.

명의 업적은 대규모 인간 희생과 사회경제적 혜택 간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⁸ 스탈린의 통치하에서 아무도 국가테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포정치가 실행되었고 2천만에서 4천만이 희생되는 등 히틀러보다 더 악질적인 집단살해가 감행되었다.⁹

북한도 헌법 제1조에 사회주의체제임을 명시하고, 인민경제를 계획경제라고 규정하여 사회주의 경제운영의 중앙집권적 성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으로 초래된 식량난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통해서 시장개념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이지 결코 이를 대체하는 정책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¹⁰

북한의 전체주의적 성격은 사회주의 혁명 유산으로 국가제일주의와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이상숭배와 권력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인권을 유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 헌법(제11조)은 조선노동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1당 지배체제이며, 노동당을 창건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수령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유일적 영도 아래 혁명과 건설을 조직하고, 장자인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계속혁명의 상징으로 옹호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이상화 작업은 지속되고 있다.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도 위대한 지도자인 그가 지배하는 국가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정당과 비밀경찰 등 억압적인 통치수단을 독점하여 반대자들은

⁸ 위의 책, p. 236.

⁹ 위의 책, p. 27.

¹⁰ 서재진·최의철·전현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변화 실태』, 통일부 용역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참조.

물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를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하는 전체주의적 통치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전체주의적 통치행태는 레닌과 스탈린의 유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 유교적 전통: 지도자에 대한 가부장적 권위주의 강화

북한의 체제는 통치행위와 권위의 근거에 있어서 사회주의 혁명 전통과 더불어 전통적인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성격이 혼합되어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더욱 강화하였다.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의 서문에서 개정 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규정하고, 주석직을 폐지하여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김일성이 주창한 주체사상을 주민들의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여 김일성의 절대적 권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일성의 권위는 과거 유교사회와 같이 지도자의 우월한 도덕성에 기초하고 있다.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20세기 구한말시대의 학자들의 주장을 부각시켰다고 주장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자주’로 설명될 수 있다.¹¹ 그러나 북한의 자주는 대내적으로 경제적 자급자족(자력갱생),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위협에 대처하고 나아가서 정치적, 경제적 후원국인 구소련과 중국에 대한 정치적 독립선언을 의미한다.¹²

그러나 주체사상의 핵심은 김일성의 권력을 강화하는 이론으로 활용되어 수령과 인민을 하나의 사회문화적 생명체로 간주하면서 수령

¹¹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97), p. 47.

¹² 위의 책, p. 48.

독재론에 귀착하고 있다.¹³ 공산주의 혁명의 완수는 주체사상에 충실한 인간과 계급이 사회를 완전히 지배할 때 가능하다는 논리로 비약되고 있다.¹⁴

북한당국은 유교적 전통을 충분히 활용하여 김일성과 후계자인 김정일의 권위에 절대적 복종을 강조하고, 권위에 대한 공경을 위해 집단주의를 우선시하고 개인의 이익 추구를 배제해 왔다.¹⁵ 또한 ‘충효’를 상하관계의 근본으로 강조하여 활용하고 있고,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김일성과 그 후계자인 김정일의 북한지배는 전통적인 집단의 가치와 태도 및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복종이 미덕으로 칭송되고,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는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법적·제도적인 장치에 의해 보장되기 보다는 지도자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도자의 시혜로 간주되고 있다.

황장엽을 비롯한 기타 새터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신분적 특성은 유교적 봉건사회와 유사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일성은 과거 왕들 보다 호화스런 특권을 누리고 권력을 독점하였고,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는 스탈린과 마오쩌둥 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었다. 김일성의 생애를 연구한 서대숙 교수는 김일성은 “과거 조선 왕조의 왕보다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지도자”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 했다고 보다는 “특이한 동양적 전제주의”를 실천하였다고 평가하였다.¹⁶ 1960년대

¹³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3』, 1982년 3월 31일, p. 131.

¹⁴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pp. 107-115.

¹⁵ Lucian W. Pye(The spirit of Chinese Politics, 1968)와 Richard H. Solomon (Mao's Revolution and the Chinese Politics, 1971)은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을 유교적 레닌리즘으로 평가하고 유교적 전통이 통치목적으로 활용된 것을 강조한바 있다.

¹⁶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p. 21.

김일성은 북한에서 자신의 이상화가 강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북한)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와 같이 어른을 공경하고, 유교 문화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소련 당 간부에게 설명한 것은 유교적 전통이 그의 리더십 구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¹⁷

김일성은 과거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붙여진 ‘위대한 지도자’라는 칭호와 더불어 ‘인민의 태양’, ‘경애하는 수령’ 등으로 숭배되고 김일성 출생년도인 1912년을 ‘주체원년’으로 삼아 ‘주체’ 연호를 사용하는 등 그를 신격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카리스마는 장자인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가능하게 하였고, 김정일에 대한 권력집중과 이상 숭배도 지속적인 선전과 사상교육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보다 더 거만하고 무자비하고, 국가, 사회주의체제의 안전이 곧 자신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새터민들은 증언하고 있다.¹⁸

다. 사회주의체제의 쇠퇴와 인권유린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 탄생과 김일성의 지도력을 강력히 지원했던 구소련의 통치행위와 발전모델은 초기 사회주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었으나, 후기에는 발전의 제약요인이 되었다. 김일성은 한국 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건설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여 피폐된 북한 경제를 건설하고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스탈린 모델을 수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은 경제력에서 1970년대 초까지는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이후 북한은 지속적인

¹⁷ 위의 책, p. 21.

¹⁸ 새터민 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0일, 새터민 박○○,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3일, 새터민 강○○,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18일.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¹⁹ 현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남한이 1만 2천646달러, 북한은 818달러로 남한이 15.5배, 남북한 GNI격차는 1995년 23.1배에서 2000년 30.4배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²⁰ 또한 1990년대에 직면하였던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는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22만 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¹

또한 인권문제에서 북한당국이 그 동안 주장해 온 자주권은 국제정치 조류에 동떨어지고 있고, 완전고용, 무상치료와 무료교육 등은 경제난으로 유명무실한 주장으로 전락하였다. 코피 아난 등 국제정치 지도자들은 냉전종식 이후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주권과 자주권보다는 인권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04년 11월에 발간한 특별보고서에서 경제난으로 북한의 실업 내지 불완전고용은 30%에 달한다고 밝혔다.²² 또한 거의 모든 새터민들은 가동이 중단된 기업소의 노동자들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고, 무상치료와 무료교육은 그 내용이 유명무실하게 변질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상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김정일은 권력독점을 강화하고 물리적으로 인간을 개조하려는 사회조작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위대한 지도자는 자신의 지도력과 정책에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하여 지도자의 집중된 권력에 모두 복종하게 만들었다. 피에르 리굴로(Pierre

¹⁹ 최의철·신현기(공저), 『남·북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1), p. 96.

²⁰ 『중앙일보』, 2004년 12월 10일.

²¹ 『북한인권백서 2004』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37 참조. 국경없는 의사회(MSF)는 1995~1998년 사이 약 350만 명이 기아 및 기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²² 『연합뉴스』, 2004년 12월 21일.

Rigoulot) 프랑스 사회평론가는 그의 저서 『공산주의 흑막』(1997.11 출간)에서 북한정권 수립 이후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한 정치적 숙청으로 10만 사망, 강제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은 모두 150만이라고 주장한바 있다.²³

이러한 통치 행위는 사회적 창조성을 억압하고 지식인들의 개혁욕구를 싹부터 근절하는 경찰국가를 대두시켰고, 제도적인 결점을 수정하는 기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구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 시대의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 병폐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초기 경제성장에 효과적으로 간주되었던 강력한 지도자와 국가 기관에의 권력 집중과 인간희생은 결국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교조적인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또한 초기 경제성장에 안주하면서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기술혁명을 간과한 과오는 체제의 경쟁력을 극도로 약화시켰다. 특히 전체주의적 통치 행위는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결점에 대한 안전판이나 조기경보체계의 약화로 정책에 대한 공개된 대안 모색을 어렵게 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은 오직 엄청난 참화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된다.²⁴ 그러나 지도자의 교체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보다는 권력의 효과적인 통제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고, 지도자는 신체적, 정치적 생명이 다할 때까지 권력을 유지하게 된다.²⁵

²³ 『북한인권백서 2001』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17.

²⁴ 구 소련의 스탈린 통치 하에서 1930년대 초 '대 기근'으로 수백만이 희생되었고,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의 실패로 약 2~3천만 명의 농민들이 기아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 또한 북한의 경우 1990년대에 식량난으로 아사자 수가 증대되었고 현재까지도 식량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²⁵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pp. 239-242.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여러 가지 결점(수단, 제도 및 철학적 변수들)은 체제 위기와 쇠퇴를 초래하여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사회주의체제는 붕괴되어 체제 변혁을 맞게 되었고, 중국은 대대적인 체제 개혁을 단행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체제의 유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실패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²⁶ 특히 사회주의체제에서 계급투쟁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된 대규모의 처형과 정치범수용소 등은 냉전종식 이후 다민족 국가들에서 자행되었던 ‘인종청소’와 버금가는 인권유린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2. 북한 인권정책의 변화 추세

가. 북한의 인권 개념과 특성

북한당국은 ‘우리식 인권’에서 인민들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행사해야 할 자주적 권리로써 인권을 규정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⁷ 이와 같은 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인권’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근로인민 또는 공민의 권리로 대체되었고,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에 의하면 근로인민이 사회주의의 주인이므로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민이 지지하는 나라 북한에는 인

²⁶ Robert I. Rotberg, “Failed State in a World of Terror,” *Foreign Affairs*, Vol. 81, No. 4 (July/August, 2002) 참조. 실패한 국가들 중 북한은 예외적으로 지도자가 군대 및 경찰 등 억압수단에 대한 통치력이 행사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 국가이다.

²⁷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4일.

권이 고도로 존중되고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⁸

둘째, 인권문제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 아니라 자주권이다. 자주권의 대외적 의미로는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인권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배제하고 주권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고 있다.²⁹ 이와 관련, 북한당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셋째, 자주권의 대내적 의미로는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인식하고 사회적·정치적 존재로 인식될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와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시즘을 주체사상에 원용하여 위대한 지도자인 수령에 절대적 충성을 바치는 사람만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주의 혁명과 주체사상에 반대하는 계층에게는 독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문제를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주의와 국가에 대한 의무 등을 강조하고 있다.³⁰

마지막으로 북한당국은 발전권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개념은 자유보다는 물질적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는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인권 보장의 보루라고 주장하고, 북한은 완전취업, 무상치료 및 무료교육 등을 보장하여 주민들의 물질적 기초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다.³¹ 인민의 물질적 기초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²⁸ 『로동신문』, 2001년 3월 2일.

²⁹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참조.

³⁰ 『북한인권백서 2004』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15-16.

³¹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82.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자유와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인권유린은 서방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³² 특히 북한당국은 생존권의 보장 없이는 다른 권리의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개도국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강조해 온 발전권은 1993년 냉전종식 이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서 A규약을 B규약과 동등한 인권범주로 간주할 것을 결의하여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경제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물론 선진국들은 북한과 같은 개도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발전권을 이유로 인권의 억압을 정당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난과 경제난 등은 사회주의체제와 유일지배체제의 부정적인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물질적 보장과 인간의 자유는 동반하는 것, 곧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자유는 상호 강화되는 것이지 결코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구 상에 일어난 기아의 사례에서 볼 때 부국이나 빈국에서 모두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심각한 기아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노벨 수상자인 아마티야 센은 주장하고 있다.³³ 반면, 스탈린, 마오쩌둥 및 김정일 치하의 독재 정부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김정일의 유일지배 체제에 있는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직면한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에 대

³² 리봉학, “자본주의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반동적 사회,” 『근로자』, 6호 (1997), pp. 92-97.

³³ Armatyya Sen, “Human Rights and Economic Achievements,” in Joanne Bauer and Daniel A. Bell(ed.), *The East Asian Challenge for Human Righ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응하고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권문제에 대한 선택적이고 점진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 김정일 정권의 인권정책 변화 추세

1990년대 들어 냉전종식, 김일성 사망 및 식량난 악화로 인한 사회적·정치적 불안의 증대로 북한당국은 체제수호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특히 김일성 사망(1994) 이후 김정일 유일지배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체제유지 및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김정일의 인권정책과 관련된 대내외 정책의 변화 추세를 다음 두 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 첫번째 시기(1991~1998.9)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경제난과 식량난 극복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실리외교를 적극 전개한 시기이다. 두번째 시기는 북한의 헌법 개정과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방위 외교와 국제 인권레짐 참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1) 과도기적 실리외교와 인권부문 외교의 이중성 (1991~1998.9)

1990년대 초 국제사회는 냉전시대를 마감하고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어 체제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고, 중국은 실질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있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국제적 고립과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의 열세 등 체제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우선 김정일이 직면한 도전은 냉전종식 이후 급격히 악화되는 경

제문제였고 특히 식량난의 악화였다. 김정일은 1990년대 접어들어 사회주의체제 붕괴라는 도미노 현상을 목격하고, 국제적 고립에서 초래되는 체제유지에 대한 위협은 증대되었다. 특히 공업과 농업발전에 필요한 전략물자를 구소련과 동구권 및 중국 등과 북한에 유리한 지원성 교역에 의존하였으나 이러한 교역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비료 등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농업부문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 활동은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사망은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권력 이양의 과도기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 다른 도전은 냉전종식 이후 국제정치에서 커다란 변화인 인권 문제였다. 과거 냉전시대에 제2선으로 물러나 있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식량난과 관련되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제고되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이중적인 정책을 택하였는바, 유엔과 국제사회에 실리외교를 전개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고 유엔 인권레짐에 추가 가입하는 등 국제적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유엔 인권레짐의 대북인권압력에 대해서는 탈퇴 선언 등 강경 입장을 견지하였다.

북한당국은 1991년 7월 그 동안 반대해 왔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응하면서 유엔외교를 통한 체제유지를 강화하였다. 또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확보를 위해서 유엔의 인도적 전문가구들과 유엔 인권레짐에 유화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북한당국은 1981년 국제인권규약(A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그리고 B규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남한보다 먼저 가입하였다. 이어서 1990년에 아동

에 관한 권리협약에 가입한바 있고 1996년 6월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북한당국은 1980년대 중반 외교부 내에 인권문제를 다룰 인권을 신설하였고, 인권압력에 대처하고 인권문제를 선전하기 위한 ‘인권상무조’를 구성하여 김정일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였다.³⁴ 물론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보다는 대외선전을 위한 것이었다.

한편 냉전이 끝나자 1990년 대 초반부터 유엔은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유엔 인권레짐에서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유엔인권소위원회(이하 유엔인권소위)의 미국, 유럽연합국가 및 러시아 대표들은 1992년 제44차 회의부터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하였고, 이후 매년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 되는 등 유엔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의 연속적인 자연재해와 농업생산의 감소는 식량위기를 초래하여 대규모 아사자 및 탈북사태를 빚어냈다. 이에 북한당국은 1995년 8월 유엔대표부를 통해 유엔인도지원국,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및 유엔식량기구 등 국제기구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식량지원을 요청하였고, 유엔 등 국제사회는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식량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의 대북인권압력이 강화되자 1992년 김정일은 유엔 인권레짐에서의 탈퇴를 지시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³⁵ 그러나 1994년 미국과 제네바 핵 협정이 타결되는 시점에서 김정일은 외교관들

³⁴ 새터민 김○○(전 북한 외교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8월 21일.

³⁵ 위의 증언.

에게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계속 비판할 것이니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인권문제는 정권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또한 김정일은 북한 외교관들에게 북한의 인권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완전 취업, 무상치료, 무료교육 등을 강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탈북 외교관 김○○는 증언하였다.³⁶

유엔의 인권개선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의 긍정적인 개선 조치가 없자 유엔인권소위는 1997년 제49차 회의와 1998년 제50차 회의에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하 대북인권결의안)을 연속적으로 채택하고, 거주·여행의 자유보장, 불법처형(공개처형)과 정치범 억류를 중지하고, 국제인권규약 준수 및 국제인권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문호개방을 촉구하였다.³⁷ 이와 같이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북압력이 증대되자 1997년 국제인권규약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탈퇴를 통보하고, 다른 인권에 관한 유엔 협약으로부터의 탈퇴를 경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가 동년 10월 탈퇴 불가를 통보하였고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도 B규약의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은 유엔 인권레짐의 강력한 대응에 북한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및 경제적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반발보다는 유엔 인권레짐에 잔류하면서 실리를 취하고 인권문제에 상징적이고 선택적인 양보를 취하는 태도로 전환하였다.

³⁶ 위의 증언.

³⁷ 최의철, “유엔과 북한 인권,” 『생명권과 인권』, Vol. 20 (여름, 2001) (서울: 북한인권시민연합, 2001), pp. 6-7.

(2) 전방위 외교와 인권압력에 대한 점진적인 수용 (1998.9~현재)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일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당국은 김정일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국제적 지지 획득을 위해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유엔 인권레짐에 대해서 과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로 전환하는 태도를 보였다. 물론 이러한 태도 변화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을 사전에 희석 또는 차단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여 진다.

〈대내적 조치〉

북한당국은 유엔인권소위의 연속적인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불만을 표명하면서도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서 거주·여행의 자유를 신설하여 극히 제한적이나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법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행과 거주 이전 등에 대해서 사전허가가 지속되는 등 법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새터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유엔 인권레짐에 대한 형식적 수용 지속〉

한편 북한당국의 전방위 외교는 남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를 지원한다는 햇볕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보았다. 북한의 아세안포럼 가입, EU와 그 회원국들과의 외교관계 확대 및 EU와의 정치대화에서 인권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하는 등 전방위 외교를 추구하였다.

유엔 인권레짐과 관련, 2001년 북한당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

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에 가입하였고, 유엔 인권레짐이 개최한 다양한 세미나, 교육 및 기술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³⁸ 또한 지난 16년간 미루어 온 2차 정기보고서를 2000년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고, 2001년에 이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북한대표단이 심의과정에 참가하여 위원들과 토론을 전개하는 등 과거와 다른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물론 북한대표들은 규범적이고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였으나 실천적인 부문에 대한 답변은 구체성이 없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북한 대표들은 자주권과 남북분단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당국은 유엔인권이사회가 권고한 사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기는 하나 북한의 대응 조치를 2002년 5월에 보고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보였으나, 유엔 인권레짐에 대한 형식적인 수용 태도를 견지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압력 강화〉

2000년대 들어 해외 체류 탈북자 및 국제적 인도적 기구들을 통한 북한의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꾸준히 증대되었다.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EU를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이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배경에는 유엔의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으로 조사한 『북한의 영양평가보고서 2002』,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에 대한 부정적 대응,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³⁸ 북한은 2002년 필리핀에서 개최된 여성차별철폐문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2002년 스웨덴에서 개최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2002년 영국에서 개최된 국제인권규약 이행과 보고 방법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였다.

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 내용, 국제민간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로비, 그리고 특히 북한의 핵개발 의혹의 재대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전반적인 자유권의 확대, 사법권의 독립 및 형법 개정, 공개처형 금지 및 강제노동폐지, 여성지위 향상 및 인신매매 금지 등을 권고하고, 또한 식량권리 보장 및 인도적 지원 물자의 배분 투명성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북한이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는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였다. 북한당국은 유엔의 결의안에 대해 사회주의를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평화적 이행전략의 도구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것은 제국주의 수법이라고 간주하고, 특히 정성일 북한 외무성 인권과장은 EU가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³⁹ 그러나 북한당국은 2003년 5월 24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EU와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여 국제적 고립보다는 체제유지를 위해서 EU로부터의 경제지원을 계속 확보하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유엔인권위원회는 2004년 제60차 회의에서 재차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제59차 회의의 결의안 내용과 유사하나, 좀더 강경한 조치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을 제청하였고, 이에 유엔인권위원회 의장은 태국의 윗뎃 문타폰 교수를 임명하였다. 문타폰 교수는 2005년 1월 유엔 총회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안의 신속한

³⁹ 『조선일보』, 2004년 4월 22일.

개선을 요구하였다. 식량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원조물자의 배분 투명성 보장, 고문·연좌제 등 개인의 안전권 침해, 자유로운 국내외 여행의 자유 침해, 시민적 권리의 제약, 여성과 아동의 보호 등이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법과 관행을 고칠 것, 자유로운 참정권 보장, 사법부 독립과 행정제도 개선, 탈북자 처벌 완화 및 외국인 납치사건 해결을 촉구하였다.⁴⁰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북한외무성 대변인은 허위날조와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⁴¹ 또한 EU와의 관계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다시 재개하였다.

또한 미국은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 2004」를 제정하여 탈북자들의 보호와 인권 개선, 민주화 및 개방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는 등 북한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인권특사를 임명하고 예산을 배정하였고, 이를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 하였다는 것이다.⁴² 이와같이 증대되는 국제적 압력과 대내적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북한당국은 적어도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면에서 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유엔 인권레짐의 권고에 대한 점진적 수용〉

북한당국은 체제유지와 식량난 극복 등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인권레짐의 권고와 설득에 부정적인 태도만을 견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북한당국은 이미 유엔 인권레짐에 가입하는 등 외교적이고 형식적인 수용 태도를

⁴⁰ Special Rapporteur, Vitit Muntarbhorn,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in Any Part of the Worl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참조.

⁴¹ 『조선통신』, 2004년 4월 20일.

⁴² 미 국무부 한국과장 James J. Foster,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2월 3일.

보였고,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에는 국제적 고립보다는 인권레짐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체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 할 수 있는 점진적이지만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북한당국은 2003~2004년에 걸쳐 대폭적인 법적 개선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당국은 200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형법을 개정하고, 동년 5월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그동안 북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한 유추해석 규정과 형법의 대외비밀 취급 등으로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비판되었다. 그 동안 전근대적 형법으로 비판 받았던 유추해석규정을 삭제하여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벌분야도 과거의 단일화 된 노동교화형에서 무기노동교화, 유기노동교화 및 노동단련형으로 세분화 되었다. 이와 같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가는 형법을 근거로 주민들의 일탈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주민들은 형법의 근거 없이는 처벌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8년 헌법에 보장된 개인소유 확대 및 2002년 7·1조치에 따른 상행위 허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경제범죄 등을 구체화하였다. 북한당국은 2002년에는 주택, 자동차 및 개인 소비재에 대한 상속법을 제정하였고, 손해보상법 제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서 2003년 6월 장애인보호법(총 54조)을 처음으로 채택하여 장애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방관리질서 침해 범죄(제4장), 사회주의

경제 침해범죄(제5장) 및 사회주의문화 침해 범죄(제6장)들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개정된 형법을 포함한 법전을 일반주민들에게 공개하였다.

최근 북한당국이 행한 대폭적인 법 개정과 신설로 주민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개인의 상행위에 대한 법과 재판소의 역할 등 사법제도의 기능이 과거보다는 확대될 것이고, 주민들도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등 인권보호와 존중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사회와 경제운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부의 지원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국제적 압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차단하고 대외적인 선전과 이미지 개선 등 정치적 효과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까지의 북한당국의 행태에 비추어 보아 형법 개정 및 기타 관련 법 신설이 현실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그 집행가능성이 높고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기 보다는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북한당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II

시민적 · 정치적 인권실태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 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자로서 1984년 1차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16년 만인 2000년 3월에 B규약 2차 정기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유엔 인권레짐에 가입국으로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인권이사회의 가입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는 인권보장의 실천적인 측면을 보고하기보다는 법적·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어 실천적인 측면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북한당국은 국가보고서를 통해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인권보장에 우월하고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홍보 차원에서 국가인권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B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 유엔인권이사회는 2001년 7월 최종검토의견서(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북한 대표에게 인권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1년 후 보고사안과 다음 정기보고서에 보고사안 등 두 종류로 구분하여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8월에 일차적으로 북한의 대응 조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2004년 북한은 형법(2004.4.29,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 형사소송법(2004.5.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6호)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법률들을 개정하여 법률에 기반한 범죄처리를 보다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엔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조치와 국내법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지

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적인 인권위원회 설립, 사법부의 독립, 국제인권단체들에 대한 문호개방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으며 공개처형을 지속하는 등 2004년도에 북한주민의 인권실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1. 생명권

생명권과 북한의 사형규정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간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권리이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모든 사람은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 또한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사형은 당시의 현행법과 여러 국제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어야 하고,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생명권을 포함한 신체적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안전권리’에 합의하고 있고 어느 문화권이나 정부도 초법적인 처형, 고문, 집단살해 등 비인간적인 조치가 정당한 규칙 또는 전통문화의 유산이라고 주장하거나 정당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도 B규약의 당사자로서 B규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

련하여 북한은 2000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서 1998년 12월 조약법을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조약법은 “조약체결기관은 그 조약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제17조).

북한당국은 1999년 8월 형법을 개정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33개항에서 5개항으로 대폭 축소하여 법적으로 진전된 면을 보이고 있다. 2004년 4월 29일 북한이 개정한 형법에서는 1999년 개정된 형법과 마찬가지로 5가지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전히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등 반국가범죄와 반민족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2004년 개정 형법에서 사형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4년 개정 형법의 사형과 관련된 구체적 조항은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북한형법에서 사형의 경우

국 가 전 복 음 모 죄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조 국 반 역 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테 러 죄	반국가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납치하였거나 그들에 상해를 입힌 테러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민 족 반 역 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고 의 적 중 살 인 죄	탐욕, 질투, 그밖에 비열한 동기에서 또는 다른 중대한 범죄를 감출 목적으로 혹은 잔인하게 혹은 여러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목적으로 살인을 하였거나 부양 간호해야 할 사람이 사람을 죽인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적용

그동안 북한 형법의 사형 조항들은 불명료한 용어를 사용하여 법 해석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사형을 부과한다는 조문은 사형이 예외적이고 중대한 행위라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해석상 자의성의 여지가 남아 있다. 사형조문상의 개별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⁴³

<표 II-2> 사형구성요건 변화 비교표

1999년 형법	2004년 형법	비교 분석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무장폭동을 조직한 것 같은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무장폭동에 참가한 자는...(44조)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59조)	‘것 같은’ 등의 기타조항 대신 행위태양의 열거를 통한 명확화 도모
테로한 자는...(45조)	살인, 납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테로 행위를 한 자는...(60조)	행위태양의 열거를 통한 명확화 도모

또한 1999년 개정 형법에서부터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사형선고 제한연령을 1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이상의 조항에서 보듯이 북한은 나름대로 사형조항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하여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⁴³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 북한법연구회 제93회 월례발표회, 2004년 12월 9일.

공개처형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의 형법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그 동안 북한당국은 국제인권단체들에 대해 특별한 경우에만 사형을 집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형판결과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여 왔다. 그런데 2차 정기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최근 3년간 사형집행건수를 밝히도록 요구하자 1998년 판결 6건, 집행 5건, 1999년 판결 4건, 집행 4건, 2000년 판결 5건, 집행 4건, 2001년 3월 현재 판결 및 집행 건수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형법규정과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새터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경제난에 따른 사회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정치범과 일반 주민들의 생명권은 위협받고 있다. 북한에서 형법 규정을 벗어나 생명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공개처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당국은 1997년의 한 포고령에서 협동농장에서 알곡을 훔쳐가는 농민들을 공개 총살한다고 경고하였다. 이 포고령은 북한의 사회안전부가 1997년 8월 5일에 발표하여 배포한 포스터이다.

포 고

남알를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남알를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1. 남알를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2. 남알를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3. 남알를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4. 남알를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5. 남알를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부
 1989.7.15. 5호

북한에서 사형은 “계급적 원수들의 더러운 운명에 최후의 종지부를 찍는 무자비한 혁명의 철추이며 계급투쟁의 확고한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위력적인 법적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사형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수시로 범법자들을 공개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3년 10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I)는 북한 관련 특별보고서에서 북한당국에 의한 공개처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사형은 북한에서 정치범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개적인 사형선고를 목격했던 사람들과 전에 수감되었던 사람들, 방북자들은 사형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범에 대한 사형이 증가하고 있고, 처형자도 매년 수십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형집행은 총살이나 교수형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사형판결을 받은 죄수는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노동자·학생들이 집결한 대중모임 앞에 끌려나와……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997년 1월 AI는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1970년 이후 1992년까지 최소한 23명을 공개처형하였다. 보고서가 인용한 증언자 대부분이 원산·청진·함흥·신의주·평산·평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최소한 1건 이상의 공개처형을 목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외부에 알려진 공개처형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노동교화형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은 도(직할시)재판소와 중

양재판소에서만 관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27조, 제129조). 인민 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26조). 그런데 2004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1심과 2심을 구분없이 ‘재판’이라는 장(제7장)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던 1999년 형사소송법과 달리 제1심재판(제9장)과 제2심재판(제10장)을 별도의 장으로 독립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형집행에 대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형사소송법에 사형은 사형집행지 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검사의 참가 하에 집행하되(제421조, 제4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9조). 그리고 형벌집행기관은 사형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3일안으로 담당 재판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제423조).

이러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및 사형집행과 관련된 법조문과 괴리되는 대표적인 인권유린행위가 공개처형이라고 할 수 있다. 새터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절도 등 경미한 경제범죄를 포함하여 뚜렷한 기준 없이 실시되어 왔다고 한다. 1999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의 집행은 담당 사회안전기관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제295조). 인민보안원 등 사형집행자들은 사형대상자들의 반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형집행 전에 구타 등으로 사형대상자들의 반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끌고 나와 간단한 판결문을 읽은 후 바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⁴⁴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사형집행기관으로 사회안전기관

이 삭제되고 ‘형벌집행기관’(제422조)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1998년 개정된 판결판정집행법에는 사형의 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은 기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4조). 공개처형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공개처형은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실시되고, 학교와 기업소, 농장 등에 공개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리 통보된다. 공개처형 과정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경력과 죄명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인민재판소에서 파견된 판사의 처형판결에 따라 즉각 시행되고 있다.⁴⁵ 다만, 검사의 참가 하에 사형을 집행(형사소송법 제421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규정이 준수되고 있는 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판결판정집행법에 따르면 사형은 총살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2조). 이에 따라 처형방법으로 보통 총살형이 사용되며 교수형도 사용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처형하는 과정은 눈을 가리지 않고 처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민보안원이 죄명을 밝히고 공개처형을 지시하면 9발을 발사하게 된다.⁴⁶ 1998년부터 머리가 나빠서 범 죄를 저질렀으니 머리에 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머리에 총을 9발 발사하여 처형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⁴⁷

식량난이 가장 극심했던 1997년과 1998년에 사회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처형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⁴⁴ 새터민 박○○, 김○○, 인터뷰 시 증언.

⁴⁵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8년 9월 8일.

⁴⁶ 새터민 손○○,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8년 9월 9일.

⁴⁷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8월 31일.

비인간적인 공개처형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인식은 매우 낮다. 최근 총살형과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 지자 북한주민들은 길을 가다가 시체를 발견해도 안타까움이나 별다른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는 등 ‘생명’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새터민들은 공개처형이 김일성 사망 이후 일시 중단되었다가 1995년 말부터 재개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⁴⁸ 최근 경제난,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일탈현상이 증가하면서 공개처형의 적용대상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터민들의 증언을 통한 공개처형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반체제문제와 관련된 공개처형: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는 경우이다. 2002년 함북 온성군 상화리에서 증인과 같은 동네인 심○○ 가족 전체가 조국반역죄로 체포되어 공개총살당하였다고 한다.⁴⁹ 윤○○은 1997년에 김만금 농업위원회 위원장과 개성시 당 책임비서 등이 반당·반혁명 간첩혐의자로 몰려 평양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간부들 배석 하에 공개처형 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⁵⁰ 그리고 새터민 석○○에 의하면 북한은 1998년 4월 황해북도 송림시에서 인민보안성 간부 등 13명을 공개처형 하였다고 한다.⁵¹ 새터민 마○○에 의하면 함북 무산에서 조직

⁴⁸ 새터민 정○○, 장○○, 홍○○은 1995년 하반기에 김정일의 ‘친필방침’에 따라 시·도별로 공개처형이 재개되었다고 증언하였다.

⁴⁹ 새터민 조○○,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0월 19일.

⁵⁰ 새터민 윤○○,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0년 5월 24일.

⁵¹ 송림시는 무역항으로 김정일이 조직비서로 있을 때 황해제철소에 투자하여 최첨단

폭력배들이 두목의 이름인 ‘성도’ 만세를 제창하는 등 두목을 숭배하였다는 정치적 죄목으로 두목이 처형당하였다고 한다.⁵²

남한정보와 연관된 행동에 대한 처벌이다. 한 새터민은 1989년 자신이 군 생활을 하던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연대에서 강원속(21세)이라는 하전사가 남한 뼈라를 보고 탈영하였다가 체포되어 연대 사격장에서 재판도 없이 총살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⁵³ 김○○은 친구인 김정순의 아버지 김정래가 집에서 남조선 뼈라와 총이 발견되어 반혁명분자로 몰려 총살당하고 친구 집은 추방당하였다고 한다.⁵⁴ 간부들에 대한 저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이다. 새터민 김○○에 의하면 1996년 함경북도 상창에서 곡식을 절도하다 무산 진하에서 체포될 때 인민보안원을 구타하여 사망케 한 현철남이 처형당하였다고 한다.⁵⁵ 김○○에 의하면 유상철은 1996년에 사회안전원과 폭력시비로 공개처형을 당했는데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보기를 보였다고 증언하였다.⁵⁶ 이○○에 의하면 1998년 3월 15일 경 해주에서 부부가 공개처형 당하였는데, 인민보안원과의 다툼이 원인이 되었다. 이들 부부는 1997년 2,000원을 빌려준 뒤 갚

기술을 도입하였는데, 경제난으로 설비를 절취하는 등 당기관이나 보위기관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였다. 그러자 1998년 4월 인민무력부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할데 대하여’라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1개 여단으로 송림시 전체를 봉쇄한 다음 인민무력성 보위사령부를 투입하여 국가물품을 수색하여 많이 적발, 비사회주의 현상이라고 13명을 처형하였다고 한다.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9년 5월 20일.

⁵² 새터민 마○○,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17일.

⁵³ 중국 현지에서 탈북자와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10월 19일.

⁵⁴ 새터민 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7월 6일.

⁵⁵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17일.

⁵⁶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0월 20일.

지 않자 채무자를 때리고 집기 등을 가져왔는데, 채무자가 해주 시 인민보안원을 내세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인민보안원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다투다 체포되어 처형당하였다는 것이다.⁵⁷ 서○○은 1998년 원산에서 조직폭력배(홍성철 중심의 조직폭력배, 일명 ‘홍가네’)들이 간부들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7명이 집단적으로 공개처형 당했다고 증언하였다.⁵⁸

- ② 경제사범에 대한 공개처형: 경제사범과 관련한 공개처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가기물의 절도와 소의 절도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기물은 구리를 들 수 있다. 1994년 9월 서○이라는 통신대대 하사가 통신선을 절도하다 발각되어 공개적으로 총살을 당하였다고 한다.⁵⁹ 또한 이○○, 이○○ 형제가 1997년 봄 탄광의 동선을 절도하여 중국에 판매하다 발각되어 총살을 당하였는데, 피해자의 아버지는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⁶⁰ 새터민 김○○에 의하면 명천군 룡암구에 거주하는 림철산이라는 자가 기업소에서 관할하는 염소를 훔친 공범 4명과 함께 처형당하였다고 한다.⁶¹ 새터민 남○○에 의하면 임철산이 9명과 공모하여 염소목장에서 가축을 도살한 죄로 1998년 11월 처형당하였다고 한다.⁶² 새터민 서○○은 1998년부터 다

⁵⁷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8월 31일.

⁵⁸ 새터민 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1월 3일.

⁵⁹ 새터민 박○○,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6월 29일.

⁶⁰ 새터민 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7월 6일.

⁶¹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6월 29일.

⁶² 새터민 남○○,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17일.

섯 마리 이상 소를 절도한 자들에 대해 공개처형을 실시하였는
바 8마리를 훔친 일가족에 대한 공개처형을 보았다고 증언하
였다.⁶³

다음으로 조직적인 절도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이다. 새터민 엄
○○에 의하면 김웅주, 김웅길 등 남자 3명이 승용차, TV, 오토
바이 등을 훔친 죄로 청진시 수남장마당에서 공개처형 당하였
다고 한다.⁶⁴ 윤○○은 1999년 청진시 청암구 청암장마당에서
형제가 일제 중고차를 중국에 밀수한 혐의로, 2000년 청진시 나
남구역 나남장마당에서 12명이 군인으로 가장해 조직적으로 식
량을 절취한 혐의로, 공개처형 당한 것을 증언하였다.⁶⁵

- ③ 사회일탈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주로 경제난에 따른 사회일탈
행위 방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개처형으로 대표적인 사
례는 인육사건과 인신매매를 들 수 있다. 자매 새터민인 장○○
과 장○○은 1995년 12월 평양 만경대구역에서 인육판매사건
으로 일가족 5명이 공개처형 당했다고 말하였다.⁶⁶ 새터민 유○
○은 1997년 4월 평양 용성구역 장마당에서 인육을 팔다 적발
되어 시부모, 아들과 며느리 등 4명이 공개처형 당하였다고 증
언하였다.⁶⁷ 귀환 납북자 이○○은 1997년 함경북도 함주군에
서 인육사건의 현장을 목격하였고 관련자의 공개처형을 증언하

⁶³ 새터민 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1월 3일.

⁶⁴ 새터민 엄○○,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6월 29일.

⁶⁵ 새터민 윤○○,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10일.

⁶⁶ 새터민 장○○, 장○○,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8년 5월 14일. 이후
통일연구원에서 인터뷰한 새터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증언하였다.

⁶⁷ 새터민 유○○,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0년 11월 22일.

였다.⁶⁸ 1998년 2월 함북 온성군 온성읍에서 인신매매와 관련된 6명에 대한 공개처형이 실시되었고,⁶⁹ 1999년 5월 회령시 유선 동에서도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혐의로 한 여성이 공개처형 되었다.⁷⁰ 2000년 5월 김○○은 인신매매 사건으로 인해 회령에서 공개재판을 받고 공개처형당하였다고 한다.⁷¹

다음으로 풍기문란 등의 사회일탈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 10월 온성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남녀 4명이 술 먹고 옷 벗기 내기를 한 것이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다고 한다.⁷² 새터민 박○○에 의하면 1997년 남편의 4촌 형제인 김○○이 불량배로 친구를 구타하였는데 사망한 줄 모른 상태에서 중국으로 피신하였다가 체포되었는데, 디스코 춤을 추는 등 수정주의 날나리풍에 물들었다고 처형당하였다고 한다.⁷³ 1999년 1월 온성에서 여자 2명, 남자 1명이 처형당하였는데, 이들은 동창회에서 술 먹고 퇴폐적인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단련대에 보내졌었다. 그런데 부모가 중앙당에 신소한 이후 역으로 사형으로 형이 바뀌어 처형당하였다는 것이다.⁷⁴ 새터민 강○○에 의하면 피해자 최민성은 장마당에서 깡패질을 일삼던 자로 ‘민심소란’ 죄목으로 1995년 공개처형 당하였다고 한다.⁷⁵

⁶⁸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7일.

⁶⁹ 새터민 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0년 5월 30일.

⁷⁰ 새터민 주○○,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0년 11월 17일.

⁷¹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1월 13일.

⁷² 새터민 문○○,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6월 29일.

⁷³ 새터민 박○○,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3일.

⁷⁴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8월 31일.

⁷⁵ 새터민 강○○,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17일.

④ 정치범수용소 내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새터민 안○○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는 약식 재판에 의한 처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위부원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⁷⁶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탈출하다가 체포되는 경우이다. 정치범수용소의 경비대원으로 근무(1983.5~1986.6)한 경험이 있는 새터민 최○○은 1985년 「11호 관리소」(함북 경성 소재)에서 할머니, 아들, 손자 3명 등 5명의 일가족이 도주하다 3일 만에 체포되어 공개처형 되었다고 밝혔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전체 정치범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가운데 기관총, 자동보총으로 무장한 경비대원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어른 2명은 교수형, 아이들 3명은 총살형에 처해졌으며, 수용소의 보위부원들은 공개처형 직후 정치범들로 하여금 죽은 시체를 향해 돌을 던지게 함으로써 “탈출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감을 조성했다.⁷⁷

또한 새터민 안○○은 정치범의 체포·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3국(예심국)에서 행해지는 자의적인 비밀처형의 실상에 대해서는 7국의 보위부원·경비대원 조차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람의 기름을 짜서 화장품을 만든다”든가 “사람의 힘줄로 채찍을 만든다”는 등의 국가안전보위부 3국 내 인권유린 실상에 대한 소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그는 경비대원들 중에는 개인적인功名심과 입신을 위해 정치범을 살해하고 이를 탈출기도로 조작하

⁷⁶ 새터민 안○○,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6년 7월 9일.

⁷⁷ 새터민 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6년 7월 8일.

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⁷⁸

- ⑤ 교화소 내 공개처형: 새터민 이○○은 개천교화소에 수감(1987.12~1992.12)되어 있는 동안 9번의 공개처형(남자 7명, 여자 2명)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녀의 증언에 의하면, 공개처형은 교화소 부소장의 주관 하에 수감자들을 집합시킨 가운데 교화소 내 공장건물 구내마당에서 진행되었다. 1990년 평양 돌격대소속 취사원 출신인 서○○(당시 23세, 여자)은 파손된 생선품을 숨겼다가 적발되어 공개처형 되었다.⁷⁹ 새터민 유○○은 북한에 들어가 체포되어 수감되었을 때 청진 25교화소에서 종교문제를 꺼냈다는 이유 등으로 2명의 주민이 총살당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였다.⁸⁰

공개처형 주장에 대하여 북한은 적대세력의 날조라고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다만 2차 정기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한 1건에 대해서는 시인하였다. 1992년 10월 함흥에서 폭력행위 상습자로 자신의 친조부모 주종은(84)과 최연옥(72)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죄로 주수만에 대하여 공개처형을 실시한 경우이다. 북한이 유일하게 시인한 이 처형도 그 지역주민들의 균중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종검토 의견서에서 사형제도와 관련된 형법조항을 국제협약의 관련 규정에 일치시키고 어떤 형태의 공개처형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조항을 재검토하고 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2001년 5월 발표

⁷⁸ 새터민 안○○,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6년 7월 9일.

⁷⁹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6년 6월 12일.

⁸⁰ 『연합뉴스』, 2002년 2월 17일.

된 연례보고서에서 AI는 “북한 내에서 공개처형과 고문, 정치범 구금 등 인권침해가 은폐된 채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당국의 정보통제로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⁸¹

공개처형은 북한의 식량난이 심했던 1997~1998년에 가장 빈번히 집행되었다는 것이 새터민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2000년 이후에 범죄가 다시 증가하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개처형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과거와 같이 사전에 공고하고 주민을 동원하여 운동장에서 집행하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마당과 역전 등에서 예고 없이 공개처형을 집행한다고 새터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고문을 증거로 공개처형의 금지를 요구한 것을 계기로 사전 예고 없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새터민 홍○○에 의하면 최근 김정일이 “사회주의 나라에 총소리가 너무 자주 난다”는 이유로, 그리고 김○○은 공개처형은 너무 과도하다는 여론 때문에 2003년 3월부터 삼가겠다고 당국이 발표하여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⁸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2004년에도 공개처형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³

이와 같이 공개처형 등 생명권에 대한 인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2004년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 입각한 사형의 선고와 집행으로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⁸¹ Amnesty International, *Annual Report 2001* <<http://www.web.amnesty.org/web/ar2001.nsf/webasacountries/KOREA+Democratic+Peoples+Republic?OpenDocument>>.

⁸²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0월 27일.

⁸³ 통일연구원에서는 새터민들의 공개처형에 대한 증언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북한당국의 법의 기능과 사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개처형의 지속 여부와 집행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속적으로 자료의 수집을 통해 밝혀나가야 한다.

2. 신체의 자유

불법구금 및 고문

신체의 자유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과 자율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근원적인 요구인 동시에 인간존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침해된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체의 자유, 즉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불법체포 및 구금,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신체의 자유에는 사전영장에 의하지 않은 불법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으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처벌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제5조)과 국제인권규약 B규약(제7조, 9조 및 20조)에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으며,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않고,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일명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3년 ‘비엔나선언’에서는 어떠한 상황, 특히 전쟁 시에도 ‘고문방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유엔회원국들의 조속한 동 조약에의 가입이 요청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8년 9월에 개정된 북한 헌법에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9조). 또 북한은 1992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규정하였는데, 2004년 형사소송법까지 유지되고 있다(제5조). 그리고 ‘수사와 예심’(제4장)이라고 하나의 장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던 1999년 형사소송법과 달리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제6장), ‘예심’(제7장)으로 독립하여 규정하는 등 형사소송절차를 보다 엄밀하게 보완하고 있다. 예심기간(제1절), 피의자의 심문(제3절), 체포와 구속처분(제4절)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사과정과 예심과정에서 범죄혐의자의 인신 구속과 그 기간을 엄밀하게 하는 조치를 보완하였다.

특히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와 구속절차를 법률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헌법에 규정된 대로 형사소송법에서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람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제177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포는 수사원과 예심원이 집행하되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제180조). 구체적으로 예심원이 피심자를 구속처분하

려 할 경우 체포영장승인 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1조). 특히 그동안 구금과 관련하여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아 왔다.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려준다”(제183조)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이러한 조항이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왔던 정치범의 실종에 대한 가족의 통지에도 적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처분의 종류(제184조)는 구류구속처분(제185조~제188조), 자택구속처분(제189조), 지역구속처분(제190조)으로 분류되어 있다.

북한은 1999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수색과 압수에 대해서도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다. 수색, 압수를 실시하려는 예심원은 압수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17조). 그리고 실제로 수색과 압수를 시작할 경우 압수결정서를 제시하고(제218조) 2명의 입회인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1조).

이와 같이 적법절차에 의한 구금과 수사를 실시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여러 조항에 걸쳐 고문과 다른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심문과 관련하여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시인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제167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인을 심문하는 경우에도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된다(제229조)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개정 형법에서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형사책임을 지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253조)고 불법 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252조)고 체포, 구인, 압수, 수색시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 시 피의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불법행위와 고문 등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색·압수할 때에는 각각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속처분결정서나 수색·압수결정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수사관과 예심원들의 증거조사, 구속처분, 수색·압수 등의 강제처분 시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전영장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신체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여전히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터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을 자행하는 등 실제에 있어서 비인간적인 처우가 만연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나 당 정책을 어겼을 때는 처벌의 가혹함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범죄용의자의 초보적 인권까지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구금이나 고문에 대해서 새터민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북한으로 송환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주리를 틀고 두 팔 평행으로 들게 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물매가 안겨지고 말하면 ‘거짓말한다’ 하고 입 다물면 ‘주둥이 붙었는가’ 하고 생트집이니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을 바엔 입을 완전히 다무는 것이 상책이었다.⁸⁴

일주일간 교화소(꽃빠꾸)에 갇혀 맞아대고 돈과 일체 물건을 몽땅 빼앗겼으며 아침 5시에 일어나서는 심문이 시작된다. 중국에서 누구와 접촉했고 어떤 안기부 임무를 맡고 왔는가 하는 터무니없는 질문과 몽둥이에 얻어맞기가 떡 먹듯 하였다. 그리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아 세수는 물론 대소변도 보기 힘들다.⁸⁵

우리 방에서 두 사람이 굶고 맞아 죽어나갔다. 죽는 사람 놓고도 이런 놈은 백 개 천 개 죽어도 아깝지 않다 하면서 “너희들도 봤지? 너희들의 끝장도 이럴 것이다” 하고 욕질하였다.⁸⁶

여성 탈북자들에게 회령시 집결소에서 남성 안전원들이 옷을 모두 벗으라고 호통을 쳤고 손에 든 몽둥이로 머리, 배, 가슴, 허리 등을 마구 때려 매가 무서워 옷을 모두 벗지 않을 수 없었다. 수감기간 동안 최모라는 28세의 남자가 탈출하다 붙잡혔는데, 만나절이나 구타하여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백여 명의 죄수들을 불러 모아 탈주범의 참상을 보도록 하였다.⁸⁷

위에서 보듯이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주 증언되고 있다. 2003년 4월 남양으로 송환된 이○○ 여성은 온성보위부와 만포보위부에서 옷을 벗기고 남자보위부원들이 몸수색을 하였다고 한다.⁸⁸

⁸⁴ 중국에서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인터뷰에서 탈북자 남성(52세, 함경북도 온성군)의 증언. 2001년 5월 2일.

⁸⁵ 탈북자 여성(함경북도 은덕군)의 증언, 2001년 5월 2일.

⁸⁶ 탈북자 남성(함경북도 길주군)의 증언, 2001년 5월 2일.

⁸⁷ 탈북자 남성(함경북도 청진시)의 증언, 2001년 5월 2일.

⁸⁸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0월 19일.

북한은 교화소와 구류장에서 고문과 학대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구류장 관리규정, 교화사업규정 등에서 고문과 학대를 금지하는 여러 가지 조문과 규정을 설정하고 이것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개별적인 법집행 일꾼들이 교화소 규정을 어기고 반항하는 수감자들을 때리는 등의 행위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당기관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법집행 일꾼들을 비판도 하고 처벌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998년 3건, 1999년 1건, 2000년 2건 고문, 학대에 대한 신고신청이 있었는데, 모두 행정 처벌하였다고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법률규정과 법률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고문이 근절되었다는 북한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위원들은 북한당국의 보고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정말 특수한 나라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종검토의견서에서 부당한 처우와 고문 및 여타 가혹행위는 모든 경우에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신속하게 인지, 조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집행자들에 의한 권한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억류, 구금 장소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제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다. 2002년 8월 이러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한 답변서에서 북한당국은 정규적인 고충처리기관을 통해 법집행관리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문제는 장래에 보다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새터민의 증언에 의하면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각종 구금 시설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및 사형 등이 자행되고 있다. 최근 새터민들은 김정일의 지시로 가혹행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증언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대로 독립적인 감시기구가 존재하는 제도적 형태가 아닌 최고지도자의 교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민보안성의 분주소 소장이 “너희 같은 것들은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⁸⁹ 주로 구타는 구금시설의 지도원이 직접 가하기보다는 지시에 따라 수감자들이 집단으로 구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새터민 문○○은 중국에서 체포되어 송환된 후 남편이 1999년 11월 예심 중 구타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⁹⁰ 또한 새터민 김○○에 의하면 1997년 3월 은덕군 오봉구 인민보안성 분주소에서 동네사람을 매달아 구타하였는데 장 파열로 사망하였다고 한다.⁹¹ 새터민 김○○에 의하면 1999년 부친이 무산군 인민보안성 구류장 수감 중 구타당하여 심하게 멍든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⁹² 새터민 조○○에 의하면 피해자 여○○이 절도죄로 체포되어 구류장에서 구타, 굶주림으로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⁹³ 새터민 이○○에 의하면 본인도 집결소에서 나무 몽둥이로 구타를 당하고 족쇄를 채운 채 나무에 매달리는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⁹⁴ 새터민 박○○에 의하면 1996년 청진시 승평구역 노동단련대에서 지도원이 수감자에게 배고파 탈출을

⁸⁹ 새터민 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7월 6일.

⁹⁰ 새터민 문○○,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6월 29일.

⁹¹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3일.

⁹²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17일.

⁹³ 새터민 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3일.

⁹⁴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31일.

시도하던 피해자 박철에 대해 몰매를 지시하여 구역병원으로 이동 중 사망하였다고 한다.⁹⁵ 새터민 신○○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개성시 보위부에 수감 시 전기고문까지 당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⁹⁶ 이와 같이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구타, 굶주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는 피해자가 다수 발생⁹⁷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터민 김○○에 의하면 노동단련대에 1달 보름 정도 수감된 적이 있었는데 노동단련대에서 구타행위를 없애라는 김정일의 방침으로 노동단련대의 간수들에 의한 직접적인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집단구타 및 비인간적인 처우는 지속되고 있다고 새터민은 증언하고 있다.⁹⁸

구금 및 교정시설과 인권유린

북한의 구금시설은 정치적 범죄와 경제적 범죄 등 정치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범죄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970년대 초 북한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당시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성)으로부터 국가안전보위부(당시 정치보위부)를 독립시켰다. 이것은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을, 인민보안성은 기타의 범죄자를 취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두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한편, 상호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북한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기본형벌과 부가형벌로 구분되고 있다. 기본형벌은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으로

⁹⁵ 새터민 박○○,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9월 7일.

⁹⁶ 새터민 신○○,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11월 30일.

⁹⁷ 새터민 강○○,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3일.

⁹⁸ 새터민 윤○○,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10일,
새터민 신○○,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1월 3일.

세분화되고 있다(제28조).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무기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을 추가하였다. 무기노동교화형은 15년 이상, 유기노동교화형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되어 있다. 무기 및 유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교화소’에 수감되어 노동을 통하여 교정을 실시하고 있다(제30조). 이와 같이 정치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 중 교화형을 선고받는 범죄자는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 관리하는 교화소에 수감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인 교정 시설 이외에 북한에는 정치범수용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의 구금시설이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정치범들은 국가안전보위부 농장지도국이 관할하는 ‘관리소’에 수용된다. 이 관리소는 정치범수용소로 통상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불린다. 인민보안성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은 ‘관리소’로도 불린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의 경우 범죄 형태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인민보안기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범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의 수사는 검찰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표 II-3> 북한의 구금형태

범죄유형	경제범·강력범 등	정치범
관리기관	인민보안성 교화국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수용시설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관리소

‘교화소’는 일반 교도소와 같은 형태의 감옥이며, 인민보안성이 관리하는 구금시설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재판소에서 사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자를 수감하는 곳이며, 대략도 단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새터민 안○○은 북한당국이 최근 식량난과 교화소 내 사망률 증가를 이유로 강원도 원산 천내교화소와 신의주 제3교화소를 통합하는 등 교화소를 통폐합시키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은 1995년 4월말 ‘평양축전’ 기간 동안 북한을 방문한 AI에 북한에는 ‘사리원교화소’를 포함하여 3개의 교화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곳에는 약 800~1,000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국가사범(정치범) 약 240명은 ‘형산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차 정기보고서 심의과정에서 국제인권기구의 현장 방문 요청에 대하여 국제사면위원회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도록 허용하였지만 인권문제를 공화국에 반대하는 불순한 의도에 악용해 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곤란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4년에 개정된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구금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4> 구금시설에 보내지는 범죄

범죄 유형	교화소		일정한 장소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14개범죄)	국가전복음모죄 등 5가지	국가전복음모죄 등 14가지	-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16개 범죄)	-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등 15가지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등 10가지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죄(104가지)	국가재산략취죄, 국가재산강도죄 등 6가지	국가재산 훔친 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 83가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 76가지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26가지)	력사유물 밀수, 밀매죄, 마약 밀수, 밀매죄 등 3가지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등 25가지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등 16가지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39가지)	-	집단적 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 등 30가지	직무집행방해죄, 허위날조, 유포죄 등 29가지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20가지)	-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 15가지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 18가지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26가지)	고의적중살인죄, 유괴죄 등 3가지	고의적중살인죄 등 25가지	정당방위초과중상해죄 등 13가지

북한은 2차 정기보고서에서 교화소 수감기간은 형벌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5년까지이고 교화소는 3개이며 교화소 수감자 수 및 평균 형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연 도	수감자 수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 수
1998	1,153	5.2
1999	3,047	14
2000	1,426	6.5
3년간 평균형기	3 년	

2차 정기보고서에서 교화소의 감금조건은 교화사업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철저히 집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화소 내 고문과 구타 등 반인간적 처우가 일상화 되어 있어 인권유린실태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입국한 이○○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⁹⁹ 개천교화소는 원래 국가안전보위부 관할 남신의주 소재 여자교화소가 1982년 3월 개천으로 옮겨 오면서 인민보안성 관할 관리소로 바뀐 것이다. 북한 내 최대규모 중 하나인 개천교화소의 전체 수용능력은 600여 명(1개 감방에 20여 명)이다. 그러나 개천교화소에는 약 6,000명의 죄수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000여 명의 여성수감자도 포함되어 있다. 1개 감방(가로·세로 각각 약 8m, 6m)에는 보통 80여 명이 수감되어 있다. 수감자 대부분은 암거래·절도 등으로 인해 잡혀 온 경제범이며, 강도·살인범도 포함되어 있다. 새터민 유○○에 의하면 막내고모의 친구인 0연화라는 여성이 부화사건으로 잡혀갔었는데 임신한 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평남 증산교화소에서 유산 후 사망하였다고 한다.¹⁰⁰ 새터민 지○○은 본인의 교화소 생활 중 간수들이 여성 죄수들을 ‘개별담화’라며 불러내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증언하였고¹⁰¹, 여성 죄수들이 출산하는 경우에 간수들에 의해서 영아살인이 자행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노동법상 규정은 일반노동의 경우 1일 8시간, 재소노동은 1일 10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수감자들은 오전 5시에 기상하여 다음 날 오전 0시 30분까지 하루 17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다. 교화소 외부

⁹⁹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6년 7월 12일.

¹⁰⁰ 새터민 유○○,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3일.

¹⁰¹ 『조선일보』, 2003년 4월 2일.

지역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1년에 2회(봄·가을 각각 10일 정도, 파종 및 수확 시) 정도이며, 신체건강한 사람만을 차출하여 내보낸다. 식사는 강냉이 300g(규정은 700g)과 염장배추국이 제공되며, 작업량 미달 시 240g, 3회 연속 미달 시 180g, 독방·예심방 수감 시 90g으로 배급이 줄어든다. 피복은 10년에 1벌 지급되고 있다.

교화소 내의 열악한 상황은 사망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새터민 이○○에 의하면 도시건설대 생산지도원이었던 강재환이 농장 사람들과 소를 잡아먹은 것이 발각되어 고기는 회수당하고 3,000원을 변상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전거리 교화소’에서 생활하다 호송도중 급사하였다고 하는데 사유는 교화소 생활로 인한 허약이었다고 한다.¹⁰²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교화소 이외에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에 규정되지 않는 형벌과 구금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대표적인 형벌로 ‘노동단련’을 들 수 있으며 집행소, 노동단련대 등의 구금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형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는 노동단련이 ‘처벌’의 하나로 들어 있다. 판결판정집행법(1998년 1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60으로 수정보충) 제18조 집행중지·정지 판정 사유 제1호에 “노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로동의 처벌을 받은 자”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일 경우” 집행을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터민의 증언대로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처벌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북한은 ‘로동단련형’을 형벌의 하나로 신설하였다. 그동안 노동단련이 어

¹⁰²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10월 12일.

편 법적 근거에서 집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노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노동단련형 2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단련형 집행기간에 국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된다고 규정(이상 제31조)되어 있는데, 집결소 혹은 노동단련대에 구금되었던 새터민들의 증언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형법에 규정된 ‘일정한 장소’는 집결소와 노동단련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형법에 규정된 총 245개의 범죄 조항 중 노동단련형이 규정된 조항은 총 165개조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정상이 무거운 경우 노동교화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반국가범죄에는 노동단련형이 없지만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과반수가 노동단련형을 두고 있다. 특히 경제관리질서, 국토관리, 환경보호, 노동행정질서, 사회주의문화 침해에 관련된 범죄는 거의 모든 조항에서 노동단련형을 두고 있다.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경미한 범죄의 대다수에 노동단련형이 적용되고 있으며 신설된 구성요건에 대폭 적용되고 있다.¹⁰³ 특히 39개 범죄조항은 전적으로 노동단련형만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단련형으로 규정된 범죄의 대부분은 노동단련대에 보내지는 사유에 대한 새터민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교화소 이외의 시설의 명칭과 구금 사유 등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지역별로 교화소 이외의 구금시설과 절차 및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집결소’는 교화소와 유사한 형태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¹⁰³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 제93회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 2004년 12월 9일.

등에서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설치한 ‘청소년구호소’, 여행구역 이 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부랑아, 사건 계류자 및 탈북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을 재판과정 없이 6개월 내지 일 년 동안 공민권을 박탈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 도 집결소에서는 사건계류자로부터 범행을 시인받기 위해 가혹행위를 한다고 한다.¹⁰⁴ 특히 증명서 없이 다니다 잡히는 경우 여행자 집결소에 간다고 한다.¹⁰⁵ 또한 집결소로 보내지는 경우는 직장에서의 사고 (무단결근 또는 총화학습에서 빠지는 등 도덕적인 해이 사건), 의사나 운전기사 등의 업무 수행 중 과실치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로 교화소로 보내기는 죄질이 경미하고 노동 단련대로 보내기는 죄질이 무거운 경우가 해당된다.¹⁰⁶ 도마다 도안 전국 관할의 ‘집결소’를 운영하고 있고, 탈주하다 잡히면 사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새터민 이○○에 의하면 1998년 본인이 청진시 도 집결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나무 몽둥이로 구타당하였으며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나무기둥에 매달리기도 하였다고 한다.¹⁰⁷ 새터민 김○○에 의하면 이웃에 사는 김현국이 도 집결소에서 수감 중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호되게 일을 시켰으며 죄수가 잘못된 것을 모두 자백할 때까지 감방장에게 넘겨 감방장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구타했다고 증언하였다고 한다. 그래도 잘못을 자백하지 않으면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못 자게 하면서 함께 고생을 시켜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한다.¹⁰⁸

북한당국은 식량난으로 교화소를 운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

¹⁰⁴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9일.

¹⁰⁵ 새터민 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8일.

¹⁰⁶ 새터민 윤○○,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10일.

¹⁰⁷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31일.

¹⁰⁸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31일.

문에 북한당국은 교화소를 통폐합하는 한편, 경미한 범법자들을 교화소보다는 노동단련대로 보내 1~6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1990년경 ‘간단한 경범죄에 대해 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양시킬 데 대하여’라는 김정일 방침에 따라 시·군마다 ‘강제노동단련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¹⁰⁹ 새터민 안○○은 1995년 8월 기존의 교양소¹¹⁰를 철폐하고 시·군 안전부 관할 ‘노동단련대’(북한주민들은 ‘노동깡판’이라고 별칭)가 생겨났다고 증언하였다. 주로 절도범, 집단생활 이탈자 등이 수용되는 노동단련대는 500~2,500명 정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도 단위로 2~3개씩 전국에 약 12~16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¹¹¹ 노동단련대는 처음에는 ‘교양대’라는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하였으나 ‘강제노동단련대’라는 상설 조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강제노동단련대’는 군 인민보안서 감찰과 안전원 1명, 군 당 3대혁명소조부 지도원 1명, 군 사로청 불량청소년 지도원 1명, 강제노동단련대 대장, 대열지도원 1명, 후방일꾼 1명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단련대는 공식적인 구금시설이 아니라는 데 인권유린의 근본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노동단련대에 구금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일차적으로 인민보안성의 차원에서 결정하여 왔다. 또한 노동단련대의 경우 북한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정식 재판 절차 없

¹⁰⁹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8월 31일.

¹¹⁰ 종전의 ‘교양소’는 범죄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교양시키기 위하여 수용했던 곳이다. 이들에게는 1~6개월의 수용기간 동안 무보수노동(농사, 건설현장 등)과 교양을 실시했다. 교양소는 대부분의 시·군에 설치되어 있었고, 각 시설은 100~200명 정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학교생활 불량자 및 청소년 등이 많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청소년교양소’로도 불리웠다.

¹¹¹ 북한당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범죄자들을 각 시·군에 설치된 ‘노동단련대’에 수용하고 있다. 노동단련대의 수감 인원은 대체로 100명 내외이며, 관리원들은 인민보안성 제대원들을 선발하여 배치시키고 있다.

이 인신구속이라는 인권유린이 이루어져 왔다.¹¹² 새터민 배○○에 따르면 직무에 태만하였다는 이유로 비사회주의그룹빠에 적발되어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다고 한다.¹¹³ 1998년 비사회주의그룹빠가 온 성군에 파견되어 골동품 처리자, 중국에 드나드는 사람 등 150명을 노동단련대에 보냈다고 한다.¹¹⁴ 또한 무단결근하였다고 노동단련대에 가기도 한다.¹¹⁵

노동단련대에서 탈주하면 교화소로 보내진다. 처음에는 노동단련대의 수감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기록에 남게 된다. 교화소와는 달리 당증과 공민증은 유지되지만 단기간에 육체적 부담을 주어 교양시키는 것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 교화소보다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게 되어 있다.¹¹⁶

노동단련대에서의 인권유린도 심각한 편이다. 새터민 박○○에 의하면 1996년 청진시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던 박○이라는 피해자가 구타의 후유증으로 인해 구역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사망하였다고 한다.¹¹⁷ 새터민 서○○은 탈북하려다 잡혀서 1개월간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는데, 노동단련대 내에서 죄인이라고 부르고 여자들은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구타가 자행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구금자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대소변이 허용되고, 노동은 오후 6시 반에 끝나고 노동 강도가 높아 힘들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⁸

북한당국은 노동단련대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2차 정기보고서에

¹¹² 새터민 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4일.

¹¹³ 새터민 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20일.

¹¹⁴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1월 23일.

¹¹⁵ 새터민 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8일.

¹¹⁶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8월 31일.

¹¹⁷ 새터민 박○○,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9월 7일.

¹¹⁸ 새터민 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1월 11일.

서 노동교화형 이외에는 강제노동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재판에 의한 노동교화형을 제외하고는 법과 질서의 위반자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강제 또는 사회, 종교적 처벌수단으로 부과되는 노동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 형법에서 노동단련형의 형벌을 신설한 것은 판정판결집행법에 노동단련이라는 처벌규정이 있듯이 새터민들이 증언한 대로 강제노동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새터민들의 증언과 달리 앞으로 노동단련형의 신설에 따라 형법의 조문에 의거 정식재판에 따라 노동단련대가 운영될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북한에는 ‘구류장’이 있다. 구류장은 심문 중인 피소자와 확정 판결을 받은 피의자를 교화소에 보내기 전에 임시 수용하는 시설이다. 구류장에서도 처벌 수단으로 구타와 고문이 일상화되어 있다. 새터민 김○○은 속옷만 입고 장시간 부동자세로 앉아있게 하고 못할 경우에 턱으로 벽에 매달리게 하거나(‘턱으로 서기’) 손등을 터지도록 때리고, 본인은 구타로 고회이 터져 교화소에서 접수하기를 거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심문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소변은 주어진 시간에만 허용되는 등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고문이 실시되고 있다. 김○○은 구류장에서 영양실조로 10~15명이 아사된 것을 보았고, 통신시설 절도범(특히 구리선을 100kg 이상 절취 경우)등 중죄의 경우에 대해서는 재판 없이 비밀리에 처형(이 경우를 “이발 보낸다”고 칭함)한다고 증언하였다.¹¹⁹ 또한 새터민 심○○은 취침 시 코를 심하게 골아 동료들이 집단 구타를 하도록 지시하

¹¹⁹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0월 20일, 새터민 윤○○,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10일.

였다는 것이다.¹²⁰ 많은 새터민들이 인민보안서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경호원의 구타나 굶주림, 기아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는 피해자를 다수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상의 구금시설에서 여성에 대한 강제낙태라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새터민들의 증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¹²¹ 브뤼셀에 있는 인권단체인 ‘국경 없는 인권’의 대표 윌리 포터는 “지난 18개월 동안 북한 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자 35명을 면담했고 이중 31명이 영아 살해목격을 증언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교도관과 교도소 책임자들에게 의한 조직적인 행위라며 이들은 임신한 재소자를 찾아내 강제낙태나 고문, 강제노역 등을 통해 태아를 죽인다고 한다고 밝혔다.¹²² 또한 미 국무부의 2002~2004년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이 여성 수감자들을 강제로 낙태시키거나 감옥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즉시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데이비드 호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조사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4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 “북한 온성 인민보안성 구류장에 수감됐을 때 두 명의 여성들이 강제로 병원으로 끌려가 낙태 수술을 받은 뒤 영아들이 질식사 당했다는 탈북자 증언을 입수했다”면서 “여러 증언을 통해 북한의 감옥과 수용소에서 고문과 낙태, 영아 살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¹²³ 또한 데이비드 호크는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 Exposing North Korea’s Prison

¹²⁰ 새터민 심○○,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1월 3일.

¹²¹ 새터민 서○○, 2004년 11월 9일 등 다수의 새터민 증언.

¹²² 『조선일보』, 2002년 1월 9일. 이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일보』가 「국경 없는 인권회」의 이름을 빌어 「강제수용소」에서의 ‘신생아살해’니 뭐니 하고 떠드는 것은 완전히 조작된 허위모략”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02년 1월 18일.

¹²³ 『조선일보』, 2003년 3월 3일.

Camps)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 보고서의 제3장에서 낙태 및 영아살해에 대한 새터민들의 증언을 보고하였다.¹²⁴ 새터민들은 구금 시설에서 방면되는 여성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출소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바, 영아 살인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금시설 내에서 구타, 고문, 강간, 기아로 인한 사망 및 영아살해 등 비인간적인 처우 등 심각한 인권유린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종검토의견서에서 다양한 교정시설과 구금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국내 및 국제기구의 시찰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나 북한당국은 기존의 제도로 이를 시정할 수 있고, 남북분단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제인권단체에 대한 문호개방과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¹²⁴ David Hawk, *The Hidden Gulag: Exposing North Korea's Prison Camps* (Washington, D.C., US: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Part III.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북한형법과 인권과의 상관성

북한은 1987년, 1995년 3월 15일, 1999년 8월 11일, 2004년 4월 29일 형법이 갖고 있는 인권에 반하는 내용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북한 사회질서 변화 현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형법을 개정하여 왔다. 북한이 지속적인 형법 개정을 통하여 체제방위를 위한 형법에서 범죄통제형법으로 순화시키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1999년 개정 형법 제1조에서 ‘범죄와의 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2004년 개정 형법 제1조에서는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 제도를 바로 세우”라고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형법은 계급적 본질과 임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자의 처리원칙에 대하여 “국가는 범죄자 처리에서 노동계급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제2조)고 규정하여 여전히 계급원칙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법의 해석 및 적용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높은 정치사상성이 요구되므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입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뉘우친 자에 대한 관용을 규정(제4조)하고 있으나 정치적 성격의 범죄는 완전히 불식되지 못하고 있다. 1987년 형법상의 ‘반국가범죄’의 취지는 2004년 개정 형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형법은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즉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동일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

에는 그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라고 규정하여(1999년 형법 제10조) 유추해석을 허용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언제든지 범죄인으로 규정·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종검토의견서에서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구현한 협약 15조와 양립할 수 없는 형법 제10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04년 개정 형법에서 북한은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제6조)고 사실상 유추해석을 삭제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조문 내에서 자의적인 법률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은’ 등의 표현을 없애고 행위태양의 열거를 통해 법률해석의 명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 조문도 1999년 161개조에서 총 303개조로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범죄 조항도 118개 조항에서 245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됨으로써 범죄에 대한 규정요건을 보다 세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하여 유추해석을 지양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바, 실제 형법 적용과정에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한형법은 공소시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적·계급적 속성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된다고 비판받아 왔다. 북한도 형법에서 시간적 효력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전 형법에서 범죄행위가 개정 형법에서 범죄가 아닐 경우 개정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그리고 노동단련형, 유기노동교화형, 무기노동교화형 등의 형벌에 대한 형사소추기간을 명시하고 있다(제56조). 그런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 중살인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시효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제57조)고 규정하여 죽는 날까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형법에서는 예비·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방조범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해서는 기수범과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19조), “공범사건에서 부추긴자와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제22조)되어 범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2004년의 개정 형법 제19조에서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을 범죄의 위험성 정도, 범죄의 실행정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준비는 미수보다, 미수는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제70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죄(제71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제72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반국가범죄의 경우 일종의 연좌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지속적인 형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형법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¹²⁵ 반국가범죄 등 형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부에 따라 적용된다고 인식하고 있다.¹²⁶ 이와 같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연구 활동 등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2004년에 대중용 법전을 발간하였으며, 남한에서 공식적으로 시판되고 있다. 이 상에서 보듯이 북한은 기존의 형법이 갖고 있던 반인권적 요소에 대

¹²⁵ 새터민 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20일.

¹²⁶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9일.

한 비판을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노동관련 형의 경우 구금시설이 명확하지 않고 정치적 범죄가 유지되고 형사소추기간이 해당되지 않으며 연좌제적 성격이 남아 있는 등 여전히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미흡한 요소가 많다고 판단된다. 특히 여전히 법의 규정보다는 최고지도자의 방침이 더 실질적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장군님, 지금 청년들이 청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이걸 미국에서 들어온 수정주의, 자본주의 풍인데 이걸 금지해야 합니다”라고 하여 승인하면 처벌한다고 한다.¹²⁷

불공정 재판절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주민들은 법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재판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공개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소자와 피심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불공정한 재판 절차와 판결에 대해서는 신소와 청원제도를 두어 법 적용이 공정하게 심의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당국도 제도적으로는 이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사회주의 특성상 삼권분립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은 보장되기 어려우며, 변호인은 피소자의 권익보다 당의 정책을 옹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또한 북한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와 정치범에 대한 처벌 절차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는 지켜지지 않거나 무시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북한은 2004년 5월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하

¹²⁷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9일.

여 재판절차를 보완하였다. 먼저 조문이 305개 조에서 439개 조로 증가하였다. 특히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한다(제8조)고 법에 의한 수사, 예심, 기소, 재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은 각급 재판소가 하며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북한당국은 1976년 1월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였고, 1998년 7월 1일 22년 만에 이를 개정하고 ‘판결·판정 집행법’ 등을 제정하였다. 개정법의 특징은 재판소의 정치적 사명과 역할을 삭제하였으나 재판소의 기본골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소구성법에 따르면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가 있다(제3조). 판결에 참가하는 구성원은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제4조). 제1심 재판소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인으로 구성되며(제9조), 제2심 재판소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제14조). 그리고 판결 및 판정은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원의 다수결로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제17조).

북한의 재판기관은 국가기관 체계상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내각을 상부기관으로 하여 그 하부에 위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사업지도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도 매우 높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판사가 판결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어 제도적으로 독립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판사, 검사 및 변호사 등은 대학의 법학과 출신중에서 국가가 지명하고 있어 법률적인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¹²⁸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종검토의견서에서 사법부의 독

¹²⁸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0월 20일.

립과 공정성이 모든 수준에서 보장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북한은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그것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제272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일꾼이 고의적으로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255조).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서 계급로선의 관철을 명시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과 인권유린의 소지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하게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균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제3조)고 하여 균중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재판의 공개원칙과 관련, 일반주민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재판의 공개원칙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는 간부들에 대한 비공개재판이 제도화되고 있다고 새터민들은 증언하고 있다.¹²⁹ 곧 일반주민들에게는 재판의 공개가 적용되고 간부들의 재판은 비공개리에 집행되고 있는 바,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공개되는 경우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그리고 당 간부들은 당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음으로 이중처벌을 못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재판의 공개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에 대하여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재판을 공개하지

¹²⁹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9일, 새터민 윤○○,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월 10일,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김○○은 평양기계대학 졸업, 윤○○은 김일성대학 4년 중퇴로 공개재판의 원칙의 의미를 실내 또는 실외에서 집행되는 재판으로 구분하고 있다.

않을 수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형사소송법 제16조에 규정된 국가비밀이란 “국가안전과 직결되고 해당기관의 승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사실과 문서를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란 추잡한 성적 범죄를 비롯하여 사회의 건전한 기풍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이러한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통계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은 2004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재판은 공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적한 대로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제271조). 특히 공개처형의 경우에서 보듯이 재판을 공개하면서 현지재판을 조직하여 인권을 유린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와 관련,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할 수 있다”(제28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현지재판을 목격한 새터민들은 ‘동지재판’이라고 부른다고 한다.¹³⁰

특히 북한은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인민참심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157조와 재판소 구성법 9조에 따라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재판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각 급 판사와 인민참심원들은 헌법 110조(13), 134조(5)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지방(도, 직할시, 시, 군, 구)인민회의가 선출하게 되어 있

¹³⁰ 새터민 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8일.

다. 인민참심원은 재판과정에서 판사와 동일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들은 중앙-도/직할시-지구로 구성된 재판체계의 각급 재판과정에서 심문권을 갖는 등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한다. 형벌판명에서 1명의 판사와 2명의 인민참심원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인민참심원제는 형식상 영미의 배심원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제도는 사실상 노동당의 사법적 통제를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인민참심원의 자격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만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들의 주요 역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소자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터민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인민참심원은 죄목만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¹³¹ 새터민 윤○○은 당 간부를 구타한 후 3일 만에 당 시 함흥시 사회안전부에 체포되었는데, 군당에서 인민참심원 2명을 임명하여 재판에서 죄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 재판 시 임명된 인민참심원들이 “사회적으로 놓고 볼 때 김일성을 보필하는 간부를 때렸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발언을 하였고, 판사나 검사는 이러한 인민참심원의 견해를 기반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¹³² 물론 인민참심원들은 범죄자들의 감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민참심원은 판사와 검사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등 그들의 역할과 인선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¹³³ 실제로 일 잘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명색 뿐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¹³⁴ 한편 새터민 김○○,

¹³¹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9일.

¹³² 새터민 윤○○,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5월 16일.

¹³³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9일,
새터민 손○○,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4일.

신○○ 및 윤○○ 등은 공개재판인 경우에는 대부분 판사와 인민보안원 등이 참가하여 정확한 죄목이나 증인이 없이 처형이 이루어진다고 증언하였다.¹³⁵

북한에서는 노동당과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혁명 적대분자들이 행하는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 국가안전보위부의 예심원이 예심하도록 하고(형사소송법 제124조), 도·직할시 재판소를 제1심관할로 정하여(형사소송법 제127조) 일반 형사범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보안성이나 검찰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간섭이나 반당·반체제행위자 등 반국가범죄자를 검거했을 때에는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사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치적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가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이 실행되지 않고 있어 대표적인 인권유린의 사례가 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범과 일부 경제범을 수감하는 사례가 흔하다.

북한 형사소송법에도 판결서에 상소절차를 명시(제353조)하고 있으며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날 경우 비상상소를 규정하고 있다(제384조). 그러나 중앙재판소 제1심재판의 판결, 판정, 제2심 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에 대해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9조). 그리고 새로운 범죄에 기초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제도로 재심제도를 두고

¹³⁴ 새터민 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8일.

¹³⁵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0월 20일, 2003년 11월 3일, 2004년 1월 10일.

있다(제403조). 이와 같이 북한에도 항소나 상고제도가 존재하지만 항소나 상고할 경우에 오히려 형을 더 받는 현실 때문에 이를 기피한다고 한다. 항소나 상고할 경우에 예심기간이 길어지는데, 예심이 길어질수록 고통스러워 차라리 빨리 교화소에 가는 것이 낫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¹³⁶

북한당국은 신소와 청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법기관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신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신소청원법을 제정하였고 1999년, 2000년 2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관리일군이 신소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0조).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신소와 청원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기관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북한대표는 “신소와 청원의 제기는 사회의 최 말단 개별적 기관, 기업소로부터 최고 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직접 혹은 후견인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구두 혹은 서면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신소는 역으로 신소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새터민 이○○은 “신소는 헌법에 명기되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제도이나 군, 시, 도를 거쳐 중앙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이 자신이 화를 당할 것 같으면 무시하며, 신소한 자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척 하다가 중국에는 유일사상체계에 저촉된다고 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

¹³⁶ 새터민 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4일.

다.¹³⁷ 새터민 김○○은 그의 친구였던 ‘김덕철’이 1988년 2월 말경에 중앙당 신소과에 “공화국 경제정책이 현 실정에 맞지 않으며 경제발전을 하려면 개인기업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비밀투서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는 얼마 후 검거되어 행방불명되었으며 그의 조모·가족·삼촌 등 일가족은 통제구역으로 추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나타난 북한의 실상을 감안하여 유엔인권이사사회에서는 최종검토의견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북한에도 사면제도가 존재하고 이를 ‘대사’라고 지칭하고 있다. 형법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면제는 특사 또는 대사로 한다. 특사, 대사의 실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제53조)로 규정하고 있다. 새터민 윤○○에 의하면 김일성 생일이나 3년, 5년을 단위로 대사(사면)가 있으며, 80% 이상이 대사의 혜택을 받고 출소하는데 당 간부 구타 등 특별범죄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고 증언하였다.¹³⁸ 이와 관련하여 『조선중앙방송』은 12월 2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민족 최대의 혁명적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90돌을 맞으며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정령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상임위는 대사의 대상이 ‘노동교화형을 받은 자’이고 2002년 1월부터 실시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¹³⁹

¹³⁷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8년 9월 9일.

¹³⁸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5월 16일.

¹³⁹ 『연합뉴스』, 2001년 12월 27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개인의 권리를 국가에 대항하여 최종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재판절차의 공정성은 이와 같은 변호인 선임권이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보장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인권과 관련한 변호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변호활동이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가 또는 변호인으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결국 재판의 공정성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대다수 국가의 헌법,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 등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실현방법과 절차에 관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북한에도 형사소송법에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제106조)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변호사는 당의 지도를 받고 국가가 선출하고 있어 북한 변호사제도의 한계를 잘 드러낸다.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은 변호사들이 변호사회의 업무배분에 따라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주민들에 교육하고 선전하는 일종의 정치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 인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변호사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변호사법 제11조). 이는 북한의 변호업무가 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민에게 정확하게 침투되어 실시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보다는 범죄혐의사실을 실토하도록 설득하거나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피심자를 기소하였을 경우 재판소는 해당 변호사회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제111조)하고 있으며 공선변호사보다 사선변호사가 우선 변호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6조). 그렇지만 북한주민들은 변호사제도와 같은 법률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률상으로 변호사 조직을 규정(제5장 변호사 조직)하는 등 조선변호사회를 통하여 변호사들을 규율하고 있다. 변호인으로는 각급 변호사회의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되며 변호사회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경우 검사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12조).

새터민 순○○에 따르면 동생이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사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사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론의 의미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¹⁴⁰ 또한 새터민 김○○은 북한의 변호사, 판검사들은 사법시험제도 없이 대학의 법학과 출신 중에서 국가가 지명하여 선출하고, 변호사는 변호 역할보다는 법을 이해시키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증언하였다.¹⁴¹ 이와 같이 변호사의 직책이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사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¹⁴⁰ 새터민 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4일.

¹⁴¹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0월 20일.

4. 평등권

평등권의 개념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평등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제6조),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조). 국제인권규약 B규약은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 평등하고,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와 26조).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함은 물론이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평등권은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적 상태에서 누려온 천부적·전국가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을 균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능 내지 방법으로서 기본권 전반에 공통으로 작용되어야 할 기능적·수단적 권리라는 특성을 갖는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도덕적인 자율권과 안전(security)이 보장되어야 하고, 경제적 영역에서는 고용, 임금, 근로조건, 과세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참여와 활동,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출신성분, 성별, 기타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영역에서는 문화생

활에 참여할 권리, 교육의 기회균등은 물론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모든 제반 사회시설을 균등하게 누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

〈출신성분 구분작업〉

1998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헌법 제65조) 법률상으로는 모든 주민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 북한은 B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국제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종이나 피부색, 성, 언어, 신앙, 정견이나 다른 주장,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성분, 재산, 출생 또는 신분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북한은 1958년 8월 사회주의적 제도개혁을 완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 주민의 노동자화’를 목표로 그 해 12월부터 전체주민을 출신성분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는 전 주민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등을 기준으로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소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북한이 시도한 사회주의적 계급정책이었다.

출신성분 구분 작업으로는 1958년 12월~1960년 12월에 실시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1967년 3월에 실시한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1970년 6월에 걸쳐 조사한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

업’, 그리고 1980년 4월~1980년 10월에 걸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 1981년 1월~4월에 걸친 ‘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 1983년 11월~1984년 3월에 걸친 주민증 갱신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80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실시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에서는 13개의 부류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장엽은 북한당국이 6·25전쟁 이후 ‘주민등록그룹빠’를 조직하여 출신성분, 친척관계, 전쟁경력 등을 기초로 8차례에 걸쳐 주민성분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표면적으로 성분정책을 완화시키고 복잡군중들을 포용한다는 김정일의 ‘광폭정치’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표Ⅱ-5>참조).

주민성분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폐지 또는 추가되는 부류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주민의 성분분류 세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컨대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민족자본가나 지주 등은 현재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시기별로 새로운 사회집단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이 통치자로서 모습을 드러낸 1980년대 중반부터는 성분완화정책의 시달에 따라 당시의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부류를 폐지 내지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5> 주민성분 조사사업

사업명칭	시 기	내 용
중앙당 집중지도	'58.12~'60.12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이주
주민재등록 사업	'66. 4~'67. 3	100만 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을 분류(직계 3대·처가와 외가 6촌까지 내사)
3계층 51개 부류 구분 사업	'67. 4~'70. 6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재분류
주민요해 사업	'72. 2~'74	남북대화화 관련, 주민동태를 조사·파악,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 검열사업	'80. 1~'80.12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및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80. 4~'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복송재일교포 요해사업	'81. 1~'81. 4	복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자료를 과학화
주민증 갱신사업	'83.11~'84. 3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주민재등록 사업	'89.10~'90.12	주민등록부 재조사 정리, 이산가족 개인신상 카드 작성
공민증 갱신작업	'98. 2~'98.10	수첩형태에서 양면 비닐코팅 카드형으로 교체

출처: 통일부, 『2004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3), p. 327.

<주민에 대한 계층 분류>

북한당국은 전 주민을 크게 핵심군중(핵심계층), 기본군중(동요계층), 복잡군중(적대계층) 등 3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II-5~7>참조). 새터민들은 성분구별정책 내지 계층분류는 정치적·사회적 지위와 교육·직업·결혼 등의 북한에서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새터민 김○○에 따르면 신원확인

을 위해 출신성분에 따라 1호~7호로 분류하여 도, 군의 인민보안성에 문건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1호~3호는 핵심군중, 4호는 공장기업소 지배인과 당일꾼, 5호 이하는 일반인으로 구성되며, 당·정간부들을 ‘양반,’ 일반인은 ‘쌍놈’으로 인식된다고 한다.¹⁴² 또한 토대(성분) 때문에 출세에 지장이 있는 경우 돈을 주고 자신의 성분 기록을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¹⁴³

핵심군중은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으로 전체주민의 약 28%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김일성·김정일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과 약 20만 명(인구의 1%)으로 추산되는 고급간부들, 그리고 나머지 26~27%의 중·하위급 간부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부분 항일혁명투사와 그 가족, 한국전쟁 시 피살자와 전사자의 유가족들이다. 북한은 핵심군중의 자녀들을 위해 각종 특수학교와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고급간부들은 호화주택에 살면서 자녀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고, 최신 유행품 등을 소유할 수 있다. 자가용, 개인전화도 소유하고 있고, 외국출판물 구독과 외국방송 청취가 허용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살면서 당·정·군 간부 등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특혜를 받고 있고, 진학·승진·배급·거주·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혜를 누리며 세습 신분집단을 이루고 있다. 식량난 이후 김정일과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늘어나고 있으나, 김정일을 지지하고 보호하려는 핵심계층은 약 10% 정도로 이들은 대우를 받고 잘 지내고 있어 현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⁴⁴ 또

¹⁴²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0월 20일.

¹⁴³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0월 27일.

¹⁴⁴ 새터민 박○○,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3일.

한 북한에서 의사였던 박○○은 성분과 지위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차별에 대해서, 북한의 큰 종합병원의 경우 당 간부들의 진료와 치료를 위해서 진료부가 별도로 있다고 증언하였다.¹⁴⁵

기본군중은 북한체제의 핵심군중에 속하지 않고 당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체인구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하급간부나 기술자로 진출하고 있으며,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장사 등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대부분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에 살고 있는 이들은 불충분하고 차별이 심한 보건 혜택 속에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핵심군중으로 신분이 상승하기도 한다. 많은 새터민들은 경제난으로 뇌물이 성행하면서 도 단위 이하의 간부직에 대한 매관매직이 발생하는 등 성분구분이 약화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¹⁴⁶

복잡군중은 계급적 적대자들과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며,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집단이다. 복잡군중은 북한 전체인구의 약 27%를 차지한다. 이들은 과거 지주 및 자본가 가족, 일제 치하 시의 공직자 가족, 종교인 및 부역자 가족, 당원자격을 박탈당한 자, 간부에서 철직된 자, 체포 및 투옥자 가족, 정치범 출소자, 경제사범,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등 북한의 권력투쟁에서 희생당하거나 소외된 엘리트와 관료 출신 등으로 대학진학, 입당, 군 장교 등의 자격이 원칙적으로 박탈된다.

출신성분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성분정책은 기본군중의 사회적 진출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성분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부류는

¹⁴⁵ 위의 증언.

¹⁴⁶ 새터민 황○○,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0년 5월 24일.

역시 복잡군중에 속한 사람들이다. 복잡군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고용·교육·주거·의료혜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강제이주를 통한 격리수용 및 독재 대상, 항시 동태를 감시당하는 고립대상, 집중적인 교양학습을 통해 체제 순응적으로 교육받는 포섭 및 교양대상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새터민 김○○은 복잡군중은 국경지역인 신의주에 거주할 수 없으며, 전국의 시에 거주하는 비율도 매우 적다고 증언하였다.¹⁴⁷

<표 II-6> 3계층 51개 부류 분류표

3 계층	51개 부류	대 우
핵심계층 (전체 인구의 28%)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 8·15 이후 양성된 인텔리, 6·25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	당·정·군간부 등용 타계층과 분리 특혜 조치(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료 등에서 특혜 조치)
동요계층 (45%)	중·소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접객업자, 중산층 접객업자, 월남자 가족(제2·3부류), 중농, 민족자본가, 중국귀환민, 8·15이전 양성된 인텔리, 안일·부화·방탕한 자, 접대부 및 미신 송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등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 진출 극소수 핵심계층으로 승격
적대계층 (27%)	8·15 이후 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행위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관복무자, 체포·투옥자가족, 간첩관계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월남자가족(제1부류) 등	유해, 중노동에 종사 입학, 진학, 입당 봉쇄 탄압 제재·감시·포섭대상으로 분류 - 제재: 강제이주, 격리수용 - 감시: 지정하여 항시 동태 감시 - 포섭: 집중적 교양 극소수 계층으로 재분류 (자녀)

* 1970년 당시 주민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분류한 것임.
출처: 통일부, 『2000 북한개요』, p. 420.

¹⁴⁷ 통일연구원에서 인터뷰 시 증언, 1997년 8월 21일.

<표 II-7> 성분 분류표

특별계층	혁명열사유가족·애국열사유가족(1~2%)
핵심군중	노동당원, 전사자가족(전사가 확인된 경우), 영예가족, 후방가족, 고농, 빈농, 사무원, 노동자
기본군중	노동당원, 사무원, 노동자, 영예가족, 전사자가족, 남한출신(의용군입대자), 신인테리
복잡군중	인테리, 남한출신(입북자·피난민), 포로귀환병, 월남자가족, 중·소상인·수공업자 출신, 중국귀환민 출신, 과거 접대부·미신송배자 가족, 유학자·지방유지 출신, 경제사범, 구인테리
감시대상	과거 지주·중소기업가·부농 가족, 과거 친일·친미행위자 가족, 과거 적기관복무자 가족, 종교인출신 가족, 출소자, 출당자, 철직자, 체포·투옥자 가족

* 새터민 이○○의 증언에 의거하여 작성.

<표 II-8> 복잡군중 분류표

독재대상	독재대상자는 현재 북한체제와 제도를 전복하려는 부류로 이들은 일반 주민들과 분리시켜 소위 ‘안전지대’로 불리우는 산간고지와 탄광지대 등 특수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있음.
고립대상	고립대상자는 상당히 위험한 대중으로서 일단 유사시에는 남한에 동조 내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들이며 일반군중에 공개하여 집단 감시케 함.
포섭대상 및 교양대상	포섭대상자들은 일부 동요계층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탈정도가 경미하여 체제·이념에 다시 순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류이며, 교양대상자들은 사상교양을 강화하면 전향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보는 유동적인 부류임.

<성분에 따른 교육혜택 차별>

북한은 성분에 따라 교육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실력이나 본인의 의사와는 거의 상관없이 지방대학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 중앙당 부장, 내각 각료 등 김정일의 측근이나 소위 간부 자녀는 무시험 특별입학이 허용된다. 새터민 박○○은 김일성·김정일의

지시로 입학이 결정되는 고위간부의 자녀들은 ‘교시받은 학생,’ ‘지시 받은 학생’ 또는 ‘말씀받은 학생’ 등으로 불린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김일성종합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입학 예정자는 직계준비속 6촌까지, 일반 사범대학의 입학예정자는 직계준비속 4촌까지 성분조사를 받는다. 성분조사 과정에서 작은 결점이라도 발견되면 입학이 취소된다. 입학이 취소된 남학생은 군대에 입대하여 7~10년간 복무하여야 하고, 여학생은 생산기업소로 배치된다.

출신성분에 따른 대학입학 통제실상은 많은 새터민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실제로 대학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정밀한 신원조사를 무사히 통과해야만 입학이 허용된다. 새터민 김○○은 인민경제대학에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출신성분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한다.¹⁴⁸ 김○○은 자신이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전 기간 동안 전교 1등을 했지만, 1979년 3월초에 있었던 대학시험에 파견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가 다니던 학교 교장과 어머니가 재직하던 학교 교장이 대학교 모집처에 찾아가 문의한 결과 “학생의 외삼촌이 1946년 12월경 월남을 한 ‘10호대상’(월남자 가족)이기 때문에 파견장이 안나갔다”는 것이다. 허○○은 북한에서 성분을 중요시하지 않고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은 김책공대이고, 머리가 좋고 성분이 나쁘면 일반적으로 공과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본인은 김일성종합대학에 진학하여 기자나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으나 부모가 중국 조선족이므로 동요계층으로 분류되어 김책공대에 진학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⁴⁹ 최근에 대학진학을 둘러싸고 문제가 된 사례로

¹⁴⁸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9일.

¹⁴⁹ 새터민 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0일.

토대가 비슷하나 돈이 많아 입학된 사실이 알려져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다고 한다.¹⁵⁰ 또한 김○○에 따르면 할아버지가 지주계급이라는 출신성분 때문에 본인까지 입당, 대학입학 등에 차별을 당하였다고 한다.¹⁵¹

그런데 최근 경제난에 따른 사회적 이완의 상황 속에서 광폭정치라는 명분 하에 성분이 나쁘더라도 대학진학에서의 차별은 완화 추세에 있다고 한다.¹⁵² 물론 성분불량자는 간부양성 목적의 대학진학에 있어 아직도 철저히 차별당하고 있으나. 옛날과 달리 실력이 있으면 특수대학이나 이공계에 진학 할 수 있다고 한다.¹⁵³ 그리고 토대 때문에 군 입대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가 탄광노동자이면 자식도 탄광노동자로 배치된다고 한다.¹⁵⁴ 이와 같이 부모나 조상들의 성분과 토대는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여 ‘사회이동’을 제한하여 계층과 직업의 세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핵심간부 선발 시 출신성분의 중시와 차별실태〉

북한당국은 “체제에 한을 품고 있는 자는 3대가 내려가도 계급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당이나 사법기관 근무자 선발 시 출신성분 검토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997년 황장엽이 망명한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황장엽 망명 직후에 출신성분을 간부 등용과 각종 선발 등에 철저히 적용하였다고 한다.¹⁵⁵

¹⁵⁰ 새터민 ○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2일.

¹⁵¹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0월 20일.

¹⁵²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7월 26일.

¹⁵³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4월 26일.

¹⁵⁴ 새터민 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4월 26일.

¹⁵⁵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6호 (1999.8), p. 37.

당이나 사법기관 및 군관(장교) 임용 등에서 당국이 제시하는 출신 성분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해임시키거나 다른 자리로 전보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당·사법기관의 운전수까지도 출신성분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임하기도 한다. 군대에서도 하전사의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군관의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술부문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6.25 때 한국 편에 가담한 사람들도 등용하는 등 출신성분을 크게 따지지 않고 있다. 다만 감시는 대폭 강화하고 있다.¹⁵⁶ 새터민 김○○는 평양 류현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여 군단선전대 가수로 활동하였는데, 성분관계로 여성 고사총 중대로 쫓겨났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군에 입대한 후 입당을 하지 못하면 인간취급도 하지 않는데, 자신은 성분 때문에 입당도 하지 못하고 제대 당하였다는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감정제대’(환자로서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자)라는 명목으로 제대하였지만 실제로는 성분이 나쁘다고 ‘생활제대’(생활이 불량하다고 제대시키는 것)를 당하였다고 한다.¹⁵⁷

한편, 이○○는 북한에서 직업은 태어나면서 이미 다 분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곧 본인은 핵심계층으로 대학 졸업 후 보위부 군관으로 근무하였는바 큰 삼촌이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장이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보위부에 직업을 얻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⁵⁸ 북한에서 성분과 인맥은 교육과 직업을 배정 받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당 일꾼과 보위부 및 인민보

¹⁵⁶ 위의 책, pp. 37-38.

¹⁵⁷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5월 23일.

¹⁵⁸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0일.

안성 등 권력기구이다. 특히 공안부서에 근무할 경우 성분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관행은 직업상의 사회적 차별을 의미한다. 예컨대 북한주민들이 인민보안성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6촌 친인척까지 성분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6촌 이내의 친인척 중 반역자, 교화소에서 복역한 자 등이 없어야 한다. 한편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경우 인민보안성보다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하여 8촌 이내의 친인척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여 선발하고 있다.¹⁵⁹

〈연좌제에 의한 통제와 신분에 따른 형벌〉

북한에서는 통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연좌제를 악용하고 있다. 연좌제는 정치적, 이념적 범죄에 대한 관련 가족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수평적으로 직계가족에 대한 처벌과 수직적인 후세대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이러한 가족의 기록을 유지하여 주민들에 대한 철권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¹⁶⁰

연좌제에 의한 통제실상은 이산가족들에 대한 적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은 전체인구의 25~30%를 차지하는 방대한 집단인 이산가족들을 ‘월남자’로 분류하여 복잡계층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조상들의 과오, 일제 때나 한국전쟁 때 있었던 과오를 가지고 아직도 후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가

¹⁵⁹ 새터민 김○○과 김○○의 증언 및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0호 (1999. 2), p. 44.

¹⁶⁰ Special Rapporteur, Vitit Muntarbhorn,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in Any Part of the Worl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 11.

족이 6·25 당시 치안대 가담사실이 있거나 국군포로인 경우에 오지로 추방되거나 탄광이나 임업소에서 신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 국군포로들은 신분상으로 여러 가지 학대를 받고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자녀들도 감시의 대상이 되고 직업과 사회진출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실상 성분차별이 대물림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⁶¹

새터민 김○○에 의하면 정치범의 경우 연좌제가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 이에 관해 국가안전보위부 규정에 연좌제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한다. 그 중 중요한 것은 남자 집이 걸리면 여자는 자동으로 이혼하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비해, 여자 집이 걸리면 사위는 처벌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¹⁶² 경제난이 악화된 이후 주민들의 불평이 늘어나고, 소위 ‘말반동’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당국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면 심한 벌을 내리지 않고, ‘말반동’의 경우에도 대부분 본인 위주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어 연좌제가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증언하는 사례도 있다.¹⁶³ 물론 함경북도 청진에 본인 위주의 정치범수용소가 있으나 연좌제는 지속되고 있다.¹⁶⁴

북한당국은 성분정책에 의한 주민들의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의 성분정책 완화지침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성분정책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은 성분정책으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¹⁶¹ 새터민 윤○○, 인터뷰 시 증언, 2000년 5월 23일.

¹⁶²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9년 10월 19일.

¹⁶³ 새터민 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8일.

¹⁶⁴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9일.

한편 북한은 성분에 따라 범죄형량까지도 달리하는 성분차별을 실시하고 있다. 최종 판결 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죄인의 배경이나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은 사형을 면하고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 반면 고아 등 출신성분이나 배경이 나쁜 사람들은 별도의 고려 없이 대부분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따라서 총살형을 계속 지켜보아 온 주민들은 “같은 범죄라도 뒷배경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최종 형벌의 수준이 달라진다. 정말 불공평하다.” 또는 “당국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시 출신성분에 따라 형량을 임의로 결정하여 집행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출신성분은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신성분이 좋지 못한 경우 발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토대 좋은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한계급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¹⁶⁵ 그러나 출신성분이 나쁜 경우 보위부 등 통제기구가 조직적으로 방해하기도 한다. 귀환 납북자 이○○에 따르면 맞선을 볼 경우 보위부, 공장 당위원회 사람들이 체제에 반감을 가진 자라는 이유로 뒤에서 의도적으로 남한출신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 방해하였기 때문에 10번이나 맞선을 보았지만 혼사가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한다.¹⁶⁶

〈계층에 따른 거주지역의 차등배치〉

북한은 주민들의 출신성분에 따라 거주지역을 차등화하거나 강제이주시키고 있다.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주로 남한출신자이거나 과거 지주, 자본가 계층이었던 사람들인데, 북한당국은 이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출의 우려가 있다고

¹⁶⁵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7일.

¹⁶⁶ 귀환 납북자,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7일.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성분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양시, 남포시, 해변가, 전연지대 (휴전선)등에서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¹⁶⁷

또한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도 가족이나 친인척의 과오로 인해 평양이나 대도시에서 추방되어 산간오지로 강제 이주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출신성분이 나빠 강제이주 당한 주민들은 유급 당 일꾼이나 법무기관의 요원으로 발탁되지 못하며, 하급 행정일군 정도로만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주자들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 수시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쌍놈’들이라고 한탄하면서 지내고 있다.¹⁶⁸

한편 북한당국은 범죄자, 탈북자, 성분 불량자 가족들을 산간오지 등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새터민 주○○에 의하면 왕재산 경음악단 2번 타악 기수였던 김○○이 1997년 평양에서 혜산으로 추방당하였다고 한다.¹⁶⁹ 새터민 박○○에 의하면 평양에서 추방 및 강제 이주된 사람들을 「평양소개민」이라고 부른다고 한다.¹⁷⁰ 이들은 추방된 지역의 원주민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차별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 추방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원주민이 추방자를 구타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추방자가 원주민을 구타하거나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만약 구타를 할 경우에는

¹⁶⁷ 새터민 순○○에 따르면 평양에서 출생하였으나 아버지가 남한출신이고, 직장생활 과정에서 불미한 사건을 일으켰다고 해서 신의주로 이주하여야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새터민 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4일.

¹⁶⁸ 새터민 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8일.

¹⁶⁹ 새터민 주○○,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7월 6일.

¹⁷⁰ 새터민 박○○,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3일.

인민보안성이 운영하는 규찰대원들이 몽둥이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추방자를 집단 구타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또한 추방자들은 벌목지, 탄광 등지에서 가장 힘든 노동에 동원되며 근무기간이 오래되고 일을 잘해도 작업장 간부로 발탁되지 않는다. 심지어 살던 집을 빼앗기고 시설이 열악한 집으로 강제이주 당하거나 텃밭 등 개인이 만들어 놓은 경작지까지 무단으로 압수당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할 때에도 “추방자들의 성분이 나쁘다”며 원주민끼리만 결혼하고 있다. 원주민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추방자는 주모자로 몰려 처벌되는 반면 원주민들은 무혐의로 풀려나는 등 많은 차별을 받고 있어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추방자들은 거주지에서 이방인처럼 차별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

〈북한당국의 평양시 주민에 대한 차별대우〉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성분을 엄격히 심사하여 평양시 거주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평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계층이 나뉘어져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평양시 거주자들은 3부류로 나누어져 있다. 1·2부류는 평양시 거주에 성분상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써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3부류는 북송교포, 남한출신자, 친인척 중 행불자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전체의 10~20% 정도이다. 이와 같은 계층 구분 때문에 3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종 정치적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수반의 평양방문 관련 환영 군중으로 동원될 때도 1·2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만 참석케 하고 있다. 따라서 3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되며 일반 군중대회의 경우에만 겨우 행사에 참가토록 하고 있다. 3부류 주민들은 일반군중대회에 참가할 때도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 1·2부

류 사람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앞자리에 배치되는 반면, 3부류 사람들은 가장 뒷줄에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서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3부류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평양에 살고 있어도 평양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마음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3부류 주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 입대는 물론 노동당 입당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출신성분으로 인한 차별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¹⁷¹

장애인들에 대한 박해

현재 세계에는 약 5억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북한에도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들 장애인들에 대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 특수지역인 평양과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들은 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고 해서 특기자를 제외하고 평양이나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이주를 실시하기보다는 특별행사가 있을 때 간헐적으로 이주시키고 있다.¹⁷² 북한은 평양을 국제도시로 꾸미기 위해 장애인들을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장애인을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있다고 한다.¹⁷³ 이에 따라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과 새터민은 평양에

¹⁷¹ 새터민 김○○, 김○○의 증언 및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0호, pp. 42-43 참조.

¹⁷² 새터민 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9년 5월 18일, 새터민 윤○,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0년 5월 23일.

¹⁷³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15일.

서 장애인들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¹⁷⁴

북한당국은 신체적 특징에 따라 집단수용소를 설치하는 등 혹독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새터민들은 난쟁이수용소가 존재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황장엽은 1960년대에 김일성이 “난쟁이들이 종자를 퍼뜨리면 안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 두라”고 지시함에 따라 함남 정평군에 난쟁이 수용소가 설치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새터민 정○○에 의하면 함남 영광군에 선천적 기형아를 격리 수용하는 시설이 있다고 한다.¹⁷⁵ 또한 이○○에 의하면 자강도 산골에도 난쟁이 수용소가 존재한다고 한다.¹⁷⁶

특히 난쟁이에 대한 불임을 강요당한다는 증언도 있다. 새터민 최○○, 박○○에 의하면 양강도, 강원도 등지에 난쟁이 수용소가 있으며 결혼은 허용되지 자식 출산은 금한다고 증언하였다.¹⁷⁷ 새터민 김○○에 따르면 난쟁이는 수용소에 격리 수감시키며, 남자 난쟁이 경우 불임수술을 시켰다고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 1998, 1999년 즈음 석방시켰다고 한다.¹⁷⁸

1998년 7월 설립된 ‘조선불구자지원협회’의 리성심 서기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가 발행하는 월간 잡지 『조국』 5월호와의 인터뷰에서 협회가 지난 1999년 1월부터 3월까지 평양시와 평남 평성시·평원군, 강원도 원산시·통천군, 황해남도 벽성군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43만5천866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사업을 한 결과 팔·다리 등

¹⁷⁴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15일.

¹⁷⁵ 새터민 정○○,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11월 30일.

¹⁷⁶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15일.

¹⁷⁷ 새터민 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7월 6일.

새터민 박○○,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10월 12일.

¹⁷⁸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0월 20일.

사지(四肢)를 못 쓰는 장애인이 가장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지장애인이 38.85%를 차지,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인이 22.03%, 시각장애인이 21.63%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4.95%였고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능이 낮은 사람도 3.50%를 차지했으며 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람도 9.04%에 이르렀다.¹⁷⁹

북한당국은 2003년 6월 장애인보호법(총54조)을 처음으로 채택하여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장애인들의 재활, 생활, 노동, 교육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내각에 비상설 장애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에 지장을 초래한 간부와 개인 등에게 형사적이고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들에게 일반 사회인과 대등한 권리를 부여하여 장애인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서 전반적인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고(제10조) 장애자를 위한 특수과정을 마련할 수 있으나 이것이 중등일반교육에 제외시키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력 위주로 대학 입학을 보호하고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제15조~20조). 북한의 장애인 규모는 약 70여만 명으로 추산되며 부상으로 제대한 일부 영예군인 등을 제외하고는 도시에서 추방되는 등 위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3년 A규약 제2차 정기보고서 심사 후 제시한 최종검토의견서에서 장애아동들이 정규

¹⁷⁹ 『연합뉴스』, 2002년 5월 5일.

교육체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바 있으나, 2003년 장애인보호법 제정으로 이러한 차별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애인들과 장애 어린이들의 권익이 현실에서 그대로 집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과거의 차별대상이었던 집단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한 것이 의미가 있고 그 집행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5. 자유권

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부통치자의 전제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는 평등과 함께 인권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요소이며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요소이다. 자유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방어적 공권임과 동시에 초국가적인 인간의 권리임을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과 B규약에서는 인권존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양한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본 백서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다루고, 종교의 자유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고(제1조),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제3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3조)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제18~20조)를 규정하

고 있다. B규약에서도 신체의 자유(제9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2조), 사상 및 종교의 자유(제18조), 표현의 자유(제19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1조와 22조) 등을 폭 넓게 보장하고 있다.

거주이전·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라 함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으며,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인간존재의 본질적 자유로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인간의 신체적·심리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상승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데 있다.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유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해외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3조). B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국가의 영역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권리는 공공질서와 공중보건 및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그 동안 북한은 거주와 여행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인권소위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거론하자 북한은 1998년 9월 북한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75조)

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 통제의 목적상 자유로운 거주이전 및 여행이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다. 즉 법 규정과 법 현실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다.

새터민 김○○와 어○○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약 2주전에 해당 단위의 직장 장에게 경리과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1차로는 노력동원과 사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차로는 해당 지역 인민보안성 증명서 발급과에 3일 전에 여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위협분자, 감시자, 동향불순 등록자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보위부 종합과에서의 대조·확인 과정을 거친 후에야 해당 직장 초급당 비서를 통해 여행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 새터민 김○○은 나진·선봉지역의 경우 이동시 6개 정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다른 지역보다 통제가 더 심한 형편이며, 특히 후장지구 등에 세관을 설치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¹⁸⁰ 뿐만 아니라 특별히 평양, 전연지대, 국경연선에 갈 때는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¹⁸¹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여행자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인민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숙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인민보안성으로부터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증에는 귀향일시가 기재되며 귀향 4일 전에 여행지 역전 분주소에 신고해야 승차권을 매입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타지에 있는 부모·형제, 친지 등의 사망 등 큰 일이 있을 경우에 여행을 신청하게 되고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타 시군은 다음날 발급, 평양과 국경지대는 5~7일

¹⁸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8년 9월 8일.

¹⁸¹ 새터민 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1월 11일.

이 걸린다는 것이다.¹⁸² 그러나 급작스러운 장례의 경우에는 허가절차로 인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최근에 경제난과 간부들의 부패로 돈만 주면 평양과 일부 제한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가증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¹⁸³

여행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허가 없이 자의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다. 주거지를 허가 없이 옮기면 공민증을 받을 수 없고 취직 등 모든 사회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받는다. 새터민 지○○의 증언처럼 교화소에서 출소한 자의 경우 직업과 거주지가 제한되고 감시대상이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다만,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사적 경제영역이 확대되면서 돈과 권력을 배경으로 음성적으로 주택매매가 이루어짐으로써 간접적으로 거주이전이 묵인되고 있다고 한다.¹⁸⁴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강제추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정치범들이나 체제 불만자들에게 행하는 강제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자강도와 양강도 등 새로 신설된 공업지대나 탄광지대, 그리고 최근 나진·선봉경제특구와 같은 지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기도 한다. 황장엽은 북한당국이 6·25 전쟁 이후 전쟁준비 및 인구조절 차원에서 3~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평양시 주민소개 작업을 실시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직후 평양 시민 중 성분불량자들을 지방으로 대거 이주시켰으며,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전쟁준비를 구실로 상당수의 평양시민을 지방

¹⁸² 새터민 강○○,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17일,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9일.

¹⁸³ 위의 증언.

¹⁸⁴ 새터민 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1월 11일.

으로 소개시켰다. 그리고 1994년에는 ‘평양시민증’을 발급하면서 직장 변경자, 행실불량자, 처벌대상자 등을 지방으로 소개시켰다.

이와 같이 지방으로 추방된 사람들은 감시 대상이므로 접촉을 꺼리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한다.¹⁸⁵

이와 같이 북한이 이동과 여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정보교환으로 인한 체제 부정적 이탈행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여행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해이해지기 쉽고 정보교환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정과는 달리 북한의 현실로 인해 여행에 대한 규제는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난과 식량난의 심화로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사회적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뇌물수수 등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식량구입 및 장사를 위한 이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묵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는 여전히 검열을 하지만 육로를 통하여 많이 이동한다고 한다. 이 경우 대체로 여행증 없이 다닌다고 한다. 도로에서 차를 잡으려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를 ‘차잡이’라고 하며 100리에 100원 정도 돈을 받는다고 한다.¹⁸⁶ 대북지원을 하는 민간단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여행증제도가 존속하고 있으나 안보상 중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행의 통제가 사실상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고 한다. 2000년까지 검문소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지만 그 이후 돈을 지불하면 이동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처럼 변화하였다

¹⁸⁵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4월 26일.

¹⁸⁶ 새터민 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4일.

고 한다.¹⁸⁷ 그렇지만 여행증이 없으면 차표를 구입할 수 없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여행증을 발급받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¹⁸⁸

식량난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당국이 여전히 주민들의 자유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유엔인권소위원회는 1997년 8월 제49차 회기에서 북한당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1998년 8월 제50차 회기에서는 북한당국에 대해 출입국 등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이 거주이전 및 이동·여행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얼마나 잘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감시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2001년도에 제출한 B규약 제2차 정기보고서에서 북한은 ‘여행규정’ 제6조에 따라 여행을 원하는 공민은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여행증 발급 목적은 북한이 처한 환경에서 간첩, 파괴 암해분자들의 준동을 막자는 것, 다시 말해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해외여행과 관련, 일반주민이 여행을 신청하고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으로 각 시, 군의 외사과에 신청하나 신청서 받기부터 어렵다고 한다. 여행 허가는 일년에 몇 명, 한 달에 몇 명씩 보낸다는 제한이 있어 한번 가려면 최소 3년, 최장 10년씩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빨라져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증언하

¹⁸⁷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¹⁸⁸ 새터민 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1월 11일.

고 있다.¹⁸⁹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 심사과정에서 북한당국이 밝힌 외국 여행 신청 및 기각실태는 <표 II-9>와 같다. 또한 기각은 다른 나라의 동의가 없는 경우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표 II-9> 해외여행 기각 실태

연 도	신청건수	기각건수
1998	17,440	65
1999	29,875	104
2000	35,650	91

이러한 북한대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종검토의견서에서 주민들에 대한 국내 여행증명서 발급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거주 외국인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외국여행 허가절차와 출국비자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협약의 취지에 부합되는 개별적 사안에만 이들 제도를 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¹⁸⁹ 새터민 허○○,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0일.

외에 개인의 알 권리, 언론기관에의 접근 및 이용권, 반론권, 언론기관 설립권 등은 물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도 포괄한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에는 국경의 제한 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천명하고 있다(제19조). 또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의사표현 및 정보추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제19조).

북한에서는 “공민은 언론, 출판 … 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67조 1문)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은 비판이나 정보 제공 등 본래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김정일 이상화를 위한 주민선동에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북한주민 모두를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즉 언론의 자유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할 때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언론은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자이며 선동자인 동시에 조직자이며 교육자로서만 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언론은 오로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 언론은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지도원리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의 모든 신문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에 관한 기사는 신문의 1면에 게재되며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은 별도의 굵은 활자로 인쇄된다. 모든 기사의 내용은 주민들에게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주시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당에 대한 비판이나 기본적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전무하다. 반면 한국과 미국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다. 만일 봉인이 뜯겨져 있으면 한국방송이나 외국방송을 허가 없이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새터민 서○○에 따르면 라디오와 TV, 녹음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주파수를 고정해야 한다고 한다.¹⁹⁰

북한당국은 200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B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서 언론인들은 그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북한의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으며 외국 언론인들도 북한의 “외국 언론인 활동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자료를 모으고 보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언론의 접근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독일과의 수교 시 외국기자의 취재 보장 등을 수락하였지만 북한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방문자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또한 2차 정기보고서 심사과정에서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외국신문이나 잡지는 북한에서 가관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2차 정기보고서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에서 주로 경제난에 따른 외화의 부족을 들어 취재활동이 제한 당한다는 논리로 답

¹⁹⁰ 새터민 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1월 11일.

변하고 있다. 외국신문과 출판물이 북한에서 널리 활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이는 외화의 부족과 외국어의 무지에 기인한다. 언론기관은 국가나 공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해외뉴스 취재활동을 위해 재정적으로 언론기관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지만 언론기관이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지 못해 외국특파원을 거의 파견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기관은 해외북한대표부의 기자와 타국의 매스미디어로부터 뉴스를 획득하며 북한은 기자의 해외여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의 언론은 개인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제공 기능, 개인보호 기능, 정부감시 기능, 문화전달자적 기능, 오락·광고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노선의 정당화 기능, 인민감시·고발 기능만을 수행하면서 인권침해의 동조자, 은폐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외부 정보 취득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세계정세 변화에 무지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능력과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욕구를 갖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최근에는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을 통하여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외부정보가 유입되고 있다. 새터민들에 따르면 국경지역에서는 중국의 핸드폰을 몰래 들여와 중국지역의 사람과 통화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¹⁹¹

한편 북한에서는 일반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도 극도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2004년 4월 개정 형법에서 반국가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으로 듣거나 유인물들을 수집, 보관하거나 유포한자에게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

¹⁹¹ 새터민 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4월 26일.

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기존의 형벌보다 강화하였다(제195조). 또한 반국가목적 없이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 또는 부정확한 풍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여(제222조) 과거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규정보다 처벌 강도는 약화되었으나 노동기간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의사표현 및 제3자에 대한 전달을 억제하여 왔다.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증대하여 과거와는 달리 ‘말반동’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고 있으나 김정일과 가족에 대한 비판과 욕설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새터민들은 증언하고 있다.¹⁹²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김정일의 우상화와 체제 유지를 위해 여전히 주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약당하고 있다.

출판물 역시 사상교양의 전달수단으로서 노동당이 모든 출판물을 직접 관장하며 검열·통제하고 있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모든 출판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김일성의 우상화, 유일사상의 체계화,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의 확립, ‘우리식대로 살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대중동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헌법 제67조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제 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떤 작품을 쓰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당 선전부의 검열을

¹⁹² 새터민 박○○,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3일,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28일.

받아야 한다. 만일 북한주민이 이와 같은 검열기준에 위배되는 것을 출판할 경우, 북한당국은 개정 형법 제61조의 ‘반국가선전, 선동죄’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과거 노동교화형 하나로 일원화된 형벌의 범위를 넓혀주고 주민들은 과도한 형벌에서 벗어나게된 측면도 있다. 물론 언론이나 출판물을 통해서 노동당이나 김일성 부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새터민 이○○은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와 당기관이 합동으로 1년에 3번 정도 책을 검열하기 때문에 서적을 통한 외부사상의 유입은 힘들다고 증언하였다.¹⁹³

북한의 문학예술은 사회주의혁명의 완전한 달성을 위해 복무하는 중요한 사상적 무기이다. 즉,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예술은 당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중요한 이념적 동원매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 결성 이후 북한의 문예정책은 문예작품 창작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의 준수, ‘당성·계급성·인민성’원칙의 관철 등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문예작품의 내용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한 ‘혁명전통물’, ‘전쟁물’, ‘사회주의건설물’, ‘조국통일물’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히 내세웠다.

1966년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북한사회를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문예 분야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주체사상

¹⁹³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4월 26일.

에 기초한 문예이론, 즉 ‘주체문예이론’을 내놓게 되었다.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주의를 체현한 ‘공산주의자의 절대적인 전형’으로서 김일성을 직접 형상화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절대화·우상화를 신성한 임무로 간주하였다.

북한 문예정책은 무자비한 통제성을 보이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노동당의 외곽단체인 문예총을 통하여 진행된다. 특히 작품 출판 및 공연에 대한 통제는 아주 엄격하고 철저히 통제된다. 노동당과 내각 문화상의 통제·감독을 받고 노동당의 검열에 통과되어 검열인을 받아야 비로소 출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는 미술 작품이나 음악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는 북한지도층의 비위에 맞는 작품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 가장 큰 검열기준이 된다. 이러한 출판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6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의 2001년 B규약 2차 정기보고서 심의 시 북한은 출판물의 출판, 배포를 금지시킨 사례는 최근 3년간 30여건이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금지된 사례에서 주된 내용은 주로 국가군사 기밀 자료가 포함된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출판과정에서 발견되어 인쇄중지 수정된 경우는 백과사전, 지도, 잡지 등에서 27~28건, 군사상식을 비롯한 도서들에서 3~4건 정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최종검토의견서에서 특정 간행물을 금지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국 신문 구독을 금지하는 조치를 삼가하도록 하며 북한 기자들의 해외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국가안보’ 개념을 악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이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형태로 행해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어떤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0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1조와 22조). 따라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공민은 …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헌법 제67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만 허용될 뿐 일반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당국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집회와 중앙, 도 시 군 범위 및 일정한 부문별로 진행되는 집회는 매우 많지만 시위는 극히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는 북한의 집회와 시위가 당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결사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집단적 소요로 간주된다. 최근 개정 형법에서는 반국가적 목적이 없더라도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사회질서

를 혹심하게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형법 제219조)고 규정하고 있어 시위를 원천
적으로 봉쇄하는 기존의 강력한 억제 조치를 존속시키고 있다. 집회
의 자유와 관련하여 A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시위를 하려면, 집회 및 시위 보장 규율에 따라 3일전에 지
방인민위원회나 인민안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는 집
회 및 시위의 목적, 요일 및 시간, 장소, 조직자 및 규모의 내용을 포
함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인민위원회나 인민안전기관은 집회 및
시위에 필요한 여건들을 보장하여야 하며,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협
조하여야 한다. 건전한 국가 안전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집회나 시
위는 공공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통제될 수 있다.

북한당국은 2차 정기보고서에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보고하고 있다. 민주적 공공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미
리 내각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에는 노동조합, 농
민근로대중조합, 청년동맹, 여성 연맹, 문학예술조합총연맹, 민주변호
사협회, 기독교연맹, 불교연맹, 반핵평화위원회, 아프리카-아시아 연
대 위원회 등 수십 개의 민주적 공공단체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A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서 직업동맹의 결성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국가기관, 공장, 기업소의 근로
자들은 단순히 고용자가 아니며, 국가 및 사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기관, 공장, 기업소의 계획, 행정, 관리에 참여하는 공장 및
기업소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견과 불만이외에는 기업소 주
인에 대한 집단협상, 노동분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위
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기업소에 고용된 노동
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노동여건 보장을

위한 외국 기업과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노동조합(직맹)에 의존해야 한다. 아직까지 외국기업 내에서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¹⁹⁴ 그런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3년 A규약 2차 정기보고서 심사 후 제시한 최종검토의견서에서 단일 직업동맹이 노동당에 의해 통제되며 직업동맹의 권리가 국가보위기구의 권위에 종속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우려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기구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직 당의 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집회나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결사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조직, 종교결사, 노조, 정당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과 결사는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며, 독립적인 기관이나 결사의 존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북한주민들은 만 6세부터 정년퇴임 시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 교육기관,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선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어느 조직에라도 가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단체는 서구식 의미의 이익단체나 압력단체가 아니라 조선노동당규약 제9장 제56조에 나타나 있듯이 조선노동당의 강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을 연결해 주는 인전대’로서만 기능하고 있다.

사회단체들의 주요 기능은 노동당을 보좌하고 김일성·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치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은 가

¹⁹⁴ 북한은 2002년 5월 A규약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 전문은 <[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3b70e5a6e2df030c1256c5a0038d8f0?Opendocument](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3b70e5a6e2df030c1256c5a0038d8f0?Opendocument)> 참조.

맹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당의 외곽조직으로 존재하며 대중의 사상교양 선도조직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또한 이들 사회단체들은 주민들에 대한 일차적인 통제 기능 외에 북한당국의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운동, 예를 들어 천리마운동 등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운동, 김일성·김정일의 생일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서의 집단시범, 행진 등에 있어서 주민동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새터민들이 북한 생활에서 가장 싫어한 것은 개인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주민들이 직장을 포함한 각종 조직에 속해야 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생활총화 및 정치교육 등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직 생활에 자주 빠지는 경우에 추궁을 받고 심하면 지방으로 추방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심한 조직생활을 한다고 불평하였다.¹⁹⁵

조선노동당은 각종 대중조직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다. 즉, 노동당은 사회단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상호감시, 비판, 계도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사상과 집단행동을 통제하는 한편, 사회단체의 조직을 통해 노동당원과 후원자를 양성한다. 북한은 2차 정기보고서에서 “정당 조직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다. 왜냐하면 기존 정당이 공화국 창건 전 형성된 이래 50년 이상 활동해 오고 있고 신생 정당의 형성을 요구하는 대중적 요구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정당에는 조선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⁹⁶ 그러나 이러한 정당들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에 대한 충실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특히 북한은 인권단체와 관련하여 국가는 인권 증진을 위한 단체

¹⁹⁵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3일.

¹⁹⁶ 천도교청우당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2001년 4월 13일자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설립을 지원한다. 단체 설립 절차는 행정 규정에 따른 일반 공공 단체 설립과 같다. 현재 인권연구소, 장애인지원협회, 법률가 협회, 민주변호사회 등의 인권 단체들이 있다. 노동조합, 농민근로대중조합, 청년동맹, 여성 연맹, 문학예술조합총연맹, 아프리카-아시아 연대 위원회 등도 인권을 위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정기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위원들이 북한의 비정부기구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대표는 북한의 비정부 인권기구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번의 토의내용을 비정부 인권기구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종검토의견서에서 북한 측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공집회의 요건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공공집회가 어떤 경우에 금지되며 공공집회가 금지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참정권을 규정한 협약 25조의 정신에 비추어 새로운 정당 설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법적 절차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표단의 설명에 유의하면서 협약 25조의 조항들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 일반적 권고 제 25호를 반드시 참조하도록 권고하였다.

6. 종교의 자유

정신생활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사상의 형성과 그 전달, 양심과 신앙의 유지, 학문의 연구 등은 그 성격상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정신적·사회적 활동의 자유가 체제 자체의 존립과 그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권리는 종교 혹은 신앙을 개변할 자유와 단독으로나 혹은 다른사람과 공동으로나 또는 공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나 자기가 믿는 종교나 신앙을 전도하고 실천하며 예배하고 신봉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수용할 권리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의식·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방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하고,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고, 부모나 법정 후견인은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북한당국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건국 이래 종교탄압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다. 북한은 종교를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침략 도구’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철학사전』은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며 착취억압하는 도구로 리용되었으며 또 근

대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⁹⁷

이러한 종교에 대한 기본인식에 따라 과거 많은 종교인들이 성분 불량자로 간주되어 고문을 받거나 처형되었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반민족적·반혁명적 적대의 대상이 됨으로써 탄압을 받았고, 특히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정신적 도구로 간주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당하였다. 특히 한국전쟁 직전과 전쟁 중 많은 종교인들이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실종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을 통한 반미 정서를 이용하여 종교탄압을 본격화하였고, 주민들의 성분조사를 통해 종교인과 그 가족들을 ‘반혁명 요소’로 규정하고 탄압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1958년부터 시작된 중앙당집중지도사업으로 거의 모든 종교인들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불교의 경우 400여 개의 사찰 가운데 60여 개의 사찰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으며, 1,600여 명의 승려와 3만 5,000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기독교의 경우는 1,500여 개의 교회와 30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고, 천주교의 경우 3개의 교구와 5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천도교의 경우도 12만여 명의 신도가 자취를 감추었다. 김일성은 1962년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성)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 버렸고 그밖의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¹⁹⁸

¹⁹⁷ 사회과학원,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50.

¹⁹⁸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1989), p. 79.

북한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해방 후 북한주민 916만 명 중 22.2%인 200만 여명이 종교인(천도교도 약 150만 명, 불교도 약 37만 5천 명, 개신교도 약 20만 명, 천주교도 약 5만 7천 명)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종교인 수는 훨씬 많았던 것으로 예측된다.¹⁹⁹ 그러나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성분분류(3계층 51개 부류)에서 종교인들을 적대·복잡계층으로 분류하여 감시·탄압하였고, 1970년까지 약 40만 명의 종교인들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측되고, 종교인의 2세대, 3세대들은 정부의 감시 속에 ‘반동분자’로 분류·관리되었다.²⁰⁰

그러나 1970년대 남북대화를 시작하면서 북한당국은 헌법 개정과 종교단체의 재조직 등을 통해 대외적인 선전에 관심을 가졌다. 먼저 법률적 차원에서 북한당국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면서 제 54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여 진보적인 면을 보였으나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법률적 차원에서 완전히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종교단체들을 ‘조선기독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 세 개의 종교단체로 재조직하고, 남한의 진보적인 종교인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반정투쟁과 통일방안을 선전하려고 노력하였다. 곧 종교는 대남정치 선전에 활용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외부 종교단체들과의 접촉이 증대되자 종교정책을 완화하였고, 교회설립 및 종교학과 신설 등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

¹⁹⁹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p. 365.

²⁰⁰ 허만호, “유럽연합의 대 북한 인권정책과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결의 채택,” 별쇄본, 『대한정치학회보』, 제12집 2호 (2004), p. 18.

다. 특히 1990년대 김일성이 사망하고 식량난이 악화되어 사회통제가 어렵게 되자 1998년부터 내부의 종교활동에 대한 억압을 견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종교와의 접촉을 통해 특정종교의 영향을 견제하면서 서방과의 관계 개선과 서방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시키는 일종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종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당국은 그 동안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등한시 했던 정기 보고서 등을 유엔 인권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 등에 제출하였다. 북한당국은 과거의 고립에서 탈피하여 국제 인권레짐에 잔류하면서 이들과의 개입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 비난을 회피 또는 약화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면하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 국제사회가 유엔인권소위원회와 유엔인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은 1992년과 1998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였다. 1992년 개정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신설하였고, 1998년 헌법 개정에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삭제하였다(제 68조).²⁰¹ 종교의 자유와 관련, 개정 헌법은 법률적으로 진보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종교건물의 신축과 종교의식을 허용함으로써 외형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법적 정비조치를 취하였다.

북한당국은 이와 같이 변화된 조치를 통해서 1980년대 말 이후 종교에 대한 조치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첫째, 종교시설의 건립, 둘째, 종교의식의 허용, 셋째, 종교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정

²⁰¹ 1998년 개정 헌법에서는 ‘누구든지’라는 용어만 삭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1992년 헌법에 나타난 종교에 대한 태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비하였다. 북한당국은 1988년 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립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외부에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칠골교회가 건립되었으며 2003년 종교건물의 건립과 관련하여 북한은 남한 종교계가 북한 내 종교시설을 복원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1989년 1월 15일에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불교의 성도절(成道節) 기념 법회를 전국 사찰에서 갖도록 함으로써 종교의식을 허용하였다. 이후 석가탄신일, 성도절, 열반절 등 불교 3대 명절에 기념법회를 열고 있다.²⁰² 다른 종교의 경우에도 부활절 예배 등 종교의식을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북한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와 공동으로 평양 인근의 법운암을 비롯해 북한지역 59개 사찰에서 단청불사를 실시하고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천태종도 개성 영통사를 복원하는 사업을 종단차원에서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합의 하에 평양 청류동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²⁰³

북한당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2003년 6월 24일 평양에 첫 러시아 정교회 성당인 ‘정백사원’ 건설공사를 착공하였다. 이에 대해 허일진 조선정교위원회 위원장은 ‘정백사원’이 평양에 건설됨으로써 북·러간 친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성당 환공 후 봉직하기 위해 북한인 4명이 러시아 모스크바신학교에서 러시아정교회 교리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²⁰⁴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1990년대 남한이나 구미 각국의 종교단체들

²⁰² 『연합뉴스』, 2003년 5월 5일.

²⁰³ 『연합뉴스』, 2003년 11월 26일; 2004년 1월 19일.

²⁰⁴ 『조선중앙방송』, 2003년 6월 25일; 『연합뉴스』, 2003년 6월 24, 27일.

과 빈번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1995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미국의 선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하는가 하면 북한의 그리스도교 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영섭 목사가 이끈 대표단은 한 달 동안 미국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²⁰⁵ 조선불교도연맹은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시아불교도평화회의에 참석하였다.²⁰⁶ 이와 같이 종교 단체의 활동은 대남선전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조선불교도연맹은 2003년 3월 27일 민족공조로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자는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호소를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²⁰⁷

북한 대표가 2001년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심사 과정에서 밝힌 종교관련 통계수치는 다음과 같다.

<표 II-10> 북한의 종교실태

종 교	교당수	교직자수	신도수
기독교	2(가정예배 처소 500)	20(목사)	12,000
천주교	1(공소 2)	-	800
불 교	60	200	10,000
천도교	800(아파트 내 기도처)	-	15,000

또한 북한당국은 종교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북한이 2000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김일성대학에 종교학부를 신설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종교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종교 교육 기

²⁰⁵ 김병로,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48.

²⁰⁶ 『조선중앙통신』, 2003년 2월 10일.

²⁰⁷ 『조선중앙통신』, 2003년 3월 29일.

관이 있다.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는 평양 신학교를 운영하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는 불교 학교를, 조선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는 천도교중학교를 운영하며 조선카톨릭협회 중앙위원회도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2003년에 북한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통해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들이 모스크바에 유학하여 신학을 공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²⁰⁸

나아가서 북한당국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연계하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B규약에 대한 2차 정기보고서에서 “민주적 정당, 공공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는 헌법 67조 2항에 따라 종교인들이 종교 단체를 구성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사의 자유에 따라 북한에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종교인협회 등의 종교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종교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어떤 종교도 간섭이나 차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를 믿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취한 법적·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 측면에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우선 종교단체의 성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협회 등의 종교단체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종교단체나 국제원조기구의 상대역의 역할이 더

²⁰⁸ 『연합뉴스』, 2003년 3월 31일.

육 중시되고 있다. 새터민 서○○에 따르면 중앙당 간부로부터 중앙에 외교를 위한 목적의 종교단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²⁰⁹ 이러한 중앙 차원에서 통제되는 종교단체의 국제종교행사 참가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을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교회·성당, 사찰은 해외 종교인, 관광객 등 방문객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대외선전용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이 신축된 종교시설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인근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1988년 9월 신축된 평양의 봉수교회의 경우를 보면, 평시에는 관리원 가족만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 참관 시에는 만경대 구역 내 동사무소 근무자 등 당에서 엄선한 40~50대의 남녀 수백명이 위장예배를 보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일요일에 사전 협의 없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바 있다.

많은 외국 방문객들은 교회활동이 연출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의 종교탄압국 지정에 대하여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하여 평양 「봉수교회」 일요일예배에 매주 200~300명의 신자들이 참여하고 각지 500여 개의 가정예배소에서도 일요일마다 예배를 한다고 비난·반박하기도 하면서,²¹⁰ 2002년 12월 북한의 조선그리스도 연맹측은 기독교인은 12,300명이고 등록된 가정예배소는 513개소라고 발표한바 있다.²¹¹

²⁰⁹ 새터민 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1월 11일.

²¹⁰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69호, pp. 9-10.

²¹¹ 『크리스찬 뉴스 위크』, 2002년 10월 19일.

이와 같이 북한은 국제 인권레짐 가입, 헌법 개정 등 법적 조치, 종교시설의 건립, 종교단체의 설립, 종교교육기관의 신설 등을 통하여 대외적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차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하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종교자유에 대한 북한당국의 조치는 선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사실 북한당국의 종교정책은 정부가 종교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통제된 공인종교정책’을 지속하고 있다.²¹² 북한당국이 허용하는 대내외적인 종교 활동은 대외적인 이미지 구축, 외화수입 및 외부로부터의 인도적 지원 획득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요인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나와 있듯이 종교가 외세침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사회질서를 해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식량난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기독교가 북한의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독교의 포교를 강력히 억제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주민들은 1년에 2회 이상 해당 보위지도원들로부터 기독교 전파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교육내용은 주로 기독교 전파자 색출의 필요성과 기독교인 식별요령 등이다.²¹³

지하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새터민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²¹² 김병로, 『북한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참조.

²¹³ 성경책을 본 사람은 해당기관에 신고하도록 주민들에게 교양교육하고 있다.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0년 5월 31일.

새터민 유○○은 1996년에 자신이 3년간 미행을 하여 지하교회를 적발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²¹⁴ 새터민 황○○은 사리원에서 시집 온 며느리의 제보로 평안북도 운산군에서 일가족이 예배드리는 것이 발각되어 4명은 처형되고 나머지는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증언하였다.²¹⁵ 또한 1990년 초 북한 황해남도 안악군에서 86명의 지하 기독교인들이 국가안전보위부에 발각돼 일부는 처형되고 나머지는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사건이 있었다고 보위부 출신의 새터민이 밝힌 바 있다. ‘황해도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일은 보기 드문 대규모 지하 교회 탄압사건이었다고 한다.²¹⁶ 새터민 김○○에 따르면 친구인 방○○의 누이동생 방○○이 남포로 시집갔는데, 2001년 남포에서 종교전파로 적발되어 5명이 총살당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²¹⁷

다음으로 외세침탈과 사회질서 문란이라는 인식 아래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면서도 남한종교인과 접촉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당국은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송환될 경우 한국의 기독교 신자와 접촉한 사실이 발각되면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는 데, 이는 기독교의 북한 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실들은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유명무실함을 잘 말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새터민 김○○에 의하면 자신의 언니가 연길의 교회에서 한국 사람과 만난 것이 적발되어 체포 송환되었다고 한다.²¹⁸ 또한 새터민 마○○는 탈북자 중 1인이 본인이 기독교와

²¹⁴ 새터민 유○○,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0년 5월 22일.

²¹⁵ 새터민 황○○,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0년 5월 24일.

²¹⁶ 『연합뉴스』, 2001년 6월 15일.

²¹⁷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4월 26일.

²¹⁸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3일.

관련이 있다고 밀고하여 보위부에 체포당하였다고 한다.²¹⁹ 보다 구체적으로 새터민 허○○에 의하면 요한이라는 피해자가 중국에서 기독교와 접했다는 죄목으로 3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 받았다고 한다.²²⁰ 새터민 엄○○에 의하면 본인이 조선족 선교사와 접촉하였다고 고발되어 2번이나 보위부에 체포당하였으며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풀려났다고 증언하였다.²²¹ 그리고 은덕군 사람 60명 정도가 기독교를 믿으면 강냉이 15kg을 준다는 말을 듣고 한번 찾아갔다가 발각되어 15년의 형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²²²

이와 같이 북한당국은 원칙적으로 억압과 엄격한 통제를 견지하면서 남북관계, 국제정세 변화 및 국내경제난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종교활동을 상황에 따라 완화하는 신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주민들의 종교의자유와 종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극히 부정적이다. 새터민 최○○는 북한은 절대적으로 무종교 사회이고 점쟁이도 신통하다면 잡혀간다고 증언하였다.²²³ 북한 내 지하교회들은 주로 중국을 왕래하는 젊은이들이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간혹 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종교는 아편이라는 교육을 받아 진실한 종교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새터민 조○○은 종교는 없어진지 오래 되었고, 본인은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닌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평양의 봉수교회는 외국인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김정일의 우상숭배와 신격화로 북한에서의 종교자유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증언하였다.²²⁴ 또한 새터

²¹⁹ 새터민 마○○,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3일.

²²⁰ 새터민 허○○,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9월 7일.

²²¹ 새터민 엄○○,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8월 3일.

²²² 새터민 문○○,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6월 29일.

²²³ 새터민 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1일.

민 배○○은 종교를 미신으로 간주하고 종교를 믿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으나 중국으로 탈북한 후 교회에 가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도움을 얻었다고 증언하였다.²²⁵

북한당국이 외세침탈수단과 사회질서 문란의 요인으로 종교를 인식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수령유일지배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절대적인 존재인 김일성·김정일의 위상과 관련하여 또 다른 절대자를 섬기는 종교는 유일지배체제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근거하여 수령(김일성·김정일)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유일지배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절대적 지도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과 그 창시자인 수령 이외에 다른 숭배대상이 존재하기 어렵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숭배행위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10대원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10대원칙’은 발표된 1974년부터 위대한 지도자인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와 더불어 헌법이나 다른 어떤 법과 규범보다도 북한사람들을 지배하고 범죄규정에도 적용되는 실제상의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²²⁶

²²⁴ 새터민 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18일.

²²⁵ 새터민 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20일.

²²⁶ ‘10대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또한 ‘10대원칙’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범·사상범으로 지목하여 처벌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 활용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컨대 인민학교 2학년(9세)의 어린 학생이 교과서에 있는 김 부자의 얼굴에 연필로 낙서를 했다는 죄로, 또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도배지로 사용했다는 죄로 인해 전 가족이 행방불명되는 사례도 ‘10대원칙’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10대원칙’에 따라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간직하기 위해 생명까지 버리도록 강요하는 등 사상교양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1년 평양 근로단체출판사에서 발간한 『혁명적 락관주의에 대한 이야기』(안창환 저)에서는 김일성의 초상화를 목숨 바쳐 지킨 박영덕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박영덕은 서해바다로 조업을 나갔다가 배가 파산되어 가라앉을 운명에 처하자 “수령님의 초상화를 비닐보자기에 정성껏 싸고 또 싼 다음 자기 몸에 무거운 연추를 달고 물속에 뛰어 들었다”고 그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2000년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10대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최근 경

-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품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제생활이 어려울수록 교양사업과 사상총화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일꾼들을 즐라매라,’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고 조직생활을 더욱 즐라매라’고 강조하고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새터민 이○○은 증언하고 있다.²²⁷

또한 이○○은 ‘10대원칙’에 따라 김정일이나 당 정책을 비판한 것이 적발되면 가차 없이 처벌한다고 증언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10대원칙’이었다고 한다.²²⁸ 이와 같이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10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김○○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규범은 ‘10대원칙’이라고 한다. 경제난이 악화된 이후, 특히 1995년 이후 생활총화에서 과거와 같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가 강조되기보다는 ‘10대원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²²⁹

이와 같이 ‘10대원칙’에 기반하여 최고지도자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요하는 북한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외의 종교인은 존재하기 어렵다. 불교의 성직자들은 평소에 법복을 입지 않고 승려는 정부가 임명하고 있고, 일부 성직 담당자들은 교리조차 잘 모른다고 한다.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종교탄압정책으로 인해 일반주민들은 종교인들을 무지몽매한 자, 미치광이 내지 정신이상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정치범수용소 등 통제구역에는 과거 종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아직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기독교 단체들의 대북지원에 따른 접촉 증가와 각국 종교인들의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

²²⁷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1일.

²²⁸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5월 14일.

²²⁹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0월 27일.

증가에 따라 신앙을 믿는 소수의 종교인이 생겨났을 가능성은 있다. 또한 과거 부모들의 종교생활에 영향을 받아 종교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도 많을 것이나 종교활동, 특히 개신교의 활동을 미제국주의와 연계시키고, 종교를 착취계급의 도구 및 미신과²³⁰ 아편 등으로 비판하는 반종교적 교육을 받아 왔고 종교활동에 엄격한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용인 없이 대외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공표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종교적 신념이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당국의 종교에 대한 극심한 탄압 행위는 B규약 18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히 B규약 2차 정기보고서 검토 후 발표한 최종검토의견서에서 종교 신자와 시설, 신앙생활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인권이사회에 제공하도록 촉구하였다.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그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적 활동과 생활을 형성하고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법적 안전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

²³⁰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pp. 81-83.

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7조).

북한에서는 “공민은 …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의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헌법 제79조)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보호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서 북한은 공민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 임의 침해는 금지되어 있으며, 서신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공민의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법기관은 없으며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조항으로 2004년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과거의 “수색하는 과정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비밀을 알았을 때에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999년 9월 개정된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137조)는 규정을 삭제하고 증거의 “압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과 문서만을 한다”(개정 형사소송법 제 223조)로 규정하여 과거보다 일보 후퇴한 감이 있으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와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공개 재판의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비공개 재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심원은 범죄나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편지나 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검사로부터 승인

을 받아야 하고 해당기관과 체신기관의 대표자를 입회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17조, 218조 및 221조).

2003년도 북한은 조선국제통신국이 국제전자우편(e-메일)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또한 전송속도와 서신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망 보호체계를 자체기술로 갖추고 국제전자우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²³¹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과 e-메일 서비스 개시는 실생활과 거의 무관하다. 북한이 인식하는 사생활 보호권은 서구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도청이다. 일반주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정·군의 고위간부들의 주택 및 자동차에도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당국은 엄격한 상호감시 체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B규약 2차 정기보고서 심사과정에서 도청 등 주민들 사생활에 대한 내적 감시가 심하다는 보도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을 때 그러한 주장은 적대세력이 퍼뜨린 낭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인하였다. 즉, 북한이 외세와 적대적 대치상태에 있지 않고 우리식 제도와 이념을 고수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억측들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장엽은 북한 정보기관의 당 간부에 대한 감시는 일반주민보다 심하며, 도청장치까지 동원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김정일이 이같이 고위간부들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에 대해 반기를 들 가능성이 가장 큰 대상으로 이들을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새터민 유○○과 김○○도 북한당국

²³¹ 『조선중앙통신』, 2003년 11월 28일.

이 반체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간부 자택과 공공장소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 해외친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외부세계에 대한 환상, 이색바람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하면서, 1995년경부터 별도의 동향감시 기록 카드를 제작, ‘긍정발언·부정발언’ 등으로 구분하여 동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새터민 한○○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위부는 최근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²³²

북한주민들은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북한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사생활 감시에 따른 공포분위기를 자주 전한다. 지배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정치에 관해 거론·비판하거나 당이 결정해 준 한계밖에 있는 사항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주택단지 내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드물다. 가족들 사이에도 시사적인 문제에 관한 생각을 주고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

북한당국은 전 주민들의 사생활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당 정책을 관철시키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 ‘생활총화제도’를 상위조직부터 하위 인민반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호 비판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 1회씩 실시되는 집단학습제도이다. 북한주민들은 생활총화시간에 개인의 사사로운 생활, 가정생활, 부부관계까지도 낱낱이 조직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일반주민들의 사생활 감시에 공안조직망을 활용하고 있다. 인민보안성 소속 숙박 검열대는 무단숙박과 비위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각 가정을 방문하며 검열

²³² 새터민 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9년 5월 18일.

을 수행한다. 무단숙박을 검열한다는 목적으로 검열대가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사생활 감시에 인민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화재나 불의의 사고를 방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근로자들은 출근할 때 인민반장에게 집 열쇠를 맡겨야 된다. 인민반장은 불시에 가정을 방문하여 위생 검열, 초상화 검열, 김일성 부자와 관계된 도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군, 구역 간부들이 호구조사를 나올 경우 집주인의 안내 없이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15~25여 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은 인민반장에 의해서 통제되고 인민반장은 사회안전부 안전원과 함께 숙박 검열 등을 통해 각 가정을 항시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사상동향이나 가정사정을 감시·통제할 뿐만 아니라 노력동원·생활총화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감시는 인민반장으로 시작되나 인민반에 이미 보위부, 안전원, 당 비서 등의 꼬나풀이 이중 삼중으로 인민반장과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²³³

사생활 통제를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노동당과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억압기구들이다. 일반주민들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은 하급당 조직이다. 최하 기층조직은 당원 5~30명으로 구성되는 당 세포조직이다. 당 세포조직은 주로 생산단위를 바탕으로 초급당조직, 부문당조직, 시·군당조직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당 기구 중 당 간부와 당원들을 비롯하여 정당 및 사회단체, 전체 주민들을 감시·통제하는 부서는 노동당 비서국 조직지도부이다.

국방위원회 직속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일성·김정일 체제

²³³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9일.

유지의 침범 역할을 해 왔다. 국가안전보위부는 1974년 2월 ‘사상부 문일꾼 강습회’에서 김정일이 작성해 발표했다는 ‘10대 원칙’에 대칭되는 10가지 범법규정을 마련하여 체제유지를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왔다. 이 기구는 소위 반당·반체제 주모자 색출·검거, 특정지역 내 잠입 간첩 색출,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국경경비와 치외법권 지역 감찰, 일명 ‘종파분자’ 및 정치범들의 특별관리 등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다. 또한 간부와 일반주민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유사시 변절자와 지지자를 선별하는 ‘사상사찰’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²³⁴ 노동당도 국가안전보위부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며, 인민보안성은 업무수행에 있어 국가안전보위부에 절대로 협조해야 한다.

최근 북한 내에서 반체제활동이 급속히 증가하자 국가안전보위부원들은 반체제 사건을 사전에 색출하기 위해 정보원들을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원으로 선발되는 자들은 주로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이발사, 기관 방문자들의 접수를 맡은 경비원, 운전수 등이라고 한다. 새터민 주○○은 대학에 다닐 때 보위부의 꼬나풀이었는데, 하루 5가지 이상씩 고발해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²³⁵ 한편 국가안전보위부원들은 개인적으로 주민들을 호출, 주변 동료들에 대한 활동상을 기술하도록 강요하는 등 주민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³⁶

인민보안성은 경찰조직으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인민

²³⁴ 새터민 김○○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위부의 미행국과 도청국이 기본감시부서인데, 여기서 여관, 호텔, 공공장소를 모두 도청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9년 10월 19일.

²³⁵ 새터민 주○○,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5월 25일.

²³⁶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8호, pp. 21-22.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과 대주민사찰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즉 이 기구는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체의 요소를 적발·제거하고 전체 주민을 김일성·김정일 1인 독재체제 하에 순종케 하기 위한 주민탄압 기능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는 인민보안성은 내각의 한 부서로서 중앙기구로는 인민보안성과 성 직속기관, 도에는 인민보안국과 도 직속기관, 시·군에는 인민보안서, 각 리 단위에는 인민보안소 체계로 조직되어 있다. 공장, 기업소, 군에도 인민보안원이 파견되어 있다.²³⁷

7. 참정권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여 공직에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국민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또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자기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어느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아울러 투표는 공정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률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사람들의 의사가 정부권력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²³⁷ 인민보안성에 대해서는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3)를 참조.

그러나 이러한 의사는 보편동등하며 또한 비밀 혹은 그와 유사한 자유 투표방법에 의한 정기적인 정당한 선거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직접 혹은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른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5조).

북한에서는 김일성 추모의 일환으로 1997년까지 최고인민회의나 당 대회 및 각종 선거 등 일체의 참정권 행사가 중단되었다. 1997년에 김정일이 당 총비서로 취임하였지만 선거가 아닌 추대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참정권은 여전히 제한 받았다.

1998년의 개정 헌법은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헌법 제6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헌법 제66조). 그러나 북한의 선거는 단지 대내적으로는 노동당에 대한 인민의 신임을 확신시키고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며,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고시하기 위한 선전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후보자 추천과 등록·투표방법, 연좌제에 의한 선거권 박탈 등을 살펴보면 이는 명백하다.

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구마다 1인씩 입후보하는 단일입후보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노동당에서 사전에 엄격하게 선별하고 있다. 사민당과 청우당의 후보들도 노동당의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 이들도 실질적으로는 노동당의 통제 하에 있다.

투표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

한 비밀투표를 실시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거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주관 하에 철저한 감시 속에서 거행되며 투표절차는 주민들이 투표 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끝난다.²³⁸ 따라서 선거는 당이 지명한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축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는 선거구에서 축하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역전광장들과 공지마다에서 각급 학교학생들이 펼쳐 놓은 취주악대와 예술소조원들의 이채로운 공연무대는 사람들에게 혁명적열정과 기백을 안겨 주고 있다.²³⁹

새터민 주○○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선거하기 며칠 전부터 학생들을 동원하여 노래와 행진을 벌이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한다.²⁴⁰ 또한 투표율을 높여 당에 대한 지지를 과시하기 위하여 연로하거나 질병으로 투표장에 나올 수 없는 선거자들을 위하여 이동투표함제도를 실시하여 왔다.²⁴¹ 최근에는 현재 실재 거주하는 주민들만 투표에 참가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새터민 김○○은 증언하였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면서 선거에 빠지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기록에 남아 다른 과오가 있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새터민 배○○은 증언하였다.²⁴²

²³⁸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9일.

²³⁹ 『조선중앙통신』, 2003년 8월 4일.

²⁴⁰ 새터민 주○○,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5월 25일.

²⁴¹ 『조선중앙통신』, 2003년 8월 4일.

²⁴² 새터민 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20일.

이와 같이 후보 지명과 투표 절차에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실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북한에서 선거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하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노동당이 주도하는 권력구조와 엘리트 충원구조를 사후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이자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축구하는 정치적 동원절차이기 때문이다. 2003년도 8월 3일에 실시된 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었다. 북한의 중앙선거위원회는 ‘보도’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도, 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2만 6천 650명을 각각 선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 99.9%가 선거에 참가했으며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의 100%가 모든 선거구에 등록된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졌다”고 선전하고 있다.²⁴³

북한 주민들에게 선거는 보위부와 안전원들의 철저한 감독과 통제 하에 치루고, 투표를 안 한다가나 거부할 경우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새터민들은 증언하고 있다.²⁴⁴

²⁴³ 위의 증언.

²⁴⁴ 새터민 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20일.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0월 27일.

8. 여성의 지위

국제인권규약 B규약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남녀의 평등권을 강조하고 있다(제3조).

북한의 현행 여성관련 법·제도²⁴⁵ 및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그동안 북한이 사회주의적 남녀평등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여성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1년 2월에는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도 가입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큼 향상되지 않았으며, 봉건적 가부장 질서에서 형성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도 그대로 남아 있다. 정권 창립 초기에 가사노동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은 여성해방보다는 계급론적 차원과 외연적 성장 추구를 위한 노동력 동원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래 북한당국은 후계문제 등 정치적 고려에 의해 가정의 중요성 및 가부장적 위계질서, 가부장적

²⁴⁵ 북한은 정권창립 이전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제정과 정권 창립 이후 헌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노동법, 가족법 등의 제정을 통해 여성의 정치·사회적 역할을 보장하였으며 호적제도 폐지, 국가에 의한 자녀양육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 정비와 함께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다.

국가관 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명목상의 여성해방 및 남녀평등과 실제적인 여성의 삶 사이에 현격한 괴리가 나타났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1970년대 이래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가운데 20% 내외가 여성의원들이며 지방 인민회의의 대의원들 가운데 20~30%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원 비율은 다른 선진국가 못지않은 정치참여 수준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대의원 선출은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참여의 결과이기보다는 당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안배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여성 대의원은 상징적 대표성의 의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국정을 감독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은 의석비율만큼 높지 않다. 정치적·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지닌 내각의 각료에 등용된 여성도 극소수에 불과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평균 4.5%에 불과하다. 또한 2001년 7월, 북한이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심의에서 북한대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고양 문제와 관련해 “중앙기관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단지 1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남녀평등권 실현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²⁴⁶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참여는 사회주의 건설과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노동력으로 충당하기 위해 장려되었다. 일반여성들은 ‘혁명의 수레바퀴를 끌고 나가는 당당한 근로자’로서 연령(만16세~55세)에 관계없이 국가계획위원회 노동수급계획에 따라 당과 정권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직

²⁴⁶ 이원웅,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제2차 국가인권보고서 심의참관 결과보고서』 참조.

장에 배치되었고, 남녀평등원칙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남자와 동일하게 유해노동과 중노동에 동원되었다.

전후 복구사업과 농업집단화가 진척되고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여러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지면서 여성차별은 직종간의 불평등과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비중과 임금이 낮은 직종에 배치한다는 지침은 직종분리 현상을 심화시켜 보건·상업·보육·교양·교육·체신·문화 등 상대적으로 ‘여성특성’이 요구되는 특정부문에 여성들이 편중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특히 보건·상업·보육·교양 분야 전체 공무원의 70%가 여성이며²⁴⁷ 간호사의 100%, 교사의 86%가 여성이다.²⁴⁸ 북한 경제활동 인구의 50%(1999년)²⁴⁹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특정부문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육체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높으며, 구체적 실례로 북한의 대표적 방직업체인 평양 방직공장의 경우 종업원의 75%가 여성이다. 정부기관 등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65%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노동착취는 심각한 실정이다.

다른 단체에 속하지 않은 31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북한의 여성단체인 『조선민주녀성동맹』(이하 여

²⁴⁷ 위의 글 참조.

²⁴⁸ 2003년 11월 북한의 2차 A규약 이행보고서 심사에서 북한대표단이 밝힌 수치이다.

²⁴⁹ 1999년 3월 6일 『조선중앙통신』은 “경제노력 구성에서 여성비율은 거의 50%나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999년 3월 16일; 2001년 7월 시행된 북한이 제출한 제2차 국가인권보고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심의에서 북한은 현재 인민경제 종업원 총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8.4%라고 밝혔다.

맹)은 여성의 권익 신장 및 보호를 위한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사회 단체로서의 비판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여맹은 당 정책 관철 및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여성들을 조직 동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당의 외곽단체에 불과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육사업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도 사회주의체제에서 표방하는 사회주의 남녀평등과 크게 다르다. 북한당국은 정권 초기에 기존의 남성우월적이며 권위적인 유교적·전통적 가족제도가 사회주의혁명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억압한다는 이유로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과 예속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속에서 그들에게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위한 외형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이래 김일성 유일체제와 부자세습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가족관계에서 전근대적인 전통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 제정·공포된 「가족법」은 폭넓은 금혼의 범위, 부성추종의 원칙, 넓은 가족부양의 범위 등 전근대적인 가부장질서의 요소들을 법조문화 하였다.

북한당국은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가정에서의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가사가 하나의 노동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잔존해 왔기 때문에 북한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노동의 주체로 사회참여를 하면

서도 과중한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 내지 임무와 관련해 북한은 “녀성은 가정의 주부이며 온 가정에 건전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차넘치게 하는 꽃이다. 늙은 부모들이 여생을 값있게 보내도록 잘 돌봐주는 것도 녀성들이며 남편이 혁명사업을 잘 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받들어 주는 것도 안해이며 혁명동지인 녀성들이다. 아들 딸들을 낳아 키우는 것도 녀성들이며 그들을 혁명위업의 미더운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첫째가는 교양자도 녀성들이다”²⁵⁰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사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퇴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 헌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1972년의 헌법에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제6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의 개정 헌법에서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제77조)라고 명시하여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이로써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악화로 인해 가사노동의 사회화, 자녀양육의 사회화 시책이 축소 내지 약화되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난의 과정에서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시책이 축소되고 가정에서 가사 및 양육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북한여성들은 과도한 노동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식량문제 해결과 관련한 가사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²⁵⁰ 박영숙, “가정혁명화와 녀성들의 책임,” 『조선녀성』, 3호 (1999.3), p. 15.

새터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접조사결과들을 통해 보면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이 장사를 통해 경제력이 강해지면서 가정에서의 발언권이 강해진 것은 사실이나 여성들은 세대주를 집안의 가장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가부장 중심의 가정생활에 저항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생계유지 등 가정생활 관련 문제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도 여성들은 부정 내지 저항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순응하는 편이라고 한다. 식량난 이후 가족의 생계유지와 관련해 가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여성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이 강화되고 있음은 북한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존여비사상에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남존여비사상을 “착취사회의 반동적 료리도덕관”이며, “근절되어야 할 봉건유교사상의 잔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남존여비관은 강한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함께 북한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가족법에는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18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북한의 가정생활은 남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내는 남편을 세대주라고 부르며, 세대주는 자녀문제를 비롯한 가정의 모든 일에 있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결정권을 행사한다.

남존여비의 관념과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해 있는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일상화된 현상이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실태는 북한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남성위주의 성에 대한 그릇된 통념과 여성에 대한 경

직된 순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으며 학교 및 사회에서의 성교육 부재에도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서 보다 심화되었으며 특히 여성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 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 7월 북한이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인권 이사회의 심의에서 북한대표는 북한에서 여성매매는 철저히 철폐되었으며, 지난 50여 년 동안 여성매매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함으로써 여성인신매매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인신매매란 북한 법 및 제도와 전혀 일치할 수 없는 현상이며 “국경지대에서 무슨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라고 대답함으로써 북한당국도 인신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북한여성 인신매매는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 인신매매,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 및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인 형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내의 조직적인 여성 인신매매단에 의한 여성의 밀거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말 이래에는 10대 소녀들까지도 인신매매 되었는데, 한 북한이탈여성에 따르면 자신의 친척인 16세된 여성의 어머니가 “팔려가더라도 잘 먹고 잘 살라고” 딸을 중국으로 보냈으며 그 여성은 북한인 중간매개자와 중국 조선족 중간매개자에 의해 한족에게 팔아넘겨졌다고 한다.²⁵¹ 중국으로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강제 결혼, 성폭행, 원치 않는 임신과 부인과 질병, 노동착취, 유흥가 매춘 강요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무시와 구타, 경제적 어려움, 북한거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불법체류 신고 협박과

²⁵¹ 새터민 허○○,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4월 16일.

체포, 송환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⁵²

HRW는 2005년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내 인도주의 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바, 다수의 북한여성들이 유괴되거나 속임을 당해 강제결혼, 매춘, 또는 성적노예 생활을 하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생존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돈을 모으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예상태가 되어 살아간다고 밝히고 있다.

종래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주로 입당 및 직장에서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하여 발생하였다. 당 간부들이 입당을 미끼로, 또는 직장에서 편한 자리에 배치해 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성폭행하며 특히 미혼 여성이 입당하는 경우에 성폭행 사례가 많은 편이었다고 한다.²⁵³ 또한 군부대 내에서 남자 군관들에 의해 여자군인들이 성폭행 당하는 사례도 많으며,²⁵⁴ 거리에서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야 했으나 돈이 없어 내지 못해 단속원의 집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하였다는 사례도 있다.²⁵⁵ 그러나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문제시되지 않는 편이다.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성폭행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으며, 여성들을 하대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폭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직장 내에서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수모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여성 스스로가 침묵하며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²⁵² 김태현·노치영,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3) 참조.

²⁵³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7일.

²⁵⁴ 새터민 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4월 16일.

²⁵⁵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11월 16일.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부양을 떠맡게 된 이후로 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입당이나 직장에서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한 성폭행보다는 장사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장마당 안전원, 열차승무안전원, 군인 등이 단속을 이유로 성폭행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식량난 이후 발생한 성폭행 사례들 가운데 특기할만한 것은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갔다가 강제송환 되어 온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다. 식량난 이후 중국에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강제송환 되어 구속되면 당국으로부터 가혹행위나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돈이나 비밀편지, 비밀문건을 찾기 위한 몸수색 과정에서 자궁검사를 하기도 하며, 심문이라는 구실 아래 여성의 옷을 다 벗기고 몸의 특정 부위에 전기 형을 가하는 등 성폭행을 가한다는 것이다.²⁵⁶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와 성폭행 외에 남편의 아내 구타, 곧 가정폭력의 심각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을 문제시하지 않으며,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성 폭력에 대해 여맹이 개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법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인민반회의 또는 여맹회의에서 한 두 차례 사건 관련 남성을 비난하고는 단순 가정사로 사건을 종결짓는다.²⁵⁷ 따라서 가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남편의 아내 구타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으며 이는 식량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이탈여성들에 의하면 주부들이 장사를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오히려 남편의 음주와 구타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 가정들이 적지 않으며, 남편의 심한 구타로 인해

²⁵⁶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과 북한인권』, pp. 102-105; 새터민 최○○,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21일.

²⁵⁷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0월 20일.

부인이 가출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가정 내 폭력문제에 관한 통계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곧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근으로 인한 북한여성들의 영양실조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결과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건강악화이다. 여성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출산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²⁵⁸ 영양부족 상태에서 수태함으로써 유산 내지 사산, 또는 미숙아 내지 저 체중아 출산 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치게 된 것이다. 또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의료보급체계도 붕괴됨으로써 안전한 피임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들이 잘못된 낙태를 시도하여 아이와 산모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북한에서 혼전·혼외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래 외국문화의 유입에 따른 성의식의 변화와 함께 생계유지를 위한 매춘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혼전·혼외 성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혼전·혼외 성행위에 의한 임신부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법 낙태수술을 감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식량난 이후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률이 급증하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1998년 제2차 어머니대회를 통해 다산이 장려되고 특히 김정일의 ‘아이를 낳을 데 대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낙태나 피임 시술이 불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불법 낙태수술이 많아 졌다고 한다. 그러나 뇌물을 주고 의사를 집으로 불러 비밀리에 중절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마취도 거의 하지 않는 시술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

²⁵⁸ 북한이탈여성들에 따르면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 사이에 생리불순이거나 아예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하여 여성건강을 크게 해치며 이로 인해 불임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한 예로 집에서 불에 달군 쇠 젓가락만을 사용하여 증절 수술을 했던 한 북한여성은 수술 후 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결국은 불임여성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²⁵⁹

수년간 지속된 기근에 따른 북한여성의 건강문제는 위에서와 같은 영양실조와 이로 인한 임신·출산·육아의 어려움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의 대부분이 장사를 수단으로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나 열악한 장사 환경 내지는 조건(소매치기, 강도, 인신매매, 성폭행, 열차·장마당 안전원 및 군인의 횡포 등 타인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대한 불안감과 장거리 도보, 배고픔 등)으로 인해 심신의 건강이 심각한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가족부양의 책임 증가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고통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식량난 이후 여성들 사이에 결핵을 비롯해 자궁암, 유방암, 당뇨병 등을 앓는 환자가 많아졌으며, 특히 매춘으로 인해 성병을 앓는 여성들이 적지 않으나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마당에서 구입한 중국약으로 집에서 치료하는 형편이라고 한다.²⁶⁰

²⁵⁹ 새터민 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4월 16일.

²⁶⁰ 새터민 허○○·최○○,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4월 16일.

III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인권실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제22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식주, 의료 및 필수 공공사업에 있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중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A규약)의 제1조 1항은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지고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조 2항은 모든 인민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규약의 제1조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의 핵심내용이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에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선진국들도 1993년 빈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개도국들이 강조하는 소위 ‘발전권’을 인정하여 A규약이 인권의 중요 부문으로 수용됨으로써 이념적인 대립은 완화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인권보장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면서 정부에 의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권의 보장으로 일반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규약 11조 1항은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의식주를 포함한 자기 자신과 가정이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계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서 개별적 또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식량권과 관련하여, 기아는 인권 존중과 보호의 필수적인 요건인 생존권,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간주하고 식량권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인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식량권과 관련, 1996년 제1차 세계식량정상회담이 열렸고 2001년까지 식량권에 대한 개념 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2002년 제2차 세계식량정상회담에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정부는 식량권의 보호와 존중을 위해서 우선적인 의무를 지고, 이 목적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량권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항상 적절한 식량에 물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또는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있어야 그 실현이 가능하다. 식량권이 단순히 최소한의 영양을 제공하는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는 기아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하는 핵심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⁶¹

²⁶¹ 식량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 E/CN4/2003/54, 23항, 2003년 1월 10일.

1. 식량권

2002년 7·1조치가 취해지기 이전까지 북한주민들의 생필품 공급은 국가 배급제였다.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란 식량을 포함한 모든 생필품을 국가가 배급해주는 제도라고 인식할 정도이다. 실제로 배급제도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핵심적 특징 중의 하나이다. 배급제도가 식량과 식료품뿐 아니라, 의복, 주택 등의 기초 생필품을 포함해서 교육, 의료체계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배급제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배급제는 공급부족인 식량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나아가서 식량배급을 통해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민들에게 식량 여유가 있으면 다른 데로 머리를 쓴다고 판단하고 의도적으로 배급량을 줄인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²⁶² 또한 배급자나 지배자에 대한 감사와 충성심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 북한에서는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서 배급제가 상당부분 붕괴되어 작동되지 않게 되었고, 1990~1995년에는 배급표의 기준량은 무시된 채 세대마다 월 3~5일분의 식량 약 3kg만 공급될 정도로 식량배급이 악화되었다. 1995년 이후에는 배급이 완전 중단될 정도로 식량배급체제가 붕괴되어 1996년 말 부터 식량을 개인이 자체 해결하도록 함에 따라 기관, 공장, 기업소별로 외화벌이 사업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월 3~4일분의 식량을 배급하였다. 2000년 들어서 외부지원이 증가하였고, 2001년에 곡물생산량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북한의 식량배급은 다소 호전되는 추세에 있으나 절대적인 부

²⁶² 새터민 조○○(함경북도 주재 부기지장), 인터뷰 시 증언.

족상태인 것은 차이가 없다.

공식배급은 특수공급지역인 평양, 그리고 당료, 고급공무원, 군인 등 특수계층에 우선적으로 주어졌다. 북한에서 곡물 수매와 식량배급을 담당하는 양정사업소에 10년간 근무하다가 남한으로 귀순한 이○○의 증언에 의하면 농장에서 수확한 식량은 군부대에 배급되고, 외부에서 지원된 식량은 주로 간부계층에 배급되며, 일반주민들에게는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추석명절 등의 명절날에 2~3일분씩 배급된다고 한다.²⁶³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공급했다고 해서 군인들이 넉넉히 배급을 받은 것은 아니다. 군부대에 식량이 우선적으로 공급되지만 장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급되고 사병에게 배급되는 양은 턱없이 부족하여 사병들은 마치 폐병에 걸린 사람처럼 파리해 보인다고 한다. 22년간 군사복무를 하고 탈북한 김○○은 소좌였던 자신도 민들레를 캐어서 옥수수를 넣어 끓인 죽으로 연명하곤 했다고 증언하였다.²⁶⁴ 또한 탈북자 주○○에 의하면,²⁶⁵ 농촌지역은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지방 도시의 노동자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곡물이 부족하고 교통수단이 열악한 산간지대인 함경도·양강도·자강도 등의 식량난은 매우 심각하다. 중앙배급제의 붕괴와 국제지원의 일부지역 편중, 에너지난으로 인한 교통수단의 마비 등으로 인해서 곳곳 주민들은 심각한 식량부족 상황에 처해 있다.

배급이 중단되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자체로 벌어서 먹

²⁶³ 새터민 이○○(함북 양정사업소 검열지도원),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9월.

²⁶⁴ 새터민 김○○(전 북한군 소좌),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월 29일.

²⁶⁵ 새터민 주○○(수매소 지도원)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5월 6일.

고살도록 방치되고 있다. 대부분 북한주민들은 농민시장이나 암시장, 또는 농촌지역에 있는 친인척으로부터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중앙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이용권, 배급표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구매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사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장사에 몰두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의 상당 부분을 암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다. 북한당국에서도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생계를 당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과거 국가차원의 경제발전 정책으로서의 자력갱생을 개인 생계차원의 자력갱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배급제도 붕괴에 따른 귀결인 것이다. 실제로 암시장이 배급제를 대체하였다.

2002년 7월의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기하여 북한의 식량공급체계에 큰 변화가 왔다. 지금까지의 유명무실하던 배급제도가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국영시장에서 현물가로 구매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일상생활용품의 가격을 약 20~40배, 식품가격은 거의 40~50배나 인상했으며, 쌀 가격은 kg당 8전에서 44원으로 인상되었고, 지상 전차요금이 10전에서 1원으로, 지하철요금이 10전에서 2원으로 인상되었다. 식량배급제는 폐지하였지만, 배급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식량의 유통을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를 인상시키면서 임금수준도 이에 상응하는 비율로 인상되었다. 사무직 종사자는 140원에서 1,200원으로, 생산직 근로자는 11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탄광 등 고강도 근로자는 20여 배, 노동자, 농민, 과학자는 10배, 군인 및 공무원은 14~17배 인상되었다. 2002년 국정가격은 암시장 가격 수준으로 인상되었지만 2003년 암시

장 물가는 더욱 큰 폭으로 올랐다. 쌀 1kg 가격은 185~195원으로서 7·1조치 당시의 국정가격 44원의 4배 이상 올랐다.

7·1조치의 골자는 그 동안 국가가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오던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를 최소화하고 유료화하는 것이었다. 김정일이 “무상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등 사회주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제외한 일부 불합리한 사회적 시책들은 현실적 조건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라고 지시(2001년 10월)한 대로 집세, 교통요금 등의 모든 무상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그 가격을 대폭 올렸다. 노동생산성에 상관없이 정액제로 지급하던 배급제가 북한주민들의 노동생산성을 하락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를 초래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한 북한 지도부가 취한 조치이다.

또한 노동보수제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임금노동과 유사한 보수체제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제관리 방식 및 체제의 성격에서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조치를 통하여 사회복지 시스템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주민생활은 국가보장보다는 시장논리에 가까운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러나 7·1조치가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물가가 너무 인상되었고 국가에 지불해야 할 집세, 전기세, 교육세, 교통비 등의 세금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으로서 북한주민들의 부담은 대폭 증가한 반면, 공급측면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활고와 물가고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²⁶⁶

2003년 10월 FAO/WFP는 평양에 거주하는 기득권층들에게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덜하나, 광부들은 2500원

²⁶⁶ 새터민 홍○○(탁아소 관리),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12월 20일.

의 월 임금 중 1/3만 지불되었고, 이것도 2002년 10월에 지급이 중단 되었다고 한다. 또한 정부 관리들에 의하면 많은 기업소나 군 행정단 위에서는 정규 임금의 50~80%가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²⁶⁷ 사실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노동자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고, 외부에서의 자본 투입이 없는 상황에서 만성적인 생필품의 공급 부족을 단시일 내에 극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격인상 및 임금제도에 대해 이미 북한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 “그전에는 일을 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살았으나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데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체제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제 제도마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국가의존적인 인성을 가진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7·1조치 이전에 암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연명하였던 북한 주민들에게 7·1조치는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²⁶⁸ 7·1조치는 시장을 양성화하여 종합시장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의 긍정적 영향을 낳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장사를 하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가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고정된 임금이 없는 일반주민들에게는 인상된 물가와 세금이 그만큼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은 7·1조치 이전까지 암시장에서 장사를 통하여 살아가는 생활이 정착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가만 수십 배로 인상되는 조치가 도입됨으로써 생활고가 심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²⁶⁷ Amnesty International,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Korea),” pp. 6-7 <<http://web.amnesty.org/library/print/ENGASA240032004>>.

²⁶⁸ 위의 증언.

물가 인상으로 암시장 경제에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물가가 급등하여 생활고에 허덕이며, 국가에 지불해야 될 세금이 과중해졌다. 이전에는 전기세 등의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였는데 이제는 세금이 매우 과중하다. 예를 들면, 전기세는 70배 올랐다. 개인 땅도 10평이 넘으면 세금을 낸다.²⁶⁹ 따라서 주민들은 생활고와 물가고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²⁷⁰

이처럼 북한의 2002년 7월 조치는 기존의 배급제도를 크게 후퇴시키고 주식을 포함한 생필품의 인플레이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경제적 측면의 인권 보장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식량수급 현황

북한의 식량 공급 부족은 1991년 북한정부의 ‘하루 두끼 먹기’ 운동을 벌리면서 외부에 알려졌으며, 1992년 배급제가 10% 감축된 이후 배급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1994년 여름까지 일부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식량배급이 중단되었다. 물론 농지가 적고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국가 배급에 의존하고 있던 동북부 지역 주민들은 더욱 극심한 식량난에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량생산의 감소 추세는 1995년~1997년(3년 재해)의 자연 재해로 식량공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1997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6%에 계만 식량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식량생산을 감소시킨 일부 요인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북한의 기아와 식량위

²⁶⁹ 위의 증언.

²⁷⁰ 위의 증언.

기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경작지가 적고 에너지 집약적인 농업생산을 실시하였다. 열악한 토양에 트랙터와 과도한 비료를 사용하였다. 둘째,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 에너지 생산과 석탄 생산의 감소와 더불어 중국과 구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인해서 북한에 호혜적인 무역으로 공급되었던 전략적인 공업용품(원유, 비료, 기술 및 다른 공업산품 등)의 수입이 대폭 감소(과거의 10% 이하)하자 에너지의 전반적인 부족을 초래하였고 농업을 포함한 공업, 수송 등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²⁷¹ 특히 비료생산은 1990년 이전의 12%에 그쳤고 2000년까지 평균 비료투입량의 20~30% 밖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 생산의 감소는 충분한 비료를 투입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남한 정부에 매년 대량의 비료를 지원요청하였고, 2005년에는 50만 톤의 비료 지원을 요청하였다. 셋째, 농업생산에서 협동조합 등 집단적인 생산을 견지하고 농민들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식량생산의 감소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중국의 개혁은 집단농장의 폐해를 인지하고 개인농으로 전환하여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다 자연재해는 식량생산에 급격히 감소시켰다. 북한당국이 발표한 1990년대 식량생산 추세는 <표 III-1>과 같다.

²⁷¹ Meridith Woo-Cumings, "The Political Ecology of Famine: The North Korea Catastrophe and Its Lesson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Research Paper 31*, January 2002, p. 21.

<표 III-1> 1990년대 매년 식량생산

연도	생산량(t)
1990	9,100,000
1994	7,083,000
1995	3,449,000
1996	2,502,000
1997	2,685,000
1998	3,202,000
1999	4,281,000
2000	3,262,000

출처: 북한당국이 2002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

이와 같이 1990년 이래 농업생산성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북한은 매년 100~2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1995~1997년 소위 '3년 재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식량부족 현상은 매년 150~200만 톤으로 심화되었다. 1970년대 한때 470만 톤을 상회하던 곡물생산량은 300만 톤 이하로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식량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1990년 이래 매년 100만 톤 내외의 곡물을 외부로부터 도입하였다. 1994년 이전까지의 외부곡물 도입은 전량 상업적 수입으로 이루어졌으나, 1995년 여름 홍수피해를 계기로 식량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북한은 매년 국제사회의 무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외부 곡물 도입분 중에서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1995년의 33%에서 1998년의 80%로 증가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이 북한식량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5.5%에서 1999년 10.3%로, 2002년에는 16.5%로 증가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래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도 여전히 매년 51만~128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는 연간 100만 톤에 달하던 상업적 수입을 대폭 줄인 결과이다. 북한의 곡물수입은 1992년 83만 톤, 1993년 109만 톤에서 급격히 하락하여 1998년에는 29만 톤으로, 2001년에는 10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북한의 농업생산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곡물생산에 있어 2003년은 425만 톤, 2004년에는 431만 톤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료 지원을 포함한 농업기술 지원, 양호한 기상 및 연료 지원 증가에 따른 농기계 가동률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곡물 소요량을 약 630만 톤으로 계상하면 아직도 20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소한의 식량소요량 510만 톤이라 가정하면 약 9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도에 우리의 곡물지원은 2004년도와 비슷한 40만 톤의 물량이 지원될 전망이고,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은 아직 계획이 없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상업적인 수입을 약 10만 톤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식량을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따라서 2005년에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은 국가 배급량 축소와 곡물가 급등에 따라 4~6월 ‘춘궁기’가 오기도 전에 식량위기에 직면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²⁷² WFP는 북한당국이

²⁷² 식량위기란 식량부족이 심각하나 아사자는 드물고, 극심한 영양부족은 기아상황에서 보다는 적으나 만성적인 영양부족 사태가 지속되며 국가는 식량을 자급할 능력이 없고 많은 식량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를 지칭함.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공배급망을 통해 주민들에게 저가에 공급하는 곡물량을 1인당 250g으로 감축하였고 이것은 원래 목표인 575g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²⁷³ 이러한 공급 축소는 2004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지난 2003년 11월 부터 2004년 10월까지의 평균 305g이 공급되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지난 2004년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WFP의 5월까지 지원물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이례적이다. 한편 곡물 가격이 급등하여 쌀값은 최고 40%, 옥수수값은 20% 치솟았는바, 정부의 배급량 축소로 주민들이 부족한 곡물을 시장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가격은 배급제²⁷⁴ 공급가격의 10배 정도여서 도시 저소득층의 식량 부족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WFP는 2005년도에 북한 주민 650만 명이 기아 선상에 놓였다고 이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5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²⁷⁵

지난 3년 동안의 농업생산 회복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식량마저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수입 능력의 제약으로 아직도 외부의 식량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북 핵개발 문제와 북한 측의 분배에 대한 감시거부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감하였다. 대북지원의 주요 공여국이었던 일본은 납북자 문제, 핵 문제 등을 고려하여 2001년 이래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일본은

²⁷³ 『조선일보』, 2005년 2월 3일.

²⁷⁴ 식량 배급제는 평양시민과 권력계층 및 일부 주요산업 근로자들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

²⁷⁵ 『동아일보』, 2005년 2월 2일.

2000년에 10만 톤, 2001년에는 50만 톤을 지원한 바 있다.

WFP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은 최근 지난해 분 추가식량지원은 지원된 식량이 전달되는 지역에 대한 국제 감시요원들의 접근성 개선 여부에 달렸다고 발표했으며 실제 WFP를 통하여 3,111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수단 등 아프리카 기아 사태 등으로 급격히 감소, 유엔 구호기관들이 기초배급량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식량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당국은 지속되는 식량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농업부문의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올해 신년사에서 농업부문에 필요한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로동신문』은 2005년도에 농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올해 혁명 대고조의 제일 주공 방향은 농업전선”이고 “쌀이 곧 총대이자 국력”이라고 강조하였다.²⁷⁶ 이를 위해 농업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가족단위 경작제 (과거 8~17명에서 2, 3가구의 4~12명으로)를 허용하여 이윤을 보장하는 제도를 발표한바 있다.²⁷⁷ 그러나 농업생산의 증가추세가 주민들의 식량난을 완화해 줄 수 있을 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2002년 7·1조치 이후 임금은 평균 20배 인상되었고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철폐되자 농산물의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농산물의 시장가격은 폭등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기업소와 정부 관리 및 가족들에게도 정부가 약속한 인상된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주민들의 구매 능력은 급격히 저하되어 일반 주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구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²⁷⁸ 이러한 식량위기는 특

²⁷⁶ 『조선일보』, 2005년 1월 4일.

²⁷⁷ 『동아일보』, 2005년 1월 4일.

별한 영양공급이 필요한 임신부와 어린이들의 영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식량난의 영향

북한에서 식량난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양실조 문제이다. 이에 대한 최근 자료로는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심재식)가 발표한 『2003년 북한어린이 건강실태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²⁷⁹ 이 보고서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이 2002년 10월 북한 정부와 함께 실시한 어린이 및 어머니 영양실태 조사 보고서, 북한이 국제기구들에 제출한 각종 자료, 지난 2년간 국내외 여러 구호단체의 부문별 조사자료 등을 취합해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영아 사망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식량난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1994년 1천 명당 14명이었다가 최악의 식량난을 겪은 후인 1999년 22.5명으로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 21명 선에 머물러 있다. 남한의 경우 영아사망률은 1993년 9.9명에서 1996년 7.7명, 1999년에는 6.2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아동들의 영양상태는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 5세 미만 유아 250만 명 중 영양결핍아는 120만 명으로 2명에 1명꼴이다. 이들 중 급성 영양장애는 25만 명, 중증 영양장애는 4만 명, 빈혈은 100만 명, 비타민A 결핍은 100만 명에 달한다. 급성의 중증 영양상태에 있는 어린이 7만 명은 당장 병원에서 영양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위

²⁷⁸ Amnesty International,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Korea)," pp. 6-7.

²⁷⁹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북한어린이 건강실태 보고서』, 2003년 12월 20일.

힘에 놓이게 된다.

모성 사망률(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연유된 산모의 사망)이 지난 1990년 출생아 10만 명당 70명에서 1996년 110명으로 급증했으며 2002년에는 87명으로 줄었으나 남한에 비해 5배 이상 많다. 2세 미만 아이를 가진 여성 중 45kg이하 체중을 가진 비율은 16.7%를 차지했고, 32%가 영양장애 상태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신생아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질병이 있을 경우에만 우유를 먹이는데 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모유 수유만을 하는 비율은 69.6%로 높은 편이나 산모의 영양 상태가 나빠 어린이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의 성장과 발육에 관한 2002년도 설문 조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는 2002년 10월 UNICEF와 WFP가 북한 정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사로서 북한의 12개 시·도 가운데 10개 시·도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6천 가구의 7세 미만 어린이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된 어린이와 어머니의 영양실태에 관한 조사이다.²⁸⁰

조사결과에 따르면, 같은 연령 대 평균에 비해 현저히 체중이 떨어지는 저체중(underweight) 어린이의 비중은 20.1%로서 98년 조사 때의 60.6%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또 신장 대비 체중의 현저한 저하로 판단하는 급성 영양실조(wasting) 어린이는 16%에서 9%로, 같은 연령대 평균 신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신장으로 나타나는 만성 영양실조(stunting; 위축증) 어린이는 62%에서 42%로 각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세의 남북한 어린이의 발육 상황을 비교해 보면 남한의 어린이는 키가 125cm이고 체중은 26kg으로 북한

²⁸⁰ “Report on the DPRK Nutrition Assessment, 2002,”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November 20, 2002).

어린이는 남한 어린이 보다 키가 20cm 작고 체중은 10kg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⁸¹

두 유엔 산하 기관은 이번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로 실시됐던 1998년의 조사가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큰 흐름은 북한의 어린이 영양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비춰보면 북한 어린이들의 급성 영양실조 비율과 만성 영양실조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2003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영양실조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²⁸² 또한 2003년 10월 FAO/WFP 보고에 의하면 영양결핍 어린이 비율이 대단히 높은 바 42%의 어린이들이 만성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이 2001년 5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UNICEF 회의에 제출한 1990년대 북한의 기근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식량난의 영향이 잘 드러난다.²⁸³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식량난과 약품 부족으로 평균수명이 1993년 73.2세에서 1999년 66.8세로 6년 가량 줄었다. 또 같은 기간에 인구 천 명당 5세 이하 아동 사망자수가 27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다. 출생률은 1993년 2.2%에서 1999년 2%로 줄었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GNP)은 991달러에서 457달러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4년까지 86%에 달

²⁸¹ Amnesty International,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Korea)," p. 13.

²⁸²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Decision,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N.4/2003/L.11, 2003/10, 16 April 2003).

²⁸³ UNICEF, "UNICEF Humanitarian Action, DPR Korea," July 12, 2001.

하던 안전한 식수 공급률이 2년 뒤에는 53%로 떨어졌으며, 소아마비와 홍역 예방 백신 공급이 1990년의 90%에서 1997년 50%로 낮아졌다. 이 자료는 북한이 2002년 5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제인권규약 A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다.²⁸⁴

식량난은 가장 취약계층인 어린이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 2002년 국제기구에 제출한 자료,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 민간지원단체의 보고서에 의하면²⁸⁵ 5세 미만 어린이 100만 명 중 3분의 2가 급성호흡기 감염증으로, 20% 이상이 설사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어린이 사망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사병은 1995년 이후 30%, 급성호흡기 감염증은 25% 정도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망률은 무려 80%에 달했다. 또 진료소를 방문하는 어린이 40~50%가 수인성 질환을 앓고 장마철에는 60~70%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라리아 발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난 1998년 2천100명에서 1999년 9만5천960명, 2000년 20만4천428만 명, 2001년 29만5천570명에 달했으나 2002년 7월 현재 9만806명으로 급감했다. 이와 같은 개선은 국제사회의 의료지원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모의 영양불량과 산과 진료 부족 등으로 산모사망률도 계속 증가하였다. 1990년 10만 명당 70명에서 1996년에는 110명으로 늘었고, 영아사망률도 1993년 1천 명당 14명에서 1999년 22.5명으로 늘었다. 또 산모와 수유부 45만 명 중 30%가 철분부족과 빈혈에 시달리고 있으며, 1995년 이후 저체중 신생아도 계속 증가해 평균 체중이

²⁸⁴ 보고서 전문은 <[http://www.unhcr.ch/tbs/doc.nsf/\(Symbol\)/c3b70e5a6e2df030c1256c5a0038d8f0?Opendocument](http://www.unhcr.ch/tbs/doc.nsf/(Symbol)/c3b70e5a6e2df030c1256c5a0038d8f0?Opendocument)> 참조.

²⁸⁵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북녘 어린이 건강상태에 관한 심포지엄' (2002.11.14, 세종문화회관).

3.3kg에서 2.2~2.6kg으로 감소했다. 한편 지난 95년부터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혜택을 받은 북한 주민은 642만3천600명으로 추산됐다. 그 중 탁아소(6개월~4세) 어린이는 135만6천400명, 유치원(5~6세) 어린이 64만9천600명, 소학교 학생 139만4천100명, 중등학교 학생 67만6천 명이었다. 또 노인은 36만5천 명, 산모 35만7천 명, 취로사업 참가자 및 부양가족 120만 명, 춘궁기 절량(絶糧) 주민 14만4천 명, 재난 피해자 25만 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²⁸⁶

경제난은 북한주민들의 의료보건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결핵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소개한 사단법인 어린이 의약품지원본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세계적으로 결핵 발생의 80%를 차지하는 22개 국가 중 하나로, 결핵환자 발생 수는 1990년대 초 인구 10만 명당 38명에서 2002년 말 22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01년 결핵환자 발생 수는 4만7천명이고, 결핵에 의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1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4년도 환자 발생 수는 5만5천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60여개 요양소와 12개의 병원이 있으나 약이 없어 외부의 지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추운 겨울에는 병실에 난방이 되지 않아 결핵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말라리아 환자는 1998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01년 거의 30만 명에 근접했다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지원에 힘입어 2002년 25만4천 명으로 처음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4년도는 2003년에 비해 72.3%까지 감소하는데 2004년 9월 10일 현재 말라리아 환자 수는 3만8천920명으로 2003년도 같은 기간의 18만5천

²⁸⁶ 『연합뉴스』, 2002년 11월 14일.

42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식량난에 따른 기아와 이와 관련된 질병 및 의료체계의 미비 등이 겹쳐서 대량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함경북도 정평군의 경우 전쟁을 겪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²⁸⁷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아사자수는 발표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2001년 5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UNICEF 회의에서 최수현 북한 외무성 부상은 1995년에서 1998년 식량난 때 북한주민 22만 명이 숨졌다고 밝혀 이것이 북한당국의 아사자에 대한 공식통계로 인용되고 있다.²⁸⁸ 국경없는 의사회(MSF)는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난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지난 1995년에서 1998년 사이 350만 명이 기아, 또는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²⁸⁹ 한편 1999년 9월 데이비드 모턴(David Morton) 북한주재 WFP 대표는 지난 1995년 이후 북한에서 기아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 명 내외라고 밝혔다.²⁹⁰

1999년 2월 한국정부는 북한의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성) 내부문건을 인용하여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기아 등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50~300만 명 정도라고 밝혔다.²⁹¹ 또한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노동당원 교육에서 “지난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아사자가 200~250만 명 정도였고 탈출자가 20만 정도였다”고 교육받았다고 한다.

²⁸⁷ 새터민 이○○(함남 약초관리소 근무),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4월 23일.

²⁸⁸ UNICEF, “UNICEF Humanitarian Action, DPR Korea,” July 12, 2001.

²⁸⁹ 『연합뉴스』, 2001년 7월 30일.

²⁹⁰ 일본 사이타마 대학 요시다 야스히코 교수가 世界週報(1999.11.16)에 기고한 글.

²⁹¹ 『연합뉴스』, 1999년 11월 25일.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는 1996년 11월 중순 식량상태와 아사자 통계를 정기적으로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중앙당 조직부 책임자를 통해 1995년 당원 5만 명을 포함해 약 50만 명이 굶어 죽었으며, 1996년 11월 아사자수가 1백만 명에 이른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1997~1998년에 식량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매년 1백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직 외교관인 김○○는 로마에 근무할 1998년 당시 평양에 다녀온 김홍립 대사로부터 북한 내 아사자가 2백~3백만 명에 이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1994년 이후 아사자 350만 명), 국군포로였던 장○○(1997년 아사자 100만 명), 뉴욕에 본부를 둔 대외관계위원회의 35인 특별조사반(1996~1997년 아사자 100만 명) 등도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상의 엄청난 수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1999년~2003년 들어서 아사자의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더 이상 국가의 배급을 기대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는 암시장 체제에 북한주민들이 점차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노약자 등 식량난에 취약한 계층이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1995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어느 정도 식량난 개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식량위기는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것은 식량난에 따른 영양실조와 질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식량난에 의한 엄청난 아사자는 인도적인 참사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 주민 22백만은 식량위기로 견강한 생활을 위협 당하고 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적절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고 정부가 식량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의무를 준수할 때 생명권이 존중될 수 있을 것이다. 식량위기는 생명권 이외에 다른 권리들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량위기의 지속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아무리 사상교육이나 생활총화가 강조되더라도 당과 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는 냉소적이 되고, 소위 ‘말반동’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말반동’에 대해서 정치범수용소로 보냈으나 그 수가 많아짐에 따라 김일성·김정일 가계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비난이 아니면 눈 감아 준다는 것이다.²⁹² 따라서 식량난은 당국의 사회 통제를 완화하는 측면도 있다.

사회적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도 있다고 한다.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식량이 부족하여 어른들이 각자 흩어져 식량을 구입하러 집을 나가서 병들어 죽거나 행방불명되기 일쑤이며, 집에 남은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꽃제비가 된다고 한다. 식량난의 정도에 따라 이들의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식량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북부 변경지역에는 가족이 모여서 정상적으로 사는 집이 많지 않다고 한다. 한 가족이 한집에 모여 사는 집이 많지 않으며, 생활이 향상될 때까지 각자 뿔뿔이 헤어진다고 한다.²⁹³

새터민 홍○○은 북한당국이 2002년 7·1조치를 취하였으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범죄가 늘어났으며, 1999년부터 꽃제비가 없어 졌으나 2003년부터 다시 생겼고, 꽃제비

²⁹² 새터민 ○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2일, 새터민 박○○,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3일.

²⁹³ 새터민 김○○(함북 청진시 선전대 근무), 인터뷰 시 증언.

가 되는 것은 순간의 일이라고 증언하였다.²⁹⁴ 또한 많은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식량난으로 이기주의가 심화되어 혼자라도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이혼율이 증가하고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도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특히 1996~1998년 식량부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공개처형을 빈번히 자행하였다. 식량난으로 빚어진 기아와 관련된 생계형 범죄, 즉 식량을 위해서 곡물과 가축을 탈취하거나 정부 재산을 절취한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으로 탈북한 후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해서 공개처형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탈북한 수가 많아서 중국을 포함한 해외체류 시 남한 사람 또는 남한의 종교인들과의 접촉한 경우 이외에는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고 강제송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및 성적인 착취 대상이 되어 탈북자들의 생활은 참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⁹⁵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집결소 등 구금시설에서 극심한 구타와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아 사망하거나 또는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²⁹⁶ 특히 여성의 경우 한족과의 사이에 임신을 한 경우에는 유산시키거나 또는 갓 낳은 영아를 살해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식량난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의 증가로 노동교화소 등 구금시설 수감자가 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에서 급식, 부적절한 위생, 영양실조와 고문 등으로 살아남기 힘들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실 많은 새터민들은 교화소는 짐승만도 못한 생활이라고 증언하고 있다.²⁹⁷

²⁹⁴ 새터민 홍○○,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²⁹⁵ Amnesty International,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Korea)," p. 15.

²⁹⁶ 위의 글, p. 16.

주택사정

북한의 주택 보급률은 56~63%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의 경제난은 주택공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경제난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되자 시멘트가 소요되는 일체의 주택건설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시멘트를 수출하여 식량을 수입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또한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던 전기를 석탄생산 부문으로 돌렸기 때문에 시멘트 생산량도 감소했다고 한다.²⁹⁸ 주택 사정이 이같이 어려운 것은 시멘트와 같은 기본 자재의 부족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전문 인력과 식량 부족 때문이다. 그런데 2000년 들어서 주택건설이 다시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에 짓기 시작하였던 집들이 최근 들어서 준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²⁹⁹

대한주택공사의 『북한주택문제연구』에 따르면 지방의 리, 읍 등에 거주하는 일반주민들은 대체로 주택 당 2~3가구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다. 주거상황도 매우 열악하다. 난방이 제대로 안되고 상수도 시설이 낙후하며 화장실도 크게 부족하여 공동화장실을 몇 가구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평양시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지만 지방도시와 농촌지역의 주택사정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북한이 2002년 5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제인권규약 A규약 2차 정기보고서는³⁰⁰ 북한의 주택사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홍수 때문에 많은 주택이 파괴되어 주거시설의

²⁹⁷ 새터민 최○○,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1일.

²⁹⁸ 새터민 김○○(남포시 거주),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9일.

²⁹⁹ 새터민 윤○○,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12일.

³⁰⁰ 보고서 전문은<[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3b70e5a6e2df030c1256c5a0038d8f0?Opendocument](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3b70e5a6e2df030c1256c5a0038d8f0?Opendocument)> 참조.

부족을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홍수를 주택부족의 이유로 돌렸으며 별거가 필요한 세대가 15만 1천 세대,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세대가 35,000세대로서 모두 186,000채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택건설 동향을 보면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년)중 매년 15~20만 가구의 주택건설 목표를 설정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등 다세대 주택 위주로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북한에서 주택건설이 매우 활발했던 시기인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년)중에도 연평균 건설실적은 4.1만~4.9만 세대에 불과했다. 북한 주민의 새로운 주택수요가 연간 5~6만 가구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연간 4만여 가구 건설은 신규 주택수요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크게 부족한 수준이었다.

북한 언론들은 2001년 9월 1995~1997년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근 30만 가구의 현대적인 살림집(주택)들이 건설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평양과 지방의 도시들에 9만 4,000여 가구, 농촌에는 약 3만 가구 그리고 지난 1999년에는 6만 2천여 가구의 주택들이 건설된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 속에 연이은 집중호우, 해일 등으로 피해가 극심했던 시기여서 신규 주택건설 보다는 주로 훼손된 기존 주택의 복구에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주택사정이 어려운 것은 새터민들의 증언에서 실상이 잘 드러난다. 새터민 김○○은 22년간 군사복무를 하고 소좌로 제대한 자신에게도 주택이 공급되지 않아서 누이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중국을 거쳐서 탈북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³⁰¹

³⁰¹ 새터민 김○○(전 북한군 소좌),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월 29일.

최근에는 도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상은 국가 소유의 주택으로 거주자가 자식과 친척들과 합치는 ‘합가’를 대상으로 도시경영과 간부들이 외화벌이 또는 장사로 축재한 사람들과 권력층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래를 주선하고 거간비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주택난을 악화시키고 있다.³⁰² 북한 당국이 2003년 3월 제정한 상속법에서 국가소유의 주택을 상속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주택은 투기와 축재의 대상이 됨으로써 7·1 조치 이후 심화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고, 일반주민들의 주거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권이라 함은 신체장애,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북한 헌법과 사회보장법 등을 보면, 북한은 제도적으로는 완전한 사회보장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헌법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병약자·노약자·어린이 등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2조).

³⁰² 새터민 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1월 11일.

실제로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가사회복지제도의 양축인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다. 둘째, 대표적인 공적 부조에 해당되는 의·식·주의 공급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급여로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이는 소득보장제도에 해당된다. 셋째, 이와 달리 건강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제도인 경우에는 무상치료제로 분류된다. 그리고 무상치료제의 경우 상술한 제도와 달리 현물과 현금급여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의료급여가 제공된다.

이러한 제도들의 기능은 수급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국가사회보장, 의·식·주 공급제, 무상치료제는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가계생활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국가사회보험에 해당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경우 2차적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보면, 1995년 보험법을 제정하였고 1999년, 2002년 2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보험에는 생명보험, 재해보험, 어린이보험, 여객보험 등 인체보험과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등 재산보험으로 구분되고 있다(보험법 제2조). 그리고 보험사업은 국가보험관리기관과 보험회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제5조). 이와 같이 북한에서도 보험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연금제도가 있다. 『사회주의노동법』(1978.4 제정, 1986, 1999년 개정)에 따라 각각 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까지 일정 근속연한을 채운 경우 연로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74조). 이외에 공적 부조는 특별대상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생활보호, 재해구호, 원호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생활보호 시책으로는 국가공로자, 인민군 군관 및 하전사의 부양가족, 제대군인, 북송교포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생활보호가 있다.

북한당국은 사회보장제도 면에서 선진국보다 앞서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보장 시책은 제도와 실천 간에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필요한 재원의 부족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식량배급이 평양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노약자·병약자 등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가령, 정년퇴임자의 연금제도는 법적으로는 완비되어 있지만 경제난으로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상황이 악화된 것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계기로 사회보장제도의 상당부분이 폐기되었다는 점이다.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제도를 외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7·1조치로 인해 복지시스템의 운영원리와 복지급여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즉 7·1조치로 인해 사실상 포기한 의·식·주 공급제와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 명시한 각종 복지급여의 모순과 마찰은 과거와 달리 가입자는 자신의 노동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가사회복지제도가 지향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7·1조치로 인해 가계의 인민복지의 책임이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가족으로 전가되었다.

또한 현금·현물 급여의 수준과 성격 그리고 기능이 과거와 달리 변화하였다. 즉 7·1조치로 인해 실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각종 복지급여의 구조가 기존의 노동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노동기술, 재정기여, 노동수입 등에 따라 차등화 되었다. 특히, 현물급여인 쌀 가격의 인상은 노동자와 국가사회보험, 국가사회보장 대상자의 생활보장 기능을 후퇴시켰다. 이에 따라 열악한 북한 사회복지현실에서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을 위한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7·1조치로 인해 북한 사회복지이념은 인민복지의 책임주체의 변화를 야기하여 국가의 책임은 최소화 되었고 개인과 가족의 책임은 극대화 되었다. 결국 7·1조치는 북한식 ‘사회복지 개혁’이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왜곡 내지는 마비되었던 북한의 사회복지체제를 북한 스스로 인정하고, 이러한 부문에 대한 과도한 국가책임을 자신들이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이러한 실태를 잘 드러내준다. 북한에서 정년 퇴임 후 남한으로 귀순한 김○○의 증언에 의하면, 정년 퇴임자에게 배급 600g, 노임 60원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배급은 물론, 노임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노임은 저금통장에 문서상으로 입금만 해주지만 인출은 못한다고 한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퇴직하면 살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한다.³⁰³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군인에 대하여 우대를 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게 주택도 배정해주지 못한다고 한다. 22년 동안이나 군사복무를 하고 소좌로 제대한 김규○의 증언에 의하면 제대 후에 주택배정도 못 받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여 대흥단군 누나 집에 기거하며 중국을 몇 번 다니다가는 결국 남한으로 탈북하게 되었다고 한다.³⁰⁴ 이러한 증언은 북한의 공적 부조 제도의 실상을 잘 드러내어 준다. 이처럼 북한의 사회보장 시책은 제도와 실천 간에 괴리가 많았고, 경제난과 식량난의 악화로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식량배급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노약자 및 병약자들의

³⁰³ 새터민 김○○(전 의과대 당 비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11월 13일.

³⁰⁴ 새터민 김○○(전 북한군 소좌),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월 29일.

희생이 컸다.

북한당국이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앞세워 자랑하고 있는 부문은 ‘무상치료제’이다. 북한은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헌법 제5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볼 때 북한은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그리고 예방의학적 방침 등에 관련된 보건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기초로 질병 발생 사전예방이라는 의료보건 정책의 목표를 위해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 주민들로 하여금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의사담당구역제는 담당 의사들의 진료수준 및 자질 미달과 4~5개 인민반을 책임지는 호 담당의사에게 최고 4,000명까지 진료케 하는 과다 할당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의료기관으로 각도 인민위원회 소재지에 대학병원과 중앙병원 1개, 시·군 인민위원회 소재지에 1~2개의 인민병원, 리 및 노동자 구역에 리인민병원과 진료소 1개, 작은 리·동을 몇 개씩 묶어 종합진료소 1개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 인민병원 이상 급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북한주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주민들의 수에 비해 병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모든 병원은 치료 대상과 급수를 정해 놓고 진료대상이 아닌 주민들의 치료는 불허하고 있다. 간부 전용 병원이 있으며, 동시에 일반병원에도 간부과와 일반과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 평양에서부터 시, 군단위의 병원에 간부과가 따로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

평양의 ‘봉화진료소’(김일성·김정일 가계와 당·정 장관급 이상),

‘어은병원’(군 장령), ‘남산진료소’(차관급 이상, 일부 인민배우·북송 교포) 등 특권층을 위한 의료시설은 일반주민의 치료를 불허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은 보통 동·리 진료소나 시·군·구역 병원을 이용한다.

북한의 무상치료제라는 제도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경제난에 기인한 재원부족으로 무상치료제 역시 실현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의료체계와 의료서비스는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다. 가령, 의사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진단을 해주고 처방도 해주지만, 의약품을 확보하는 것은 환자의 몫이다. 병원에 의약품이 없기 때문이다. 환자는 장마당이나 의사가 소개하는 개인에게서 유상으로 구매한다고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부족현상 속에서도 그나마 평양은 지방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한다.³⁰⁵

북한을 방문하여 의료실태를 관찰한 국제기구, NGO 요원들의 증언, 북한을 방문하여 취재한 기자들의 보도, 북한에서 30년간 의사로 활동하다가 탈북한 사람의 증언, 북한 병원의 초급당 비서를 지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의료실태를 검토해본다. 이들의 증언은 매우 일관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내용들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증언은 평양, 지방도시, 농촌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과 간부급 병원과 일반병원 간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북한 주재 대표인 아이길 소렌슨은 2004년 1월 한국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위기라고

³⁰⁵ 새터민 박○○,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3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평가하였다.³⁰⁶ 그에 의하면 북한 병원은 전기 및 식수난으로 병원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응급환자가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겨울 혹한기에도 병실에 난방이 안 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2001년 11월에 사흘간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의료 상황을 관찰한 브룬트란트 WHO 사무총장은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이 붕괴의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북한의 병원들이 수도물과 전력 등 기본적인 것마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며,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부족은 말한 나위가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농촌의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증언하였다.³⁰⁷

북한에서 1999년 7월부터 의료 활동을 하다가 2000년 12월 추방당한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³⁰⁸ 북한의 일반병원에는 항생제와 반창고와 같은 의약품은 물론 외과수술용 메스와 같은 간단한 수술기구도 찾아볼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에 반해서 군고위층과 엘리트들이 사용하는 병원은 독일의 현대식 병원 못지 않는 병원으로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기기, 심전도, X선촬영기 등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일반병원과 고급간부 병원간의 엄청난 불평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즈의 엘리자베스 로젠탈 베이징 특파원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의료실태를 취재하여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폴로첸 의사의 증언과 비슷하다. 그녀는 미국의 민간원조 단체인 아메리케어스

³⁰⁶ 『연합뉴스』, 2004년 1월 29일.

³⁰⁷ 브룬트란트(WHO 사무총장)의 방북 소감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1년 11월 20일.

³⁰⁸ 노르베르트 폴러첸, “형무소 국가,” *Wall Street Journal*, 2001. 4. 17.

(AmeriCares)와 함께 평양과 인근의 병원, 고아원 등에 대한 원조계획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북한을 방문 취재한 바 있다. 그녀는 북한의 병원에서는 목 수술을 하는데 전신마취를 할 약품이 없어서 부분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있었으며 의사들은 수술도구를 철공소에서 직접 제작해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³⁰⁹ 엘리자베스 로젠탈 기자는 평양주재 유엔 조정관 데이비드 모턴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였는데 모턴 조정관은 병원에 약이 없고 식수가 오염되어 있어 북한의 보건체계가 붕괴위기에 있다고 밝혔다.³¹⁰

국제적십자사는 2000년 6월 28일 발표한 세계재해지역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은 심각한 장비와 의약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70%가 전통적인 약초인데 이것은 양약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연간 4만 명이 결핵에 걸리는 등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00년 2월 북한을 방문하여 관찰한 국제적십자사의 오언 데이비스는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조차도 전신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만 하는 형태로 시술하고 있다고 북한의 의료실상을 평가하였다.

‘국경없는 의사회’ 브래돌회장은 북한의 병원은 기본 장비가 없고 그마저 오래된 것이어서 폐렴 같은 병에 걸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³¹¹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북한의 의료실태에 대한 평가는 새터민들의 증언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서 1968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1998년 남한으로 귀순하기까지 30여 년간 북한에서 의

³⁰⁹ 엘리자베스 로젠탈 기자의 방북 취재기사, *New York Times*, 2001. 2. 20.

³¹⁰ 위의 기사.

³¹¹ 한국 한나라당 국회의원 모임 『미래연대』 초청 강연, 2000년 12월 15일.

사로 활동하다가 탈북한 김○○(가명, 함북 ○○시병원 소아과의사)의 증언은 북한의 의료실태를 다음과 같이 매우 체계적으로 증언하였다. 그에 의하면 북한당국의 의료서비스는 1990년경부터 마비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의료정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예방의학적 방침인데 아동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BCG 접종은 1992년 이후 없어졌다고 한다. 북한에서 예방접종은 콜레라와 일본뇌염 등에 한하여 실시하는데 이것도 보안성 요원과 출장을 다니는 간부들 등 극소수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한다. 아동들에게 단계별 면역을 조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전염병과 질병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염병인 콜레라, 유행성 간염 등이 많으며 간염 중에는 B형 간염이 많은데 이는 주사기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한다. 2002년 8월에 탈북한 손○○은 북한주민들이 최근에 간염과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³¹²

북한에서의 문제는 의료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병원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함경북도 단천시 병원의 경우, 주사기 200개, 주사침 2,500개 등이 최소한 구비되어 있어야 할 장비인데, 주사바늘과 주사침이 5개 정도뿐이며 이것마저도 주사기 피스톤이 마모되어 불량한 상태라고 한다. 청진기도 제대로 없었다고 한다. 김○○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을 졸업하던 1968년에 쓰던 청진기를 탈북 시까지 사용하였는데 고무줄이 녹아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체온계가 없어서 환자의 체온을 잴 때는 환자의 이마에 의사의 이마를 맞대고 온도를 확인한다고 한다. 검사기자재 부족으로 환자들의 혈액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

³¹² 새터민 손○○(외화별이 중사),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4일.

에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도 없다고 한다.

의약품 및 장비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병원에 약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시장에서 약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 내려주며 의약품 구입은 환자에게 맡긴다. 환자가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오면 의사는 투약방법을 지시해주는 정도이다. 청진시에서 1999년까지 여자의 사였던 김○○에 의하면 북한의 의사는 진단서를 떼어주는 역할에 불과하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한다. 단순 소화 불량인 어린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함경북도 청진지역 병원은 혈압계, 체온계 등의 기본 장비도 의사 6명당 1개 정도밖에 없으며, 의약품 부족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한다.³¹³ 의사들은 약품이 부족하여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간부들만 치료약품을 투여해주고 나머지는 상담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해외에 나가는 인편이나 해외친척에게 의약품 구입을 가장 많이 부탁한다고 한다. 병원에 얼마간 공급되는 약은 평민에게는 못주고 간부들에게만 준다고 한다. 병원에는 약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환자들이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판매하는 약에는 가짜가 많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이 약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약품이 부족해지자 희소가치화 되어 암시장으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약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약공장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소량이나마 공급되는 약은 간부들을 통하여 횡령되어 유출되는 사례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투약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에 의해서도 암시장으로

³¹³ 『연합뉴스』, 2002년 7월 3일.

유출된다고 한다.

둘째, 의료시설의 붕괴로 인해 무상치료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로서 가족들이 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병원 초급당 비서를 지낸 새터민 차○○³¹⁴에 의하면 지방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들의 식사와 병실의 난방도 환자 가족이 책임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입원환자들에게 제공할 식량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입원도 제한하고 있으며 각 진료과목별로 입원환자의 비율을 제한하여 아주 위급한 응급환자 외에는 입원을 불허하고 있다. 파라티푸스, 콜레라,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등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전염병 환자들을 병원에서 격리 치료했으나 환자가 너무 많아 자택치료를 하고 있다.

셋째, 북한당국은 의약품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요법을 장려하고 있다. 즉, 각 병원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발휘와 ‘항일유격대식 사업’ 전개를 통해 의약품을 자체 생산하는 ‘생산기지’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하는 한편, 한방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약초재배 및 증식에 대한 ‘전군중적 운동’의 전개를 촉구하고 각종 민간요법도 소개하고 있다.

넷째, 의사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약을 해주고 뇌물을 받으며,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진료를 해주면 무료이기 때문에 야간에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의사들이 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을 아는 사람들에게 유출시키고는 환자들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약을 사도록 소개하는 방식으로 돈벌이를 한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다.³¹⁵ 의사들은 또한 진단서를 발급해주

³¹⁴ 새터민 차○○(회령시 병원초급당 비서), 인터뷰 시 증언.

³¹⁵ 새터민 김○○(전 무역회사 직원),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3일.

고 돈을 받는 사례들도 많다고 한다. 환자들은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직장 출근을 면제받아서 장사를 하는 시간을 얻는데 활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의사들도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산에 개간해 놓은 개인농장에 교대로 일을 하러 나간다고 한다.

특히 심각한 점은 에너지난에 따른 전력사정이 의료실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술과정에서 정전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의사들은 수술을 시작하면서 정전을 걱정하게 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수술 전에 미리 전기담당부서에 확인하고 부탁하지만 평양적십자병원조차도 30% 정도 정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³¹⁶

북한은 매년 서방세계로부터 수백 톤의 의약품을 지원 받고 있다. 북한은 외부지원으로 들어온 의약품을 특권층용으로 전용한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의약품 사용에 대한 내역과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새터민 김○○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의약품이 국제지원 단체를 통해서 ○○시 병원에도 일부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역 및 병원의 간부들이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프다는 핑계로 무더기로 빼내어 가서 장마당에 비싼 값으로 판다고 한다. 1998년 9월 30일 북한에서 무상 의료지원 활동을 벌여온 ‘국경없는 의사회’(MSF)가 북한 철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국경없는 의사회’ 에릭 구마르 사무총장은 의료지원팀의 철수에 대해 “북한당국이 의료인들의 북한주민 접근을 차단하고 지원된 의약품의 배급감시를 거부하는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지원을 하려는 「국경없는 의사회」의 활동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철수한다.”고 하였다.³¹⁷

³¹⁶ 새터민 박○○,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3일.

³¹⁷ 『내외통신』, 주간판 1131호 (1998.10.15).

3. 근로권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3조). 국제인권규약 A규약 제3조도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7조는 그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 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국제인권규약 A규약에는 체약국은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근로권과 노동조합에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조와 제8조).

북한헌법에는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70조). 그러나 노동에 관한 권리는 사실상 권리보다는 노력동원의 의무에 가깝다.

헌법에서는 노동의 신성한 의무(헌법 제83조), 지속적이고 강도 높

은 노동(헌법 제34조) 등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노동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전 주민의 의무로 되어 있다. 『사회주의 노동법』(1978.4.18 최고인민회의 제정)에서도 헌법이 규정한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만 16세 이상의 모든 북한주민은 이와 같은 규정과 헌법 제31조에 따라 좋은 싫든 당이 정해주는 직장에서 법이 정한 연령(남성 60세, 여성은 55세)까지 노동할 의무를 지닌다. 북한주민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자유노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노동조합 형태인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업동맹)은 단체조직권이나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을 갖지 못하며, 노동당만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직업동맹은 단지 노동동원을 위한 통치조직일 뿐이다. 1964년 6월 당 중앙위 제4기 9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기업관리에 대한 직업동맹의 ‘감독 통제적 역할’이 폐지됨으로써 직업동맹은 당의 완전한 통제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의 직업동맹은 “조선로동당과 노동계급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당의 적극적인 방조자”일 뿐이다.

북한당국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노조활동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여 강력히 다스리고 있다. 형법에는 직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의 산업, 운수, 상업, 화폐유통, 신용제도를 파탄·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59조). 또한 직무를 태만하게 이행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징역종료 후 4년간 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61조). 이러한 법규정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조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강

제적이거나 강압적인 노동에 대한 금지조항은 없다.

한편 북한헌법 제71조와 사회주의 노동법 제62조에는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주의 노동법에는 “모든 로동자들은 연간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휴가일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직장 정치조직의 선전선동과 압력에 의해 휴가를 반납할 수밖에 없고, 김일성 부자의 생일이나 국가적 명절에만 1~2일 정도 휴식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헌법에는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라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제30조). 그러나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한다”는 규정(사회주의노동법 제33조) 때문에 8시간 휴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노동자들은 기본 일과시간 이외에도 추가 노력동원, 각종 학습 및 회의 등에 의해 혹사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북한당국이 정해 놓은 일별·월별·분기별 사업계획에 따라, 초과달성을 위해 ‘90년대속도창조운동’ 등과 같은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에 동원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간의 연장은 불가피하였다.

북한주민에게 노동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지만 북한 공업노동자의 다수는 실업상태에 있다.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공장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할 직장이 없는 셈이다.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공장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를 하다가 시장에 장사하러 나가곤 한다.

4. 직업선택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3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A규약에는 체약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6조).

북한헌법에는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0조). 그러나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개인들의 의사보다는 당과 정권기관의 인력수급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직장배치는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소질·능력은 부차적이다.

한 예로 의사인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 면허를 획득하게 되면 국가가 일률적으로 배치하는데 본인의 의사가 30% 반영되고 70%는 국가가 결정한다.³¹⁸ 그러나 원하는 곳으로 직장을 배치받기 위해 간부에게 뇌물을 바치는 사례도 있는데 한 새터민은 전문학교에 다닐 때에 5천원을 간부에게 주고 온성으로 배치 받았다고 한다.³¹⁹ 직장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나 직장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로 전락하여야 하며, 조직이동은 국가파견장을 받아 당적, 식량, 군사, 거주

³¹⁸ 새터민 박○○,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3일.

³¹⁹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0일.

관련 이동 문건을 해당 이동지에 제출하고 이동할 도시에서 승인번호를 받아야 한다.³²⁰ 하지만 이직하기 위해서는 지배인, 당비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비서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우며, 지도원에게 뇌물을 주어야 해결된다고 한다.³²¹ 그러나 최근 공장에서 월급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직업 이동을 허용하기도 한다는 증언도 있다.³²²

중학교³²³를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가 직장배치를 담당한다. 전문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도, 또는 시 행정경제위원회가 직장배치를 담당하고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중앙당 간부과의 조정을 받는 대학당국이 담당한다. 사병 출신의 제대군인은 출신지역 시·군 행정경제위원회가 담당하고 군관 출신은 시·군 당 간부과가 담당한다.

당 및 국가의 직장배치에서 선발 기준은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는 당성 및 출신성분, 또는 가족적 배경이다. 성분이 나쁜 학생들,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 유일사상체계를 위반한 집안, 6·25 당시 가족이 월남하거나 북한정권에 반대하여 치안대에 가담한 집안, 지주집안 출신의 학생들은 농장·탄광 등 힘든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 간부의 자제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된다. 그러나 2002년에 탈북한 새터민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에는 성분이 거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자들은 당성이나 출신성분을 따지지 않고 공장, 기업소 등의 수요에 따

³²⁰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9일.

³²¹ 새터민 서○○,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1월 11일; 군 노동과에 TV나 담배 등을 제공하고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월 29일.

³²² 새터민 황○○,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7월 4일.

³²³ 2002년 9월 1일 이후 북한의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중학교'가 '중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배치하는 편이라고 한다.³²⁴

북한에서의 직장배치는 안면관계, 뇌물수수에 따라 당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증언도 있다. 대학졸업자의 경우에 전공과 무관하게 안면관계, 또는 뇌물수수에 따라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무역기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안면배치, 뇌물배치와 같은 간부사업 때문에 북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고 한다.³²⁵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유린되는 가장 흔한 예는 직장배치에 있어서 ‘무리(집단)배치’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무리배치’란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탄광 및 각종 건설공사장 등 3D업종이나 인원이 부족한 직장과 작업장에 인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북한사회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자 북한당국은 제대군인들과 중학교 졸업생들을 탄광·건설현장 등에 집단배치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김정일의 ‘친필서한’을 보내고 ‘충성의 결의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2001년 9월 제대군인들과 중학교 학생들이 ‘라남의 봉화’의 발원지인 함북 청진시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통나무산지인 자강도 랑림군, 평양방직공장에 집단으로 배치되었다. 북한당국은 이들 진출자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환송행사도 크게 열어 축하해주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취하는 강제적인 배치”라고 새터민들은 전하고 있다.³²⁶ 2002년 9월에도 ‘7월6일철도공장’에 제대군인들을 무리배치하였다.

무리배치는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비준을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³²⁴ 새터민 홍○○,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12월 20일.

³²⁵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3일.

³²⁶ 『연합뉴스』, 2001년 12월 13일.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데다 통제도 엄격해 일단 여기에 포함되면 권력 있고 돈 있는 집안의 자녀라고 해도 빠질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간부들이 무리배치에 속한 자녀를 빼돌린 사실이 알려질 경우 처벌이 가해질 뿐 아니라 자녀를 집단배치지로 복귀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북한당국은 집단배치지에 가지 않는 현상을 미연에 막기 위해 식량배급증명서, 공민증(주민등록증), 노동당원증 같은 신원서류 공문을 배치직장에 일괄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물론 퇴거 전입수속까지 집단적으로 처리한다.

집단배치에 따른 불만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배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을 수 없다. 직장에 배치된 후에는 자기의 적성에 따라서 직장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직장을 무단 이탈하면 식량을 비롯한 모든 생필품 배급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북한당국의 직장이동 불허는 노동력의 유동으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을 방지하고 노동력의 완전 장악을 통해 계획경제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직장을 통해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심리적인 복종과 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엄격한 노동법령이나 배급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직업구조 및 직업의식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뇌물을 제공하여 퇴직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식료·유통 부문으로 직장을 이동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³²⁷ 직장을 이동하고 싶을 경우에는 공장, 기업소의 당비서, 또는 시(군) 노동과 지도원에게 담배, 텔레비전 등의 물

³²⁷ 새터민 윤○○,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12일.

품을 뇌물로 주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한다.³²⁸ 또한 직장근무보다 장사를 원할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직장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장마당에 나간다고 한다. 한 예로 청진 지역의 경우,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공장, 기업소는 가동이 중단되고, 직장인들은 출근하면 양어장이나 소금밭 건설에 투입되는 등 노임과는 관계없는 일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됨에 따라 직장에서도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개별적 장사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한다.³²⁹

한 새터민은 직장을 수없이 많이 옮겨다니다가 결국은 남한으로 오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배를 빌려서 어업을 하다가 그 배를 몰고 남한으로 오기까지 하였다.³³⁰ 북한에서 국가에 의한 직업배치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란 교육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된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교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장학제도의 시행 등)을 국

³²⁸ 직장인들 가운데 30~40%는 당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직장을 이동하며, 뇌물을 많이 받는 부서는 특히 조직부, 간부부, 외화부 등이다. 새터민 손○○,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4일.

³²⁹ 새터민 홍○○,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12월 20일.

³³⁰ 새터민 손○○,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4일.

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은 인격을 계발시키고 인권과 기본자유를 존중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6조). 국제인권규약 A규약에는 체약국은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자유사회에의 효율적 참여, 민족 및 인종·종족·종교간의 이해·관용 및 친선의 증진,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3조).

북한헌법에도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73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북한은 선진적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해 모든 공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완전하게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³³¹ 북한의 교육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해 왔으나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는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 북한헌법에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는 교육목표가 명시되어 있다(제43조).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교육목표 아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사상적 요새’ 점령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1975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11년 무상의무교육제’나 1977년에 제정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9.5)는 공산주의적 인간교육을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또한 북한은 1999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교육법’을 제정하였으며, 교육법은 북한 교육사업에 있어 지침서로서 기능하고 있다.

북한의 전반적인 교육체계는 주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그 집행과

³³¹ 북한의 『제2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2002. 4) 참조.

정을 지도·감독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과학교육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다. 행정적 집행기관인 내각의 교육성은 당이 결정한 교육정책의 집행과 기타 교육행정을 담당한다. 교육성 산하의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각급 학교의 교육업무를 지휘·감독한다.

북한의 기본학제는 유치원 2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7년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 수업 연한을 3.5(김책공대)~4년(김일성대)으로 축소 조정하였다.³³²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연구원 3년 및 박사원 2년이 있다. 이 밖에 특권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기관의 특별학제와 성인교육과 기술교육을 위한 특별학제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학제와 달리 학제상 구분이 없는 ‘혁명학원’(만경대·강반석·해주혁명유자녀학원 등)과 예능·체육학원과 같은 특수학교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2001년 들어 세계 정보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컴퓨터교육, 수재교육을 강조했으며, 2002년 10월 16일자 『로동신문』에서 김정일은 “교육사업에서 실리를 보장하고 실력본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학교에서 컴퓨터교육, 수재교육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해 평양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정치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내용과 질은 개선되지 않은 채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각급 학교의 학생선발은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상성분에 의하여 영향을 크게 받는다. 새터민들의

³³² 북한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초등교육기관인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다.

증언에 따르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도 당성과 출신성분(토대)이 좋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³³³ 상급학교로의 진학희망자가 대학입학을 위한 국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해도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나타나면 성분이 좋고 권세가 있는 학생에게 자연스럽게 밀려나기 때문이다. 간혹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대학시험을 치르더라도 대학에서 면밀히 재실시되는 성분조사에 걸려 주요 대학으로의 입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등 주요 대학은 6촌까지, 일반 사범대학은 4촌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 이후 대학생 모집과정에서 성분조사는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간부와 부유층 자녀들뿐이다. 성분이 좋고 간부가 많은 평양에 대학입학 예정인원이 가장 많이 배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경제난 악화 이후로는 외화를 많이 보유한 계층의 자녀들이 뇌물을 주고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좋은 성분이 아니더라도 뛰어나게 공부를 잘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공계 대학 진학을 허용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교육법 제4장 제29조에는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은 지식을 주고 그들이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 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지식 및 인격함양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으며 소학교와 중학교의 교과과정은 김일성·김정일·김정숙 우상화 및 공산주의 사상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학교 4년 동안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

³³³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월 29일.

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등을, 중학교 6년 동안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현행 당 정책』 등의 과목을 배운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 관련 교과도 신설하여 교육하고 있는바, 소학교에서는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중학교에서는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등을 가르친다. 중학교 4·5·6학년 『공산주의도덕』³³⁴ 교과서에는 ‘김일성교시’, ‘김정일 명언’ 등을 제목으로 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말을 수록해 놓았으며, ‘과외읽기’를 제목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김정숙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방학기간에 김일성·김정일 혁명전적지 및 사적지 답사, 각종 야영훈련 등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교과과정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숙 우상화 관련 과목들에 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새터민은 학생들이 수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은 잘 하지 못해도 별 문제가 없으나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 과목을 잘 하지 못하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상문제로 매우 심한 질책을 당하게 되며 상급학교 진학이나 앞으로의 발전에 결정적 지장을 받게 된다고 한다.³³⁵

북한은 중학교부터 주체사상을 교육시키며, 특히 고학년부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옛 사로청) 조직에 가입시켜 주체사상의 사상

³³⁴ 2004년에 『사회주의 도덕』으로 이름이 바뀜.

³³⁵ 홍순경, “북한 아동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교육과 인권 실상에 대하여,” 『북한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국제적 협력』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2003), p. 39.

체계와 공산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강화와 유일사상 주입을 위주로 하는 북한의 교육은 수업을 하기 전에 노동신문이나 김일성·김정일 저작을 읽는 ‘독보’와 이른바 ‘생활총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수업을 마친 후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는 학교에서의 생활총화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원칙 등에 맞게 학생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잘 했는지에 대해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학습장에 쓴 비판내용을 담임선생님이 검열하기도 한다.³³⁶

최근 북한 교육의 질은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종이 부족 때문에 교과서와 공책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평양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학교에서는 소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1990년대 들어서 새 교과서가 전혀 보급되지 않아 상급학생들로부터 낡은 교과서를 회수, 학급당 각 과목별로 6~7권을 교실에 비치하고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는 5~6명을 1개 ‘학습반’으로 구성한 후 학습반별로 1개의 교과서를 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새터민 청소년들에 따르면 2003년부터는 방침이 떨어져서 대부분의 과목에 대한 교과서를 지급해 준다고도 한다.³³⁷ 학용품으로는 5년에 한 번 만년필, 가방, 연필, 필광 등을 주었으며, 부족한 학용품은 상점에서 구입해 써야 했으나 질이 너무 낮아 사용하기가 불편했다고 하

³³⁶ 새터민 ○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2일, 새터민 홍○○,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17일.

³³⁷ 한국청소년개발원, “‘하나원’ 소재 북한이탈청소년 심층면접결과,” 한국청소년개발원,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확대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p. 218.

는 증언도 있다.³³⁸

북한당국도 1995년의 수해로 인해 2,290개 학교와 4,120개 유치원이 파괴되고 많은 교육자재가 유실되었으며, 제지공장, 교육기자재 및 기타 관련부문 생산단위의 손실로 인해 교육분야에서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³³⁹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기숙사의 식량부족으로 집에서 돈과 식량을 보내주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며, 대학생이 영양실조나 병에 걸려서 집으로 오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또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출석률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출석률 저조와 관련해 북한은 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1998.10.1)를 통해 “대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이는 문제는 청년동맹과 학교 교무행정이 긴밀한 협동 속에서 강하게 내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며 우려를 표하고, “학교 청년동맹 조직에서 교무행정 사업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학생들의 출석률이 낮아도 자기 책임으로 느끼지 않고 있다”며 학교를 질책한바 있다. 대학생의 결석은 이들이 식량구입을 위해 장사에 나서고 있는데 기인한다.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결석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중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³⁴⁰

³³⁸ 새터민 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0일.

³³⁹ 북한의 『제2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2002. 4.9) 참조.

³⁴⁰ 한국청소년개발원, “‘하나원’ 소재 북한이탈청소년 심층면접결과,” 한국청소년개발원,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확대방안 연구』(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p. 185.

전직 소학교 교원이었던 새터민 이○○의 증언에 의하면 함북 경성의 한 소학교에 처음 부임하였던 1995년 당시에는 25~30명이던 한 학급에서 3~4명이 결석하더니, 1996년에 들어서는 7~8명으로 늘어나고, 1997년에는 심할 때는 한 학급에 3명만 출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전직 중학교 교원이었던 김○○의 증언에 의하면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황해남조 재령군 소재 중학교에서는 전교생의 70%가 등교했다고 하나, 최근 탈북한 새터민에 따르면 특히 지방에서는 재학생의 과반수가 결석하여 학교운영이 안되는 학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³⁴¹ 북한의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출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부모들이 식량구입을 위해 집을 장기간 비움에 따라 집을 지키거나 부모와 함께 식량구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사정으로 늘 허기져 있는 학생들은 공부할 여건까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자 공부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

교원도 총 23명 중에 17명 정도 출근하며, 출근하더라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끼리끼리 모여서 식량을 구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실정이다. 교직원들에게도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교단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으며 퇴직해서 장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³⁴² 유치원 교원들도 식량구입을 위하여 학기 중에도 교사 1명에게 합동수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교원들은 식량구입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수업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오전 수업만 실시하고 유아들을 일찍 귀가시키고 장사를 하거나 식량구입에 나서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³⁴¹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3일.

³⁴² 새터민 윤○○,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12일.

Human Rights Watch의 2005년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기근 이래 북한의 많은 지역에서 의무교육제도조차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바 교사와 학생의 다수가 학교공부보다도 식량을 구하는 데에 보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주장하기를 아동노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중학교를 마치는 나이인 16세가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노동연령이지만 중학교 졸업후 1년간의 직업교육을 거쳐야만 생산현장에 나갈 수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노동은 17세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학생들은 농촌에서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협동농장에서 총 2달 반 동안 의무적으로 노력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새터민 청소년들에 따르면 학생들은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농장 밭에 가서 풀 뽑기와 김매기, 모내기, 강냉이 심기, 돌 치우기 등을 한다.³⁴³

북한의 학생들은 이른바 준전시 상황에는 중학교 재학 중에도 징병된다는 증언도 있다. 한 새터민에 의하면 자신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사건’ 당시 고등중학교 재학 중이었으나 징병되어 복무했다고 한다.³⁴⁴

북한은 수업료를 폐지하는 내각결정에 의해 1959년 3월 이래로 모든 교육기관에서 완전무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한다.³⁴⁵ 그러나 북한의 전반적 11년제 무상교육은 학비만 면제될 뿐 학생들은 학교 운영 명목으로 걷어 들이는 현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단체복·교복·교과서 구입비의 일부, 기타 교육자재 구입 및 시설 보수비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

³⁴³ 한국청소년개발원, “‘하나원’ 소재 북한이탈청소년 심층면접결과” 참조.

³⁴⁴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1월 29일.

³⁴⁵ 북한의 「제2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 참조.

교운영비 충당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돈, 물자 형태로 거두는 세 부담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한달에 5~6번 정도 못, 시멘트, 돈, 먹을 것을 거두기도 하고 솔방울, 땀감 모으기 등의 활동도 시키고 있다.³⁴⁶

남한과의 교류가 확대되는 등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구함에 따라 북한의 교육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한의 경제 발전형을 모델로 남한의 경제교과서를 학습하기도 하고 있으며, 서울 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은 평양에 국제 대학원 개설을 합의하고, 한양대와 김책종합대학은 학술 및 기술교류를 체결하였으며, 라진선봉, 금강산 특구지역에서는 북한 관공서, 기업단위로 자본주의 특강이 열리고 있기도 하다.

6. 아동권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2항은 어린 시절에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협약) 전문에서는 아동³⁴⁷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고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

³⁴⁶ 새터민 윤○○,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12일.

³⁴⁷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들은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한다”(제12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법에는 “어린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제6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에 World Summit Conference에서 2000년까지의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에 관한 국가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1999년 4월 아동권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조정위원회(NCRC)를 설립하였으며 아동의 안녕을 위한 제2차 국가행동계획(2001~2010)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1996년 2월 제1차 아동권이행보고서 제출에 이어 2002년 5월,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아동권협약 조항 이행 노력을 명시한 제2차 아동권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4년 6월 1일 유엔 아동권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였다.

아동권협약 이행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은 장기간의 경제제재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특히 어린이 영양관리, 학교시설, 의료시설, 의약품 공급에서의 어려움이 협약이행의 장애가 되고 있으나 보고기간(1995~2000) 동안 공중위생, 복지, 교육 등 아동 관련 부문에 많은 돈을 충당하였으며 아동의 생존 및 발전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1997), 전염병예방법(1997), 교육법

(1999) 등 국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히었다. 또한 모든 아동은 거의 무상으로 식량을 공급받고 있으며 모든 아동에 대해 무상치료가 시행되고 있고, 아동들은 많은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낙관적이며 자부심에 차있다고 주장하였다. 2002년 4월 ‘제2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에서도 북한은 “국가는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서 자라는 세대를 총명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헌법에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제45조), 모든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제47조), 취학전 어린이 전원을 국가와 사회 경비로 탁아소와 유치원에 유치(제56조), 특별 모자보호(제7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육교양법, 교육법, 의료법, 가족법, 민법 등에 다양한 어린이 보호정책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래 북한의 식량난 및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 아동들의 삶의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으며 삶의 질도 크게 저하되었음은 이미 알려진대로이다. 대다수의 아동들이 기본적인 식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으며 굶주림과 가정체제로 인해 수많은 ‘꽃제비’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다. 1998년 UNICEF·WFP의 조사 때보다 나아지기는 했으나 2002년 UNICEF·WFP와 북한당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어린이영양실태 조사에서도 조사 표본 6,000명의 아동들 가운데 20.15%가 저체중, 39.22%가 만성영양장애, 그리고 8.12%가 급성영양장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아동들의 영양상태 악화는 이들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교육시설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는

북한이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제 6조2항)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제27조)는 아동권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동권협약 제24조는 아동의 건강권 이행과 이를 위해 취해야할 조치들로서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은 보고기간에 공공의료권을 침해당한 아동은 없었으며 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아동건강서비스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이 약화되고 일부 아동건강지표의 수준이 낮아졌으나, 자연재해의 여파를 없애기 위한 정부 및 주민들의 노력과 국제적 협력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상태가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건강서비스 수준도 1990년대 초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의료보급체계가 붕괴됨으로써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기초적인 의료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방역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위생적인 식수와 생활환경으로 인해 파라티푸스,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이 수시로 창궐하여 수많은 아동들이 희생되었다. 1999년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총 가족 구성원 중 연령별 사망자 비율에 있어서 10대까지의 아동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 수의 25.7%를 차지한다.³⁴⁸ 이행보고서에

³⁴⁸ 좋은벗들,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연대활동보고서 2003~2004』 (서울: (사)좋은벗들, 2004), p. 261.

서 북한도 수년 연속의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식량 및 약품 부족으로 인해 보고기간에 있어 아동의 사망률이 1990년대 초에 비해 증가했으나 자연재해의 여파를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수년 사이에 아동 사망률이 감소하였다고 밝히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역전, 또는 역 대합실 등지에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은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결과들³⁴⁹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Human Rights Watch의 2005년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많은 북한주민들, 특히 아동들이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질병들을 앓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2004년 4월 용천 기차역에서의 열차폭발사고 때에는 가까운 곳에 용천소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 161명 가운데 어린이가 76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환자들의 60%도 어린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⁵⁰ 2002년 UNICEF·WFP가 북한당국과 함께 전국적으로 실시한 어린이와 어머니의 영양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어머니의 약 1/3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어머니들의 영양실조가 어린이 영양실조의 주요 요인들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새터민들에 따르면 여성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출산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양부족 상태에서 수태함으로써 유산 내지 사산, 또는 미숙아 내지 저체중아 출산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료보급체계의 붕괴로 인해 안전한

³⁴⁹ 강정구·법륜 엮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서울: 정토출판, 1999);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과 북한인권』 (서울: (사)좋은벗들, 2004); 사단법인 좋은벗들 엮음, 『사람답게 살고싶소: 북한난민 1,855명 증언』 (서울: 정토출판, 1999); 좋은벗들 엮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서울: 정토출판, 1999); 좋은벗들 엮음,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서울: 정토출판, 2000); 권혁, 『고난의 강행군』 (서울: 정토출판, 1999).

³⁵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북한어린이 건강실태 보고서: 2004년 보고서』 (서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04), p. 87.

피임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신한 여성들이 잘못된 낙태를 시도하여 아이와 산모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동권협약은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제14조1항)는 것과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아동들은 다양한 서구사상에 대한 접근 및 수용이 불가능하며 오직 김일성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을 신봉해야 한다. 또한 자유의사에 따라 특정 종교를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며 자유로이 단체를 결성할 수가 없다. 북한의 아동들은 소학교 때부터 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 해당조직에 편입되어 의무적으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해 북한은 이행보고서에서 11년의 무상의무교육과 무상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물품공급이 증가되었다고 밝히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악화로 인해 교육조건 및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으며 학교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기자재 파손 및 부족, 교육시설 낙후, 교과서와 공책을 비롯한 학용품의 절대 부족, 굶주림과 식량구입으로 인한 학생들의 결석과 교원들의 비정상적 근무 등으로 인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터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식량난 이후 적지 않은 수의 북한 아동들이 학업을 포기한 채 중국으로 건너가 ‘꽃제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북한내에서도 식량구입을 위해 장마당 장사, 소토지 농사 등 아동의 교육에 방해가 되는 노동을 수행하거나 구걸, 또는 소매치기 등을 하며 ‘꽃제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실태를 반영하듯 새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굶주려 학교에 못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77.4%에 달하며 이 가운데

75.5%가 ‘자주 있다’라고 답하고 있다.³⁵¹ 또한 한 북한이탈청소년은 “공부보다는 다른 돈벌이가 우선입니다. 먹고살기 힘들니까 공부는 뒷전입니다. 학교에 결석을 해도 선생님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한 반에 절반 이상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부해 봐야 성분이 불량하다고 해 대학교도 못갑니다.”³⁵²라고 하며 식량난이 북한 아동의 교육권에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아동권협약 제19조와 제20조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가적 조치를 취할 것과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아동은 국가적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은 어린이 보육에 대해 가족 및 사회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히었다. 북한은 1996년 이래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어린이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바, 이들거리의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북한은 2002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회원국이 제출한 제2차 보고서’에서도 국가는 가정환경을 상실하거나 나쁜 조건에 있는 어린이에 대해 특별보호를 제공하는바, 헌법 제72조에 따라 생계수단이 없는 어린이들은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린이보육교양법 제

³⁵¹ 좋은벗들, 『북한주민의 북한사회·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서울: 좋은벗들, 2000), p. 34.

³⁵² “하나원’ 소재 북한이탈청소년 심층면접결과,” 한국청소년개발원,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확대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p. 210.

18조에는 국가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보육원과 애육원(고아원)에서 돌본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새터민들에 따르면 식량난의 과정에서 부모에 의한 자녀유기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 후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또한 부모의 자녀유기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으로의 탈북을 도모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녀로 인한 생활상 내지 안전상의 부담을 이유로도 발생하였다. 이를 테면 더 이상의 생계유지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오직 살길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는 것뿐이라는 판단 아래 중국생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아이를 버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아이의 울음소리 등으로 인한 국경경비대의 추적을 우려하여 아이를 버리는 부모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³⁵³ 식량난이 초래한 아동유기는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는 행위로도 나타났다. 이는 북한내에서보다도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자녀양육에 부담을 느낀 부모가 양육자로서의 자신의 처지와 자녀의 미래를 고려하여 아이를 원하는 한족 또는 조선족에게 자녀를 주어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부모가 사망해서, 또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집밖으로 나와 떠돌아다니는 북한의 아동들은 이른바 ‘꽃제비’라는 이름으로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꽃제비들을 보호 관리한다는 취지 아래 지역별로 ‘9·27수용소’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나 수용된 아동들의 배고픔조차 해결해주지 못하는 등 이들의 보호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27수용소’란 1997년 9월 27일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꽃제비와 생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모아 관리하는 기구

³⁵³ 좋은벗들 엮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서울: 정토출판, 1999) 참조.

를 말하며 탁아소나 유치원, 또는 여관이나 아파트 등의 빈방을 이용한 시설이라고 한다.³⁵⁴

아동권협약 제22조에 따르면 협약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행보고서에서 보고기간에 난민 지위를 얻으려하거나 정치적, 또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난민으로 간주된 아동은 없었으며, 따라서 실제로 난민 아동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 체류 탈북자들 가운데에는 다수의 18세 미만 아동이 체포 및 북한송환의 두려움 속에서 구걸과 노숙을 하며 꽃제비로 살아가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심한 영양실조와 피부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욕설, 구타 등의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고 일부는 폭력, 절도, 인신매매 등에 연루되기도 한다.

북한은 이행보고서에서 매춘이나 불법 성행위는 형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바 아동권협약의 관련 조항(제35조)을 이행하고 있음을 밝히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대로 식량난 이후 북한과 중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많아졌으며 1990년대 말 이래에는 10대 소녀들까지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한다. 한 예로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 202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1999.7~10) 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의 33.2%가 현재의 남편과 함께 살게 된 이유를 ‘북에서 넘어온 후 붙잡혀 팔려온 경우’라고 답하고 있다.³⁵⁵ 또한 한 북한이탈여성에 따르면 자신의 친척인 16세 된 여성은 북한인 중간매

³⁵⁴ 좋은벗들,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서울: 좋은벗들, 2004), p. 83.

³⁵⁵ 문숙재 외,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서울: 대한가정학회, 2000), p. 147.

개자와 중국 조선족 중간매개자에 의해 한족에게 팔아넘겨졌다고 한다.³⁵⁶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 사이에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생계유지를 위한 매춘이 성행하고 있으며 미성년 여자아이들의 성매매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⁵⁷

아동권협약 제37조에 해당하는 아동의 사법권과 관련해서 북한은 이 행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서도 아동에 대한 체포, 구금, 투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의해 방과 후 집이나 특정구역에 아동을 감금하고 그러한 감금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의 법률은 국제협약, 특히 아동권협약의 기준에 역행하지 않게 개정되어 왔는 바, 한 예로 아동의 사형적용 연령이 17세에서 18세로 조정되었으며, 보고기간에 아동이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대우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체포 송환되어 북한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온 아이들에 따르면, 이들은 취조과정에서부터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하였으며 수용소 생활중에는 구타, 중노동(자기 키보다 훨씬 큰 나무들을 베어 지고 나름), 배고픔 등에 시달렸다고 한다.

2004년 전례 없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두 명도 방북기간에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인신매매, 또한 고문사례들을 포함한 아동의 사법문제, 중국에서 돌아온 아동에 대한 학대문제 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아동권협약 제7조 아동의 국적취득권과 관련해 북한은 어린이는 무국적자일 수 없으며 국가의 보호 없이 방치될 수 없는바, 부모 중 하나가

³⁵⁶ 새터민 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4월 16일.

³⁵⁷ 권혁, 『고난의 강행군』 (서울: 정토출판, 1999), p. 149.

조선인이면 시민권은 자동 부여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므로 이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는 공식적으로 등록될 수가 없다. 또한 중국에서 한족, 또는 조선족과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가 아니라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또는 소개에 의한 사실혼 관계 등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들의 자녀 역시 무국적 아동이 되고 만다. 이들은 국적 취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취학연령이 되어도 학교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IV

주요 사안별 인권실태

1.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 실태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정치범수용소이다. 북한이 정치사상범을 수용하기 위해 많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거나 수용소관리자 및 그 가족으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AI 등 권위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그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다.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가안전보위부 정보원으로 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 김○○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정보는 「요덕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하여 탈출한 강철환·안혁, 「회령수용소」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탈출한 안명철, 1980년대 중반 국가안전보위부 경비대원 이었던 최동철 등에 의해 추가로 제공되었다. 최근에는 1995년부터 1999년 1월까지 요덕 수용소 대속리 8호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한 이영국은 정치범수용소의 생활상을 공개하였다. 2002년 4월에 Digital Globe가 촬영한 제22호 정치범 수용소의 위성사진이 2002년 12월 5일 국내외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으며,³⁵⁸ 2003년 10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는 탈북자의 증언과 인공위성사진을 활용하여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공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³⁵⁹

³⁵⁸ 2003년 1월 15일에는 미국 NBC 방송이 위성사진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보도하였다. <<http://www.msnbc.com/news/859191.asp?0sp=v3z2&0cb=-114130475#BODY>>.

³⁵⁹ David Hawk, *The Hidden Gulag: Exposing North Korea's Prison Camps* (Washington, D.C.: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북한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를 ‘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 ‘이주구역’,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등으로 불러 왔고,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를 ‘정치범수용소’나 ‘형무소’라고 부르지 않고, ‘○○호 관리소’라고 부르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정치범만을 수용하는 교화소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⁶⁰ 각 관리소 마다 체제 유지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죄목의 규정문서 번호나 지역고유번호를 붙인 것이다. 예컨대 ‘요덕정치범수용소’는 ‘15호 관리소’로 불린다. 또한 기록상으로는 조선인민경비대 예하 부대처럼 위장해 놓고 있다. 예컨대 요덕 정치범수용소는 ‘조선인민경비대 2915부대’로 위장되어 있다.

미 국무부가 한국전쟁 당시 노획한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집단수용소를 해방 이후 194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해방 직후에는 악질지주, 친일파, 종교인 등이 수용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로 치안대 가담자가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수용소가 오늘날과 같은 정치범 유배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최창익·윤공흠 등의 반김일성 음모) 이후이다. 황장엽은 ‘통제구역’이 1958년 ‘8월 종파사건’에서 유래하였으며, 처음에는 종파분자만을 이곳에 보내다가 나중에는 반김일성 분자 등 정치범을 수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은 “종파분자들은 머리꼭대기까지 잘못되어 있어 가족들과 함께 산간벽지로 보내 격리시켜 살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1958년 말 평남 북창군 소재 득장 탄광지역에 통제구역이 최초로 설치되었다.

³⁶⁰ 1958년 군사분계선을 통해 남한으로 도주를 시도하다 적발되어 정치범으로 처벌을 받은 김○○은 1960년부터 청진 수성교화소에서 12년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9일.

북한당국은 연안파 등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처형을 면한 종파사건 연루자 및 그 가족들을 산간벽지에 집단으로 수용시켜 특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함과 동시에 반김일성 분자들의 세력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요덕의 15호 관리소는 1969년 김일성의 “간부들을 혁명화할 데 대하여”라는 녹음강연이 있는 후 1969년 말 처음으로 입소가 시작되었다.³⁶¹ 당시 요덕 수용소에는 남한출신 신불출, 일본영화에 출연하였던 강홍식과 그의 가족, 최승희 제자 현정수도 가족들과 같이 수감되었다.

이후 북한은 1966년부터 1년간 주민재등록사업을 통하여 100만 노동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전 주민을 3계층 51부류로 나누는 과정에서 적대계층의 일부를 수용소에 수감시켰다. 당시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사람 중 종파분자 및 반혁명분자 약 6,000명은 인민재판에 의해 처형되었고, 처형에서 제외된 1만 5,000여 세대 및 가족 7만여 명은 내각결정 제149호에 의거하여 산간벽지에 설치된 149호 대상지역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은 이들과 특별히 분리되어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었다.³⁶²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범의 친척들은 산간벽지나 농촌지역으로 쫓겨나 거주를 제한 받게 되었다. 새터민 주○○는 일명 ‘김창봉

³⁶¹ 1970년부터 1978년 12월까지 남편을 제외한 가족들과 함께 요덕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새터민 김○○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9일. 김○○은 처음 수감되어서는 3작업반에 속해있었으며, 당시 1작업반에는 귀국자들이 많았고, 3, 4작업반 사이에 10작업반을 배치하였던 것으로 증언하였다.

³⁶² 오가와 교수는 지금의 정치범수용소는 1960년대 후반 김일성·김정일 유일사상체계 확립과정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가와 하루히사, “북한 정치범수용소,” 조선일보사·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고려대 국제대학원 공동주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1999년 12월 2일.

사건' 연루자 가족 7~8세대가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로 소개되어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전 민족보위상 대장 김창봉은 1969년 2월 인민군 당 제4기 4차 전원회의에서 숙청되었다.

초창기에는 수용소 면적이 한국의 면 단위에 해당하는 1개 리 정도에 그쳤으나, 1973년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3대혁명소조 활동이 시작되면서 수용소와 수용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80년 노동당 6차 대회를 통해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한 이후 세습체제를 반대한 당·군·정 간부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최소한 4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1982년에는 8개 정치범수용소에 약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사회와 격리된 채 종신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이후 1980년대 말 동구의 붕괴로 자유와 개혁의 바람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더욱 늘어났으며, 수용인원도 약 2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수용소는 구 소련의 시베리아 유형장을 능가하는 가혹한 인권유린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상 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³⁶³

정치사상범의 대상 및 처벌

북한은 정치사상범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하여 정치적으로 숙청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 죄목을 붙여

³⁶³ 해리 우는 국제회의 발표에서 19년간 자신이 수용되어 있던 강제수용소에서 히틀러는 물리적으로 인간을 바꾸려 했으나 사상적 인간개조를 목표로 하는 북한과 중국의 수용소는 더 교활하다고 증언하였다. 해리 우, "북한 정치범수용소" 조선일보사·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고려대 국제대학원 공동주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1999년 12월 2일.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이나 불건전한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를 되살리려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강한 독재를 실시합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에 도전하는 모든 정적들이나 사회주의 건설에 비협조적인 자들을 정치사상범으로 몰아 처형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1990년 북한형법상 정치범을 처벌하기 위한 죄명으로는 ‘국가전복음모죄’, ‘반동선동선전죄’, ‘조국반역죄’ 등이 있었다. 국가전복음모죄는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로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이 이 죄목에 해당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유배되었다(형법 제44조~55조). 이와 같이 북한은 정치사상범을 가혹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 제44조로부터 55조까지 12개 조항에 걸쳐 처벌규정을 명문화하였었다. 반면 2004년 개정 형법에는 반국가범죄를 국가전복음모죄, 테로죄, 반국가선전, 선동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파괴암해죄,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 단절사추죄,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형법 제59조~66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1990년 형법과는 달리 정치범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2004년 형법의 주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³⁶⁴ 예를 들어 국가전복음모죄를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형법 제59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첩죄는 “공화국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

³⁶⁴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제93회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 2004년 12월 9일.

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형법 제 63조)로 명시하고 있다.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심의와 재판절차를 밟아서 교화소에 보내고 있으나, 정치사상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에서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비공개, 단심제로 형벌을 결정하고 있다. 새터민 임○○에 의하면, “1998년 리동명이 러시아에서 한국행을 요구하다가 북에 송환된 후 소식을 알 수 없는데 북한에서는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다”.³⁶⁵ 이와 같이 정치범수용소의 수용과정도 주민들이 알 수 없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새터민 김○○과 탁○○에 의하면 연좌제를 적용하는 범위는 직계에 해당된다고 한다. 남편 쪽이 정치범으로 처벌되면 여자는 자동으로 이혼하여 자기 집으로 가고 여자 쪽 집안이 정치범으로 걸리면 남편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³⁶⁶

새터민 이영국은 정치범수용소를 일인·일당독재체제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하였다는 주민들을 끌어다가 바깥세상과 절연시킨 채 ‘정배살이’를 시키는 곳이라고 말한다. 이영국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고 있는 범죄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정치범죄 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의 가계 및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유포시킨 간부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치를 비난한 사람이 직접적인 대상자가 된다. 둘째, 김정일의 비자금에 조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 대상들이다. 최근에 비자금 조성 관련된 비리로 수감되는 경

³⁶⁵ 새터민 임○○,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9월 7일.

³⁶⁶ 새터민 김○○·탁○○,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11월 30일.

우가 많다. 셋째, 한국방송을 청취하거나 3국에서 한국인과 접촉한 사람들이다. 이와 연루된 자들은 대부분 외교관들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국에 친척방문 차 갔다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에 연 계되었다가 발각되어 수감된 자들도 늘고 있다. 넷째, 군 간부들이 주변의 지방 유지들과 함께 술판을 벌여놓고 ‘친목회’ 같은 것을 유지하다가 정치범으로 수감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친목회나 계와 같은 사적 결사는 일체 허용되지 않고, 이런 요소가 체제위협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리 처형을 내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정부 활동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1995년 8월에 북한군 공군사령부 제3 비행전단의 황주 비행장소속 이철웅 편대조종사 7명이 무리로 잡혀 들어오는 등 반정부 조직체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³⁶⁷

정치범수용소 현황 및 운영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및 자강도 등 동북부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확인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치범수용소에 근무했거나 수감되었다가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에 근거하여 살펴본 실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함경북도 회령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입국한 새터민 안명철³⁶⁸은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산하에만 10개의 정

³⁶⁷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10월 27일.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8일, 새터민 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20일.

³⁶⁸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6년 7월 9일.

치범수용소가 있었으나, 중국 국경에 인접하여 위치가 탄로 난 함북 온성군 2개소³⁶⁹와 평양에 인접하여 비밀탄로의 우려가 있었던 5개소는 폐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10개의 정치범수용소가 평남 개천의 ‘14호 관리소’, 함남 요덕의 ‘15호 관리소’, 함북 화성의 ‘16호 관리소’, 함북 회령의 ‘22호 관리소’,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 등 5개소로 통폐합되었고, 전체 수용인원 약 20만 명도 이곳으로 재배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새터민 진○○에 의하면 본인이 군복무시 상급지도원의 처제가 죄수관리 안전원을 면회하러 왔을 때 요덕 관리소까지 태워주었다고 한다.³⁷⁰ 또한 새터민 심○○은 안전부 후방물자를 싣고 오다가 동료 안전원을 만나기 위해 요덕군 인화리 소재 요덕관리소를 방문하였다고 한다.³⁷¹ 새터민 엄○○에 의하면 함경북도 회령과 함경남도 단천에 정치범수용소가 있으며, 새터민 심○○은 당일꾼들만을 수용하는 평남 북창군 득장리 소재 제18호 관리소가 있다고 증언하였다.³⁷²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수용시설이 폐쇄되고 수감자들이 다른 수용시설에 분산 배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³⁷³ 새터민 강철환과 이순옥은 98년 2월 2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에서 현재 약 2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미 국무

³⁶⁹ 새터민 김○○에 따르면, 온성의 12호 관리소는 1987년 해체되고 4·25 담배농장이 건립되었다.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11월 30일.

³⁷⁰ 새터민 진○○,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9월 7일.

³⁷¹ 새터민 심○○,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2일. 데이빗 호크는 『감춰진 수용소』에서 18호 관리소는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인민보위성 소속 경비대의 관리하에 있으며, 14호 관리소에 수감된 범법자의 가족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³⁷² 새터민 엄○○,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6월 29일.

³⁷³ 예를 들어 함남 단천군 대흥리 소재 제77호 교화소가 1982~1983년경 신의주로 이동하고, 관리소로 변경되었으며, 여기에 황장엽의 친척들이 기차로 이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언이 있다. 심○○,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2월 15일.

부도 2004년 2월에 발표한 「2003년 각국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15만~2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치범수용소의 전체규모와 위치는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³⁷⁴

안명철은 정치범수용소들이 대부분 오지나 탄광지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승호리수용소’(1991.1 폐쇄)의 경우처럼 비밀탄로와 노출방지를 위해 지하감옥 형태로 설치된 곳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승호리수용소’와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는 정치범 본인만이 수용되는 1급 정치범수용소라고 밝혔고, 이 외에도 국가안전보위부 ‘3국’ 내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여론이 높아지자 이창하 당시 조선인권연구협회 서기장은 1995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AI의 조사단을 초청하여 ‘사리원교화소’를 방문케 하였다. 북한당국은 AI 조사단원에게 북한의 전체 죄수는 800~1,000명이며, 이들은 3개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정치범 240명은 ‘형산재교화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새터민들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완전통제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화구역’이다.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결

³⁷⁴ 새터민 김○○은 요덕수용소의 인공위성사진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주목하자, 북한당국이 요덕수용소의 수감자를 함남덕천수용소로 이주시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9일.

국은 수용소 내에서 죽게 된다. 따라서 완전통제구역의 수용자들에게는 사상교육을 시키지 않고 채광 및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시킨다.

혁명화구역은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수감되는 정치사상범은 일정기간(1년 내지 10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출소 시에는 수용소 내의 생활상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오는 데 이를 위반하면 재수감된다.

이들은 강제수용소에서 출소된다고 해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하층 생활을 하게 되며, 국가안전보위부의 최우선 감시대상이 되어 직업·여행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다.³⁷⁵ 그리고 이들이 출소 후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10년 가중된다.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중 함남 요덕의 ‘15호관리소’만이 유일하게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완전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다.³⁷⁶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수용소는 15호 관리소 내의 혁명화구역 뿐인 셈이다.

이영국이 수감되었던 대숙리 8호 구역은 1999년 1월 당시 약 900명 가량이 수용되어 있었고, 이 중 독신여성이 한 80명가량 섞여 있었다. 이영국이 수감되었던 기간인 1995년부터 1999년 1월까지 총살과 구

³⁷⁵ 새터민 김○○(가명)에 따르면, 인민무력부 외신국 통역관이던 고○○는 1989년 러시아유학생 사상검토과정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되어 1989년 5월부터 1994년 2월 까지 요덕수용소에서 수감 후 청진제강소 노동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11월 30일.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9일.

³⁷⁶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데이빗 호크는 『감춰진 수용소』에서 평남 북창리 소재 18호 관리소에도 소규모의 ‘혁명화구역’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타로 죽거나 굶어죽는 사람이 계속 발생해 슬한 인명피해가 났는데도 수감자의 수는 늘어만 갔다고 증언하였다.³⁷⁷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002년 2월 9일 도쿄에서 개최된 제3회 북한인권·난민국제회의에서 ‘7인의 탈북자 그후’라는 제목의 비디오에서 1999년 1월 중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후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어 중국을 거쳐 2000년 1월 북한으로 강제송환 됐던 7인 중 1명인 김은철씨가 요덕소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³⁷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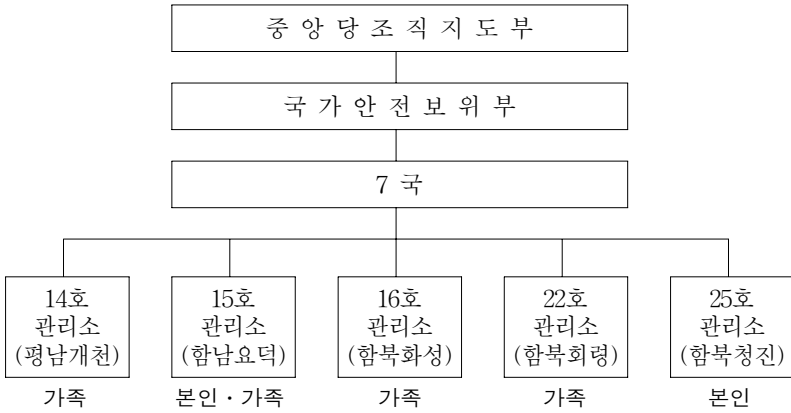
혁명화구역에는 대체로 북한의 엘리트와 조총련 간부와 인연이 깊은 북송교포나 그 가족들이 수용된다. 북한당국은 이들을 수용소에 수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가한 뒤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순응케 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사상범들은 모두 종신수용소에 수감된다. 새터민 안명철과 강철환의 증언에 따르면, 종신수용소에 수감된 사람 중 극히 일부는 종신수용소에서 혁명화구역으로 이감되기도 한다. 이영국은 출신성분에 따라 그 수용기간과 출소 가능성 등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³⁷⁹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은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되는 경우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³⁷⁷ 새터민 이영국,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10월 27일, 새터민 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20일.

³⁷⁸ 『NK 조선일보』, 2002년 2월 10일.

³⁷⁹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10월 27일.

<그림 IV-1> 특별독재대상구역관리현황



<표 IV-1> 해체된 수용소

명칭	위 치	해산일시	해 산 이 유
11호	함북 경성 관모봉아래	'89년 10월	김일성 별장건설
12호	함북 온성 창평로동지구	'87년 5월	국경인접, 비밀탄로
13호	함북 온성 종성로동지구	'90년 12월	국경인접, 비밀탄로
26호	평양 승호구역 화천동	'91년 1월	평양인접, 비밀탄로
27호	평북 천마	'90년 11월	이유 불명

* 새터민 안○○의 증언에 따른 수용소 현황 표임.

수용소 조직 및 규모

각 수용소 규모는 보통 50~250km² 정도이며, 각 수용소에는 약 5,000여 명에서 5만여 명까지 수용되어 있다. 수용대상의 선정 및 관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관할지도부 지도하에 실질적으로는 국가안정보위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안정보위부 7국내의

각 수용소에는 관리소장 예하에 정치부, 보위부, 관리부, 경비부, 후방부 등이 조직되어 있다.³⁸⁰

정치부는 보위부원, 경비부대의 사상동태 및 비리를 감시하거나 처벌하는 부서이며, 보위부는 수용자들의 사상동태를 감시하고 이들 중 악질분자들(도주, 살인, 불평분자 등)을 색출하여 처형하거나 또는 보다 강도 높은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리부는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여 각 수용소에 주어진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경비부는 수용소의 외곽경비 업무와 함께 수용소 내부에서 폭동이나 소요 발생시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외에도 보위부원과 경비부원들의 식량이나 부식을 공급하는 후방부와 수용소 내에 필요한 건설용 자재를 공급하는 자재과, 탄광에 필요한 화약을 제공하는 화학과 그리고 재정과, 운수과, 통신과 등이 조직되어 있다. 이들 부서 중 수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는 보위부와 경비부이다.

수용대상 및 절차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는 반혁명분자 색출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관장한다. 수용대상자는 각 지역의 담당보위부 지도원이 색출하며,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의 심사만으로 수용이 결정된다. 평양의 용성구역 마람지구에 있는 ‘마람비밀초대소’가 대표적인 정치범 색출기관이다. 주로 반당·종파분자, 반혁명분자 등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가한 자들은 체제 위해분자로,

³⁸⁰ 인민보안성 소속 경비대 산하에 제18호 관리소(평남 북창군 득장리 소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지주, 종교인, 친일파 및 김정일 후계체제 반대자, 해외탈출 기도자와 그 가족 그리고 불순북송교포 등이 색출대상자에 포함된다. 동구 공산권국가들의 붕괴 이후에는 해외실정을 잘 아는 유학생과 해외근무자 및 출장자 중 주민에게 외국에서 보고들은 것을 유포한 자가 색출대상에 많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수용자도 많다. 예를 들면 고려호텔 안내원이었던 ‘김명준’은 외국방문객의 짐을 운반해 준 대가로 약간의 사례비를 받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간첩혐의로 마람초대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북한당국은 ‘조국배반죄’라는 죄명을 씌워 그를 요덕수용소에 수용하고 3년간 강제노동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북한에서는 “이 세상 힘들어 못 살겠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상점에 비누 한 장, 치약 한 개 파는 것이 없으니 이 곳이 상점이냐”라는 식의 항의 한 마디만 해도 정치범으로 몰려 수용소에 수감된다. 그러나 1990년대의 극심한 식량난 이후 불평불만의 사례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여 붙잡혀 가는 사례³⁸¹는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식량구입 차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남한사람 및 기독교인과 접촉하거나 외부의 정보를 유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 인신매매에 가담한 자들이 정치범으로 체포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³⁸² 어떤 이유로든 일단 정치사상범으로 낙인찍히게 되면 일체의 재산을 몰수당한 후 야간에 전 가족과 함께 수용소로 이송된다. 아무런 사전통보

³⁸¹ 이러한 경우는 흔히 ‘말반동’으로 불리운다.

³⁸²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8월 30일;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2월 15일.

나 재판절차 없이 끌려가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 혹은 친척까지도 이들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³⁸³ 설사 안다고 해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화를 두려워하여 당국에 항의하거나 보다 더 상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들은 어느 날 이웃이 야간에 없어지게 되면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끌려 간 것으로 추측만 할 뿐 더 이상 이들의 행방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수용자 생활실상

정치사상범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우선 공민증을 압류 당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상적인 배급이나 의료혜택 등도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친지들의 면회나 서신연락도 금지되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된다.

일상적으로 수용자들은 동트기 전에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료한 후 보위부원과 작업감독으로부터 인원점검을 받는다. 작업은 5명 1조 단위로 할당량이 주어지는데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해질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간 정도인데 각자 지참한 강냉이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작업 종료 전에 담당 보위부원이나 감독, 인민반장 등이 당일 할당된 작업 목표를 중간 점검하고 목표에 미달된 경우 작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식량난 이전 북한의 일반노동자는 600g의 양을 기준으로 노동의 강도에 따라 쌀과 잡곡이 섞인 배급을 받았으나, 수용소에 수감된 정

³⁸³ 새터민 김○○은 남편이 1970년 정치범으로 관리소로 이감되었으나, 소재를 통보 받지 못하였다.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8일.

치범들은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이보다 적은 양의 배급을 받았다. 가족세대의 경우 성인 1인은 주식으로 1일 강냉이 550g과 부식 물로는 약간의 소금과 주 1회 정도 도토리로 만든 된장을 한 숟가락 정도 배급받았다.

그러나 최근 식량난으로 인해 정치범에 대한 배급량도 줄어들었다. 이영국에 의하면 식량의 배분은 하루 작업량에 따라 1, 2, 3 부류로 나누고, 1부류에 강냉이 삶은 것 160g, 2부류에 140g, 3부류에 100g을 분배한다. 그러나 1996년 식량난이 악화되자 한 끼에 80g씩 공급하고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시켜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갔다고 증언하였다.³⁸⁴ 과거 강철환과 안혁의 증언과 같이 정치범들이 수용소생활을 하고 나면 영양실조로 인해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영국의 경우에 입소 전 74kg이었던 몸무게가 4년 후 출소시에 54kg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독신자들은 주로 막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세대는 흙벽돌, 판자, 거적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집을 지어 살고 있다. 방바닥과 벽은 흙을 이겨 만들기 때문에 실내에는 먼지가 많다. 지붕은 판자 위에 거적을 덮어 만들고, 방바닥은 피나무 껍질로 다다미를 깔아 만든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에는 보온이 제대로 안 된다.

수용소 내에서는 자가 발전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용량이 미미하여 각 가정마다 전구 한 개만 달게 하고 있다. 그나마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두 차례만 전기가 공급되며, 전력은 불을 켜도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하다. 그러나

³⁸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10월 27일.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소는 상급에 속하며, 어떤 수용소는 전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식사시간에만 광솔로 불을 밝히기도 한다.

또한 연료공급도 충분치 않아 취사용 이외에 난방용 연료는 거의 공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겨울에는 온 가족이 한 데 모여 몸을 비비며 추위를 쫓느라고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으며, 추운 날에는 동사자도 발생한다. 식수도 하천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의복 공급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 가족세대에게는 수용기간 중 모포 1장과 상하 누빈 동복 1벌만이 지급된다. 작업복은 3년에 한 벌씩 지급되나 독신자들에게는 이것마저도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감당시 입고 갔던 옷을 출감될 때까지 기워가면서 입는다. 신발은 노동화가 1년에 1켤레 지급되고, 겨울신발인 솜동화는 5년에 1켤레 지급된다. 양말이나 속내의는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 겨울에는 천 조각으로 얼굴·팔·다리를 감아 추위를 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절단하는 사람도 있다.

많은 수용자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영양실조와 심한 육체노동으로 폐렴, 결핵 및 펠라그라병(영양실조) 등의 질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으나 모두 예외 없이 작업장에 동원되고 있다. 작업반장이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판정하는 수용자들은 중환자가 수감되는 요양소로 보내지는데, 이들은 치료해 줄 의사나 약이 없기 때문에 격리 수용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새터민 박○○에 의하면 22호 관리소(함북회령)에서 정치범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철도를 통하여 이송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³⁸⁵ 22호 관리소에서 생산된

³⁸⁵ 새터민 박○○,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9년 10월 20일.

제품들은 수감자들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일반 기업소 생산 제품과는 달리 품질이 월등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⁸⁶ 이렇게 이송되는 생산물이 하루에 석탄 2천 톤, 양곡 2~3톤, 육류 60톤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많은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관리소의 정치범들이 지형을 파악하여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일정한 숫자를 이동하여 수감시킨다고 한다.³⁸⁷

AI는 수용소 규칙을 어긴 죄수들을 가두기 위한 형벌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이곳은 눕거나 서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곳으로 죄수들은 몇 주 동안 이곳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용소의 비인간적인 대우는 수용소의 생활 수칙에 나타나고 있는 바 그 대표적인 예는 일과에서 자기 과제를 완수하지 못 할 때는 급식이 줄어 듬, 3명 이상 조를 지어 다녀야 함, 대소변은 5분 내로 마칠 것 등이다.³⁸⁸

수용소 내 공개처형 현황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실상은 매우 열악하다.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고통 등을 이기지 못하고 탈출하다가 체포된 자, 보위부원에게 반항하거나 보위부원을 구타한 자는 반드시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에 처하거나 총살한다. 강철환·안혁·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이 같은 처형과 작업 중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원은 1개소 당 매년 수백 명에 달한다. 강철환의 증언에 의하면, 폐쇄

³⁸⁶ 새터민 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21일.

³⁸⁷ 새터민 박○○,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9년 10월 20일.

³⁸⁸ 새터민 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1년 10월 27일.

된 승호리수용소에서는 1개월에 3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이영국은 수형소에 갇힌 사람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짐승이라는 표현이 알맞다는 것이다. ‘선생님’의 기분과 감정 상태에 따라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도주를 감행하다 발각되면 시범적으로 공개처형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⁸⁹

한편 안명철은 국가안전보위부 3국 관할의 정치범수용소에서는 비밀처형과 함께 수용소 의사들에 의해 일본의 731부대나 나치 수용소에서 자행되었던 것과 유사한 생체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증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은 젊은 죄수들이 수감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옮겨 지는데 건강하니까 생체 실험소에 갔다고 이해한다는 것이다.³⁹⁰ 현재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들에 대한 생체실험 의혹은 새터민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고 이영국은 남포시 근교 오목리에 생체실험부대가 존재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BBC가 함북회령의 22호 수용소에 새로운 화학무기 실험을 위한 가스실이 설치되었다는 새터민의 증언을 보도하고 있으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³⁹¹ 또한 새터민 이영국은 기억하고 있는 요덕수용소 대숙리 8호 구역에 수감된 15명(이 중 1명 사망)의 명단을 증언하였다.³⁹²

³⁸⁹ 이영국은 4년 동안 15일 내지 30일 마다 1건씩 50여 회의 총살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위의 증언. 새터민 배○○은 요덕수용소에서 1995년 회령출신 2명이 도주 기도로 체포되어 총살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배○○,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20일.

³⁹⁰ 위의 증언.

³⁹¹ 새터민 권○의 인터뷰 시 증언; 『조선일보』, 2004년 2월 1일.

³⁹² 『월간조선』, 2001년 2월호에 새터민 이영국이 제시한 명단은 다음과 같음. (1993년 탈북하여 중국공안에 의해 강제송환된 이후 요덕수용소에서 3년간 수감생활을 한 새터민 배○○이 이원조, 김대성의 소재를 재확인하였음.) 배○○, 통일연구원에서

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20일.)

- ① 이원조(47세) - 수용된 시기: 1996년, 전직: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 죄명: 같은 대사관 안의 참사와 북한의 폐쇄적인 외교정책에 대하여 비난한 것. 이야기 나눈 지 2시간 만에 비행기에 실려 요덕수용소로 들어왔음, 당시 위치: 제3작업반 독립소대에 있음.
- ② 김대성(62세) - 수용된 시기: 1996년, 전직: 리비아 주재 무역참사(원래 외교부 당비서), 죄명: 리비아에 가족이 있을 당시 아들이 한국으로 도망친 죄, 당시 위치: 제1 작업반.
- ③ 김희철(61세) - 잡혀 들어온 시기: 1997년 5월, 전직: 황해남도 무역관리소 소장, 죄명: 경제난으로 북한이 허덕이자 친구들의 술좌석에서 「김정일이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말했다가 잡혀 들어왔음, 당시 위치: 제1작업반.
- ④ 백남칠(42세) - 수용된 시기: 1996년, 전직: 대남 연락소 3호 청사 지도원, 죄명: 중국과 홍콩을 넘나들며 북한 곰열회사(곰 웅담을 뽑아내는 회사)를 세우다가 망친 죄로 모르핀 중독자로 몰려 잡혀 들어 왔음, 당시 위치: 제1작업반.
- ⑤ 김형섭(29세) - 수용된 시기: 1997년도 10월 말, 전직: 사회안전성 하사관(아버지는 평양시 민방위 부장), 죄명: 사회 안전부 하사관 학교 동창생 8명이 모여 북한당국이 자유를 짓밟는 사회이므로 청산해야 된다고 인민무력상, 사회안전상 등 요직 인물들에 대한 테러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됨. 테러 조직 당시 모두 팔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문신을 새겼음(이들 8명도 일제히 붙잡혀 같이 수용소에 들어와 있음. 이 들의 아버지들은 모두 중앙당 부부장, 정무원 부장, 과장들임), 당시 위치: 제1, 2, 3 작업반에 분리되어 생활함.
- ⑥ 김철수(60세) - 수용된 시기: 1995년 말, 전직: 중부 철도국 국장 (형이 정무원 육·해운부 국장을 한다고 함), 죄명: 중국에 중부 철도선 설계도를 팔아먹은 죄, 당시 위치: 오리 기르는 사양 공.
- ⑦ 이철(57세) - 잡혀 들어온 시기: 1997년, 전직: 함남도 태권도 연맹 위원장, 죄명: 식량난과 관련해 「김정일이 백성의 시체 위에 올라선다」고 말하였다가 발각되어 들어옴, 당시 위치: 제2작업반.
- ⑧ 한영춘(34세) - 수용된 시기: 1996년, 전직: 무산광산 노동자, 죄명: 식량난이 들자 동료 3명과 같이 군 복무 당시 연변 핵 동력발전소 정보를 가지고 한국 귀순을 하려고 중국으로 탈출하던 중 붙잡혔음, 당시 위치: 제1작업반.
- ⑨ 김철수(56세) - 수용된 시기: 1998년 11월, 전직: 함북도 무산광산 부지배인, 죄명: 일제시기 광산에 소장되어 있던 금을 발견하고 중국 측과 밀수한 죄, 당시 위치: 제1작업반.
- ⑩ 김옥선(43세) - 수용된 시기: 1995년, 전직: 양강도 해산시 주부, 죄명: 몰래 도살한 소피리를 가지고 중국에 밀수하다가 잡혔음(북한에서는 소가 운수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소를 도살하면 10년 이상 징역에 처함), 당시 위치: 제1작업반.
- ⑪ 이충근(41세) - 수용된 시기: 1996년, 전직: 독일 유학생(아버지가 황해남도 청단군 책임비서임), 죄명: 독일에서 한국대사관으로부터 공작비를 받고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죄, 당시 위치: 제1작업반.
- ⑫ 정현수(31세) - 수용된 시기: 1995년, 전직: 평북도 낙원기계공장 정량원(설계사), 죄명: 중국에 낙원기계공장 설계도를 팔아먹은 죄, 당시 위치: 제1작업반.
- ⑬ 김명화(41세, 1960년 8월 2일생, 일본이름-미쯔비시 다미코, 동생이름은 미쯔비

북송교포 정치범수용소 수용실태

AI의 보고서와 정치범수용소에 함께 수용되었던 새터민의 증언 이외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북송교포의 현황과 실태를 알리는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일본 내 북송교포 가족과 인권단체 등의 노력으로 북송교포들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강철환·안혁의 증언에 의하면, 요덕수용소에 많은 북송교포가 수용되어 있었다. 이곳에는 1974년 초 약 100여 세대 600여 명이 처음 수용된 이후 수용자가 매년 약 100~200세대씩 증가되어 1987년에는 요덕군 ‘구읍 및 입석지구’의 북송교포 마을에만 일가족 약 800여 세대 5,000여 명과 범죄자 300여 명 등 5,30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한편 강철환·안혁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 일본 조총련 간부나 상공인 등은 가족과 분리되어 다른 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이 수감 중 만났던 많은 수용자 중 실종자가 많은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강철환은 1977년 실종된 할아버지 ‘강태휴’(전 조총련 교토본부 상공회장)의 행방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북송교포들은 대개 간첩혐의나 일본 및 남

-
- 시 후미코라 하고 오빠는 까장이라 불렀다고 함이 여자를 일본간첩이라 부르는 바람에 기억이 생생함) - 수용된 시기: 1991년, 죄명: 재일동포들이 귀국 할 때 들어왔다가 일본 니노키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혐의가 잡혀 관리소에 들어왔음. 그 후 1997년도 9월에 용평구역에 끌려 내려갔다 매와 굶주림으로 사망함.
- ⑭ 김옥산(57세) - 수용된 시기: 1992년, 전직: 황해남도 사리원시 상업관리소 지도원, 죄명: 술을 먹고 김일성이가 독재자라고 비난한 죄, 현 위치: 제1작업반(김옥산은 당시 수용소 안에서 쥐와 뱀을 귀신같이 잡아먹는 능수로 소문나 있음).
- ⑮ 김성희(68세) - 수용된 시기: 1975년, 전직: 조선 체육지도 위원회 육상 책임지도원(북한에서 한때 이름 날리던 육상 선수), 죄명: 김일성 부자의 가계에 대해 흥밋거리로 말해보았다가 비난 죄를 뒤집어 씌, 당시 위치: 제1작업반의 돼지 사양 공으로 일하고 있음. 몸이 깡마른 할머니인데도 강단이 있음.

한 상황 등 외부사정을 북한주민들에게 유포하여 내부교란을 획책했다는 죄명으로 잡혀 온다. 그러나 대부분 본인들은 자신의 죄명을 모르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하는 보위부원들은 이들을 ‘반쪽발이’라고 냉대하고 북한주민 출신 수용자보다 더 가혹하게 대우한다. 북송교포들은 북한주민 출신보다 열악한 수용소 환경에 더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 새터민 신○○에 따르면, 1999년 중국 연길에서 일본에 사는 언니와 접촉하였다는 죄목으로 요덕수용소 혁명화구역에 1년 간 수감되었으며 귀국자며 노령이라는 이유로 구타는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³⁹³

2. 납북억류자 실태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790명이고, 이들 납북자중 교육수준, 신체건강 등 활용도를 고려하여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⁹⁴ 납북되어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총 486명(<부록 1> 참조)이다. 납북자 중에는 1997년 최○○·강○○ 납파간첩사건 조사과정에서 1970년 말 북한 납파 간첩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밝혀진 당시 고교생 5명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당국은 휴전 이후 1955년 5월 28일 『대성호』와 어부 10명을 강제 납치한 이후 총 3,692명의 어부를 납북하였다가 3,256명을 돌려

³⁹³ 새터민 신○○,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11월 30일.

³⁹⁴ 귀환 납북자 이재근에 따르면, 봉산 21호와 22호 선원 27명은 해주에서 평양으로 이관되어 어선이 간첩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건강하고 일정수준(고교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부 7인을 선발하여 청진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어부들은 귀환 조치하였다.

보내고 현재까지 435명의 어부를 억류하고 있다. 가깝게는 1995년 5월 30일 『제86우성호』의 어부 8명(납북 도중 3명 사망)을 강제 납북하였다가 1995년 12월 26일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납북 어부들 중에는 선장이 주도하여 위장 납북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납북자들이 월북자로 간주되기도 하였던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1974년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것으로 증언되는 수원 32호의 선원들도 생사여부를 알 수 없어 현재 납북억류자 명단에 남아있다. 납북어선들의 경우 일부어부들이 기록 없이 승선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납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1970년 6월 5일 납치한 해군 I-2정 승무원 2명 전원을 선박과 함께 억류하고 있으며,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 여객기와 함께 납치한 승무원과 승객 중 12명을 억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79년 4월 노르웨이에서 납치한 한국인 교사 고상문과 1995년 7월 중국 연길에서 납치한 순복음교회 목사 안승운을 강제 억류하고 있다. 2000년 1월 중국 옌지에서 함북 보위부 소속 공작원 4~5명과 중국 조선족 류○○ 등 4명 등 모두 8~9명의 납치전문 공작조에 의해 납북된 김동식목사가 회령시 곡산공장(담배공장) 보위부장 지○○에게 인계되었다. 피납탈북인권연대에 따르면, 김목사는 2000년 11월 평양 만경대 초대소에 구금되어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전향 및 협조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다 각종 고문을 받았고, 폐쇄공포증과 영양실조 등으로 탈진상태에서 직장암 등이 악화되어 2001년 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⁹⁵ 피납탈북인권연대 도희운 사무총장

³⁹⁵ 『연합뉴스』, 2005년 1월 6일.

은 “외국의 정보소식통을 통해 김목사의 시신이 평양 상원리 소재 91훈련소 위수구역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997년에 새롭게 밝혀진 납북억류자 김영남·홍진표·이명우·이민교·최승민 등 5명은 그간 실종자로 처리되었다. 김영남(당시 군산 공고 재학)은 1978년 8월 5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홍진표(당시 천안상고 재학)·이명우(당시 천안농고 재학)는 1978년 8월 10일 전남 흥도 해수욕장에서, 이민교·최승민(당시 평택태광고고 재학)은 1977년 8월 전남 흥도 해수욕장에서 각각 실종되었다. 이들 모두는 당시 고교생으로서 방학 동안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북한으로 귀환하던 납파간첩에 의해 납북되었다.

귀환 납북자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밖에도 아직 신원사항과 납치과정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납북억류자가 북한에 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생환 납북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추가 명단을 밝히고 있다.<부록 1> 참조) 또한 동 단체는 2005년 2월 1일 1971년과 1972년에 납북된 36명이 1974년 묘향산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으며, 2003년 귀환한 납북자 김병도는 1981년 원산에서의 3개월 재교육 시 정형래(오대양 62호), 김옥률, 박영중, 박양수(오대양 61호)들을 만났었다고 증언하고 있다.³⁹⁶

³⁹⁶ 『중앙일보』, 2005년 2월 3일.

<그림 IV-2> 납북자 사진



* 출처: 납북자 가족모임 제공, 2005년 2월 1일.

AI가 1994년 7월 30일 밝힌 49명의 정치범 명단 속에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북한은 AI의 발표가 주목을 받자 명단 속에 포함된 고상문(1994.8.10)과 유성근(1994.8.11)을 북한방송에 내보내 기자회견 형식으로 ‘자진월북’을 밝히게 하였다. 또한 새터민 안○○은 남파간첩에 의해 납치된 한국사람들이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납북억류자들 중 일부는 대남방송이나 간첩교육에 이용되고 있다. KAL기 스텐디스였던 성경희·정경숙 등은 대남방송에 이용되어 왔다. 또한 납북억류자들은 남파간첩을 훈련시키는 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안○○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억류자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0여명이 평양 용성구역 소재 ‘이남화 혁명관’에 배치되어 남파

간첩을 교육시키는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남화 혁명관’은 남파 간첩 양성기관인 중앙당 3호청사 내 작전부가 관할하는 ‘김정일정치 군사대학’(1992년 개칭)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실상과 한국에서의 생활방법 등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축소된 한국모형관이다. 또한 북한은 납북억류자들 가운데 일부를 대남사업에 종사시키고 있다. 2000년 6월에 탈북, 귀환한 납북어부 이재근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어부들 가운데 일부는 일정교육을 받은 후 대남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신도 대남간첩교육을 받은 바 있다고 밝히었다.³⁹⁷

그러나 이용가치가 없는 나머지 납북억류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I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납북억류자의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실이 확인된다. 동 위원회가 1994년에 발표한 「북한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는 특별보고서에는 1990년 당시까지 ‘승호리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은 이재환 등 납북·월북자 22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당국은 1996년 9월 24일 적십자사 성명을 통해 1995년 7월에 납북된 안승운 목사가 강제로 납치된 것이 아니라 ‘의거입북’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6년 9월 13일 중국정부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안 목사 납치범 중 1명인 이경춘에 대해 ‘불법 감금 및 불법 출경죄’로 징역 2년과 강제추방형을 판결하였다. 즉, 중국정부는 안 목사 사건이 북한 측에 의한 납치사건이었음을 공식 확인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 사건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북한 측에 안 목사의 즉각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

³⁹⁷ 통일연구원에서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1월 7일.

나 북한측은 아직도 안 목사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제2차 납북이산가족 상봉(2000.11.30~12.2) 때에 평양에서 남측의 어머니와 상봉한 납북(1987.1.15) 동진호 선원 강희근과 제3차 상봉(2001.2.26~28) 때에 역시 평양에서 남측의 어머니와 상봉한 납북(1969.12.11) KAL기 스텐어디스 성경희로 하여금 자신들을 ‘의거입북자’로 밝히도록 함으로써 납북 억류자의 현존을 인정하지 않는 종래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2001년 초 북한은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남측후보자 200명의 재북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회보서에서 1987년 납북된 이재환의 사망사실을 알려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납북자 가족단체는 북한당국에 대해 이재환의 사망 시기와 사망 원인을 밝히고 유해를 송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5차 이산가족 상봉(2002.9.13~18)을 통해 납북(1968.4.17) 창영호 선원 정장백이 금강산에서 남측 어머니를 상봉하였다. 2003년에는 제6차 이산가족 상봉(2.20~25), 제7차 이산가족 상봉(6.27~7.2), 제8차 이산가족 상봉(9.20~25) 시, 납북(1972.12) 오대양61호 선원 김태준, 납북(1967.5.23) 창성호 선원 윤경구, 납북(1987.1.15) 동진호 선원 김상섭이 각각 남측의 어머니를 상봉하였다.³⁹⁸ 2004년 제9차 이산가족상봉(3.29~4.3)에 납북자 유성근이 남측의 형 유형근을 만났으며, 유성근은 납북이후 “통일연구소에서 20여년간 연구사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10차 이산가족상봉(7.11~16)에서도 납북자 3명이 남측가족을 상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한 납북억류자들은 모두 북한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있다.

³⁹⁸ 윤미량, “납북자 관련 대북협상의 경과와 성과,” 국가인권위원회,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2003년 12월 19일.

2002년 9월에 열린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한의 제의에 따라 남북은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6·25전쟁납북자와 국군포로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³⁹⁹는 1952년 10월 간행된 대한민국통계연감(82,959명), 1953년 통계연감(84,532명), 해공 신익희 선생 유품에서 나온 6·25사변 피랍인사 명부(2316명), 1956년 대한적십자사 신고(7034명), 공보처 통계국 작성 6·25사변 피해자 명부(2438명) 등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전쟁 납북자 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생존자 및 유해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동 단체는 2002년 3월 「6·25 사변 피납치자 명부」를 발굴하여, 이를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 연월일, 납치장소, 주소 등 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94,700명의 명부를 발간하고, 이를 인터넷상으로도 공개하고 있다.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탈북자 현황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되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2조 2항). 199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은

³⁹⁹ <<http://www.korwarabductees.org>> 참조.

불안정한 신분상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규모 등 정확한 실태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1999년 10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에 소재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약 10,000~30,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대략 1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중국 현지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탈북자들이 10만~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난민구조단체인 ‘좋은벗들’은 중국 동북3성 2,479개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동북3성에만도 14~20만 명의 탈북자가 은신해 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인 난민위원회(USCR)는 최근 발표한 『세계 난민보고서』에서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가 5만, 북한출신 유랑민이 10만 정도라고 밝혔다.⁴⁰⁰ 2003년 6월 루드 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은 중국지역 탈북자의 규모를 10만여 명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⁴⁰¹

재외 탈북주민의 전체적인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자료중의 하나는 송환된 탈북주민의 규모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책연구소가 동북3성 지역 국경도시를 실사 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송환한 탈북자 수는 1996년 589명, 1997년 5,439명, 1998년 6,3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또한 미국의 난민위원회(USCR)는 1999년 이후 중국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봄 중국이 단속과 송환을 강화 한 뒤 6월과 7월에 6천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⁴⁰²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측이 집계한 탈북 송환자

⁴⁰⁰ 『중앙일보』, 2001년 6월 27일.

⁴⁰¹ 『조선일보』, 2003년 6월 20일.

⁴⁰² USCR, *World Refugee Survey 2002-North Korea* (2002.6.6).

가 연간 6명에 이른다면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탈북자 전체 규모 1~3만 명 추정을 신뢰하기에 무리가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완화되면서 새로운 탈북은 둔화되었으나, 일반적으로 탈북자의 규모는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탈북자는 중국 이외에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 및 한인사회가 존재하는 전 지역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은 관련 민간단체 및 자원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태국 방콕 주재 일본 대사관, 대만, 호주, 미국 등 세계각지에서 망명신청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대부분 체류지역이라기보다는 한국행 또는 최종 희망지역을 위한 경유지역이다. 러시아 지역과 같이 북한 벌목공 및 건설노동자들이 파견된 경우, 근무지역을 이탈하는 탈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지역 탈북자는 현지 이탈자와 중국 등지에서 유입된 인원을 포함하여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⁴⁰³와 몽골 지역은 탈북자의 한국행을 위한 경유지 혹은 대기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입국을 기다리는 탈북자의 경우도 1,000여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⁴⁰⁴

탈북자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러시아 내 벌목장 및 건설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중국으로의 탈출인 경우에는 비교적 이동이 용이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탈북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⁴⁰³ 2004년 7월 말 한국정부가 특별전세기를 통해 베트남 체류 탈북자 468명을 입국시켰다.

⁴⁰⁴ 윤여상, “해외체류 탈북자 현지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동남아시아 체류자를 중심으로” (2002.3) (미발간) <<http://www.iloveminority.com>> 참조.

경우 대부분은 북한으로 귀환하고, 상당수는 재탈북을 시도하여 왔다. 또한 식량난으로 부모를 잃거나 가족해체로 인해 북한 내에서 상당기간 유랑생활(‘꽃제비’)을 해 온 어린이들과 여성의 탈북이 발생하였다.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현지국 공안이나 북한 안전원에게 발각될 경우 북한과 현지국간에 체결된 밀입국자 송환협정에 따라 강제송환 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주민의 가장 유력한 탈출지인 중국·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여 상호인도협정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한당국에 송환하여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1년 장길수 가족 일가가 북경소재 UNHCR 사무소에 들어가서 남한행을 요구한 이래, 2001년에는 북경 등에 소재하는 제3국 외교공관에 들어가 남한행을 요구하는 탈북자가 급증하여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중국주재 해외공관을 새로운 남한행의 통로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을 지원하는 국내외 NGO에 대한 압력을 가중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등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북한에의 안전한 귀국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탈출하여 우리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탈북자들에 대해 관련법률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근 해외공관을 통한 탈북자의 남한행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관련국과 외교적 협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탈출이 증가하고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면서 북한당국은 주민통제를 강화하여 왔다. 북한당국은 1995년 국경지대를 ‘전선시대’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10군단’을 창설하는 등 국경경비를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은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탈북자 체포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과 현지 공관원 등 3~4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편성하거나 ‘국가안전보위부 그루빠’를 현지에 파견하여 탈북자 색출·체포활동을 전개하면서 탈북자들이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시켜 왔다. 또한 북한은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회유성 조치도 취해 왔다.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조국 배반자들의 실태』라는 교육비디오를 통해 “남한으로 귀순할 경우 정보를 캐낸 후 잔인하게 살해한다”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회유성 조치로서 귀환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처벌하지 말라는 지시의 내용을 선전하였다.

북한당국은 송환된 탈북자들을 초기에는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수용소에 특별관리하고, 가족들을 통제구역으로 강제이주 조치하였다. 그러나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자 탈북 이후 체류기간과 탈북 동기에 따라 처벌강도를 달리하여 왔다. 1997년 9월 27일 이후 특정한 경우(보위부 및 사회안전원 집결소에서 관리)를 제외하고는 ‘9.27 구호소’(꽃제비 수용소)에서 일정기간 수용 후 석방하는 등 처벌을 완화하였다. 1998년 2·13 조치 이후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이탈한 주민들을 출신지역별로 분류하여 국경지역 주민들은 가볍게 처벌하고, 황해도 등 내륙지방주민들은 조국을 배신한 자로 규정 정치범으로 처벌하였다. 또한 탈북자 가족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였

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92년 헌법 제86조에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8년 헌법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급증하는 탈북사태에 대응하여 처벌을 완화하였다. 1987년 형법 제47조는 탈북을 조국반역행위로 규정하여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1999년 형법은 탈북행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단순월경행위 즉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117조)고 규정하고, 공화국전복 목적탈출행위는 “공민이 공화국을 전복할 목적 밑에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형법은 구형법의 단순월경행위에서 규정한 국경을 ‘넘는’ 자의 규정을 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법국경출입죄의 법정형을 ‘3년이하 노동교화형’에서 ‘2년이하 노동단련형’으로 완화하였다. 2년의 노동단련형은 1년의 노동교화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형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다는 평가이다.⁴⁰⁵ 2004년 형법 제62조는 ‘조국반역죄’를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4월 개정 형법 제4조(조국

⁴⁰⁵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과 민족반역행위를 누우친자의 처리원칙)는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2004년 7월 동남아체류 탈북자 집단입국이후 조국 전선편지에서 남한입국 탈북자들이 납치유인되었다고 규정하면서, 이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⁴⁰⁶ 국경관리부 문 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 준 국경출입협조 죄(1999년 형법 제234조)를 ‘2년이상 7년 이하 로동교화형’에서 2004년 형법에서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으로 대폭완화하였다. 이는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고, 국경수비대 등이 북한주민의 ‘도강’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⁴⁰⁷ 탈북자들은 비법월경죄이외에도 외국화폐매매죄(104조), 외화관리질서위반죄(106조),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 산 죄(107조), 력사 유적 밀수, 밀매죄(198조) 등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출입국법(1996년 제정, 1999년 개정)은 “공민이 국경지역여행증명서 없이 출입국을 한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출입국법 45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탈북에 대한 처벌에서 정치적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제3국 내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획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탈북자들의 탈북은 귀환 시 정치적 처벌

⁴⁰⁶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 및 조선인권연구협회를 통해 ‘남조선당국자와 사이비 인권단체들’이 미국의 사주에 의해 탈북자들을 조직적으로 유인하여 납치한 것으로 비난하면서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였다.

⁴⁰⁷ 좋은벗들에 따르면, 탈북초기와는 달리 최근에는 북한과 중국 양측의 국경경비대 등 간에 사전 약속을 통해 연계가 되어야만 안전하게 ‘도강’하여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2004년 10월 6일.

이 명백한 경우와 정치적 처벌보다는 단순처벌 후 석방될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개인적인 처벌의 위험을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즉 개인의 출신지역, 출신성분, 연령, 탈북기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귀환의사를 무시한 강제송환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2000년 3월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3개월간의 탈북자 집중수색기간을 설정하여 수색과 강제송환을 강화하였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설에 입각한 것으로 북한 내에서는 처벌이 심하지 않았으나 중국 내부에서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집중단속은 6월 이후 다시 완화되었으며, 이는 북한내부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북한주민들에 대한 독려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새터민 김○○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강 죄’로 회령보위부를 거쳐 온성군 구류장에 수감되었으나 ‘탈북자처벌 완화에 대한 김정일 친필방침’이 발표되어 바로 석방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⁴⁰⁸ 2004년에는 미국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함께 10월부터 2005년 2월 8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였고, 남한입국 탈북자 가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⁰⁹ 이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송환의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다.

국내입국 새터민(북한이탈주민)

2004년도까지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은 총 6,304명이다.⁴¹⁰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은 199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312명을

⁴⁰⁸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11월 30일.

⁴⁰⁹ 새터민 심○○,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9일.

⁴¹⁰ 통일부, 2005년 2월 28일.

기록하였고, 2001년에는 583명, 2002년에는 1,139명, 2003년에는 1,281명, 2004년 1,894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탈북자들의 입국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탈북 동기나 규모, 유형, 연령과 직업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2004년에 국내 입국한 탈북자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66.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출신지역은 대부분 함경도이고, 출신계층은 노동자·농장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에 입국한 새터민들만을 대상으로 탈북 동기를 살펴볼 때 이전에는 성분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는 가운데 막다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탈북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전 가족의 해상탈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식량난으로 인한 곤궁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탈북한 경우가 늘고 있다.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게 된 것은 중국 등 체류지에서의 단속 강화로 인한 신변위협,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유입증가, 기입국한 새터민들의 잔여가족 입국을 위한 경제적 지원, 관련 전문브로커 및 알선단체들의 활동 확대 등에 기인한다.

남한입국 새터민들은 대부분 중국에 장기체류하던 경우로 2003년 입국자의 개인당 평균 체류기간은 3년 10개월이며, 2002년의 경우 평균 체류기간 3년 2개월로 나타난다. 이는 국내입국자들의 탈북의 시점은 유사하며 다만 입국의 기회를 준비하는 체류기간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족단위의 탈북에 따라 연령층도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먼저 입국한 새터민들이 북한의 가족들을 탈출시킨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새터민들의 직업도 아주 다

양해졌다. 황장엽과 같은 고위 간부, 외교관, 의사, 외화벌이지도원, 군인, 학생, 교원, 농민, 노동자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다. 1994년 국군포로 조창호의 입국 이후 장무환, 김복기, 박동일, 손재술, 허판영, 박홍길, 전용일 등 2004년까지 국군포로 총 47명이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이재근, 김병도, 진정팔 등 납북억류자 3명도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북한이탈 배경

북한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탈북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그 이유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이 탈북을 시도해 온 가장 주요한 요인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탈북이 초기에는 식량난으로 생존자체를 위협받던 국경산간지역과 동북부 대도시지역주민들이 먹을 것과 생필품을 찾아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이 국제사회의 지원과 주민들이 장사 등 나름대로의 생존방식을 모색하면서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1998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 이전처럼 단순히 절박한 생존형의 탈북 보다는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탈북하면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돈을 벌어 장사밑천을 마련하여 귀환하거나, 중국에서 취업하여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탈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은 이전 탈북경험을 통해 중국 및 남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하여 가족들이 연차적으로 남한으로 오는 경우도 많

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생존을 위한 탈북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북한에서의 장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한 취업의 의미가 부가되게 되었다.

<표 IV-2> 탈북동기별 현황 (2004.6월 말 현재)

(단위: 명)

구분	생활고	처벌 우려	체제 불만	동반 탈북	중국 정착	가정 불화	기타	계
'00	127	66	52	51	13	2	1	312
'01	293	73	33	171	7	2	4	583
'02	606	93	96	259	37	39	9	1,139
'03	774	80	123	194	46	53	11	1,281
'04.6	463	44	63	148	2	39	1	760
계	2,263 (55.53%)	356 (8.74%)	367 (9.01%)	823 (20.2%)	105 (2.58%)	135 (3.31%)	26 (0.64%)	4,075 (100%)

출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둘째, 새터민들은 기존 북한사회에서 성분에 의한 철저한 차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탈북으로 인한 자신들의 '과오'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탈북이 급증하고 국제사회의 탈북자 인권침해에 대한 압력에 대응하여 북한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면서, 재탈북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송환된 탈북자들을 초기에는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수용소에 특별관리하고, 가족들을 통제구역으로 강제이주 조치하였다. 그러나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자 탈북 이후 체류기간과 탈북동기에 따라 처벌강도를 달리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변방에서 국경지역 당시 사회안전보위부(현

재 인민보안성)로 강제 송환되면, 탈북기간 동안 남한사람 또는 기독교인과의 접촉여부, 남한입국 시도여부, 인신매매 연루 등을 조사 받게 된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치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외의 ‘단순도강자’는 도 집결소로 이송되어 추가 조사를 거쳐 출신지역(군단위)의 인민보안성 사회안전원에게 연락하여 인계해 가도록 한다. 그리고 대부분 노동단련대에서 6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을 받은 후 석방된다.

셋째, 자신들의 탈북경험을 통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와 비교의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삶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탈북(도강)에 대한 처벌이 이전보다는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수색⁴¹¹과 구타⁴¹² 등으로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고 재 탈북을 결심하게 된다. 탈북하여 중국 등에서 생활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은 생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처벌과정에서 불결한 위생상태⁴¹³ 및 영양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통해 이들의 탈북경험이 주위에 확산되기

⁴¹¹ 탈북자가 몸에 지닌 돈을 찾아내기 위해, 속옷까지 벗게 한 후 알몸으로 앉았다 일어섰다 하기를 반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들의 경우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성기에 돈을 숨기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남성안전원이 직접 손으로 검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새터민 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21일, 새터민 심○○,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2월 15일.

⁴¹² 탈북자에 대한 구타는 보위부나 인민보안성의 사회안전원 등에 의한 것이 아니며, 수감되어있는 일반범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 여성 탈북자의 경우는 심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취침도중 같은 호실에 있는 수감자들을 모두 깨운 뒤 집단심문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 자신들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몇 시간동안 집단구타를 당하여, 온 몸에서 피가 흐르고 얼굴이 부어올랐던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5월 17일.

⁴¹³ 화장실과 세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남녀가 같이 있는 감방의 경우에도 감방 내에서 용변을 보도록 되어있다. 새터민 최○○,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21일.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은 중국의 변방대대, 북한 국경지역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에서 조사와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같은 처지의 탈북자들에게 재탈북의 정보를 입수하기도 한다.

넷째, 북한주민들이 국경이동을 새로운 생존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동북삼성을 기반으로 한 조선족 사회의 보호와 지원에 기인한다. 중국 조선족 사회는 매우 강한 민족의식과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문화혁명기에 개인적으로 북한사회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식량난 초기 탈북자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혹은 지역단위에서 상당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종교단체 및 개인들의 간접적 지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⁴¹⁴ 그러나 탈북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탈북자관련 절도, 강도, 살인⁴¹⁵, 인신매매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중국 중앙당국의 처벌압력도 탈북자들의 보호에 상당부분 장애가 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탈북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중국의 농촌지역에서 저임금의 노동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계절노동자로 여성의 경우에는 중국의 조선족 혹은 한족남성들과 매매혼 대상자, 식당 및 유흥업소 취업자, 저임금의 간병인, 가정부로서의 취업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들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단속되어 처벌을 받을 위험은 있으나, 동시에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노동착취 등 자의

⁴¹⁴ 한국의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비밀리에 탈북자들에 대한 선교 및 보호 활동을 하던 단체들은 현지 조선족들의 도움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로 확대될 수 있었다. 일부단체들은 현지 기업을 설립하여, 조선족의 사회복지 사업과 탈북자 보호사업을 병행하고자 하였다.

⁴¹⁵ 좋은벗들에 따르면, 2004년 8월 중순 중국 길림성 용정시 백금향에서 북한국경경비대원 2명이 총기를 소지하고 버스기사들의 숙소를 침입하는 절도 및 인질사건이 발생하였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2004년 10월 6일.

적으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섯째, 탈북여성들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가정생활을 꾸려 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상당수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자의에 의한 결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사실혼관계에서 자녀와 배우자를 두고 있어 강제송환 이후에 재탈북을 감행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당국은 탈북여성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이들의 재탈북을 막기 위해 임신여부를 조사하고, 출신지역으로 넘기기 전에 강제유산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한국정부의 탈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정책이 탈북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주민이 해외공관을 포함,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반인도적 범죄자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보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정부는 이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금 및 임대주택 지급, 교육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사회적응교육, 취업교육, 취업보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조선족, 현지체류 남한 기업인 및 개인, KBS 사회교육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확산되면서,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 선택에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탈북초기에는 북한사회에서 교육받은 남한사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두려움으로 남한입국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나, 중국 조선족 사회의 한국 밀입국 시도 등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될 정착금을 담보로 밀입국주선

조직들을 활용하여 남한 입국을 시도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남한입국자중 가족단위 비율이 증가하는 것에서 보여 지듯이 먼저 입국한 탈북자들이 정착금과 기타 소득을 활용하여 가족들의 국경이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상당부분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탈북주민들은 자신들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중국이나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확인을 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과의 연락통로가 다양하게 열려있고, 이동전화 등을 이용한 북한내 가족과의 직접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가족들의 입국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1993년 이후 입국한 새터민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80명 중 대다수(90.1%)가 가족들의 입국을 위해 정착금과 기타 수입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¹⁶ 일부 새터민들은 가족들의 입국방안을 모색하거나, 직접 중국에 가서 북한을 다녀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 내 탈북자 인권실태

중국 내 탈북자는 대부분은 동북 3성(요녕·길림·흑룡강성) 조선족사회를 근거로 잡역이나 영농지원을 하면서 은신하고 있고, 소수는 태국·미얀마·몽고 등 인접국가로의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국경지역에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난이후 친인척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탈북과 함께 무연고자의 탈출도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과 탈북을 지원하는 경우 ‘국경

⁴¹⁶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관리방해죄'(1997년 10월 개정 형법)로 처벌을 강화함에 따라 탈북자들의 은신이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분상 불안정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하게 이루어져 왔다. 탈북자들은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합법적 거주를 위한 호구(공민증) 및 체류증을 구입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등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탈북자들은 신분상 불안으로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착취당하는 실정이다. 은신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인 현실에서 산간오지에서 양몰이로 일하거나, 벌목장에서 일하기도 한다. 대부분 현지인들이 꺼려하는 힘든 작업을 하면서도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받거나, 혹은 체불임금 지불을 요청하다가 고발하겠다는 협박과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1999년 '좋은벗들'의 발표에 따르면, 일하면서 생활하는 탈북자들 중에서 40.9%는 숙식은 해결 받는 대신 임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임금착취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절도사건이 발생한 경우 의심을 받게 된다.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가 초기에는 농촌 총각들과의 결혼을 주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갈수록 유흥업소(매춘), 조직폭력배 연루 등 강제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중국은 1997년 10월부터 국경관리방해죄로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을 처벌하고 있으며, 국내언론에 인신매매가 보도되면서 중국 및 북한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왔다. 1998년 6월 안도현 지역에서 부녀회장이 중국주민과 결혼한 탈북여성들에게 호구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강제로 송환하기도 하였으며, 두만강유역에서 여성 도강자가 인신매매와 관련된다 하여 현장에서 총살된 경우도 발생하였다.

1998년 10월 28일 중국신문(服務導報와 延邊日報)이 최초로 산둥성(山東省) 윈청현에서 발생한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3,900~4,700위안, 한화 약60만~80만 원에 거래) 및 강제송환 사건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1999년 ‘좋은벗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5.5%, 특히 연변 외 동북3성 지역은 90.9%에 이르고 있으며, 조사된 탈북자들 중 결혼형태의 거주는 51.9%, 특히 연변 외 동북3성 지역은 85.4%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탈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통하여 강제 결혼하여 살아가거나 생존을 위하여 소개 결혼하여 살아가고 있다. 탈북자의 경우 중국 내 ‘결혼’은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또는 소개에 의한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탈북여성들은 팔려가서 감금, 성추행, 폭행, 강요에 의한 매춘 등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⁴¹⁷ 많은 수의 탈북여성 이 심각한 부인과 질병 등으로 고생하면서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탈북여성들의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임신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송환 시 처벌의 위험가중, 출산아의 등록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은 조교(북한국적의 중국거류민)에 의한 밀고 및 특무(북한의 정보원 내지 기관원)와 중국 공안당국의 색출활동에 의해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체포될 경우 북한과 중국이 1960년대 초 비밀리에 체결한 『중국·북한 탈주자 범죄인 상호 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강제 송환된다. 『동아일보』(1996.12.26)가 입수한

⁴¹⁷ 구체적인 사례는 좋은벗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서울: 정토출판, 1999), pp. 60-89 참조.

『<길림성 변경관리조례>선전제강(提綱)』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1993년 11월 『길림성 변경관리조례』가 통과된 이후 1994~95년 동안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탈북자 140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98년 12월 16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탈북자 150명이 중국 吉林省 通化市 공안당국에 검거되어 북한으로 보내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길림성 공안당국은 12월 16일 당일 인계한 20명의 탈북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1백여 명을 적발해 돌려보냈으나, “그들은 배가 고파서 왔으며 정치적인 이유는 없었다” 밝혔다. 새터민 김○○과 최○○는 중국 내 은신 중 동반한 차남 김○철이 행방불명되어 국내입국 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김○○의 행방확인을 요청하였고, 중국 홍십자사는 “김○○이 1997년 말 단둥 부근의 국경에서 북한의 안전기관에 인계되었다”고 통보하여 왔다. ‘좋은벗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시점(1998.12~1999.4)을 기준으로 조사된 마을에서 중국 공안에게 연행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는 연변지역 1,857명, 동북3성 지역 584명에 이른다.

2005년 1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의해 기소된 중국동포 류○○는 북한공작원과 함께 1999년부터 2000년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 길림성과 흑룡강성 체류 탈북자 15명(1998년 탈북한 일본인 처일가족 4명 포함)을 납치하여 북한에 송환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¹⁸

미국의 난민위원회(USCR)은 2000년 6월에 1만 5천명이 강제로

⁴¹⁸ 동 사건에 연루된 북한 회령시 곡산공장 보위부장 지○○는 송환된 탈북자중 일부를 중국에서 공작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김0을 아편장사, 금속 밀매, 인신매매 등의 죄목으로 2001년 6월 회령장마당에서 공개처형하였다.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2월 15일.

북한에 송환되는 등 한 해 동안 최소한 6천명이 송환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1987년 북한과 탈북자 송환협정을 체결했으며, 1999년부터 탈북자를 난민이 아니라 ‘식량유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왕광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 거주 탈북자를 경제적 이주자로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하였다.

국제사회는 1951년 “(난민협약)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난민들의 추방이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난민협약」 제33조).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정치적 인 박해위험으로 인해 탈출한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난민규정은 난민이 그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거나, 특히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국가에 위험한 존재가 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난민협약」 33조 제2항). 그러나 탈북자들이 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헌법 제 32조 2항)하고 있는바, 탈북자들은 송환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난민협약」의 당사자로서 국제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관계국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1년 7월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서 농성 중이었던 북한이탈주민 장길수군과 그 가족 7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보다는 제3국 출국 허용의 형식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2002년에는 국내외NGO들의 지원을 받아 집단적으로 중국주재 외교공관에 진입하여 남한행을 요구하는 기획망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3월 14일 북경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25명이 진입하여 중국의 제3국 추방형식으로 필리핀을 경유하여 남한에 도착하였다. 북경주재 외교공관의 감시가 강화되자, 탈북자들은 선양소재 일본대사관, 미국영사관 등에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5명이 일본대사관에서 중국공안에 강제 연행되는 장면이 언론에 방영되면서 중국과 일본간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등 탈북자문제가 국제적 관심사안으로 부각되었다. 6월 9일 임신부를 포함한 3명이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에 진입하여 남한행을 요구하였고, 6월 13일 북경주재 한국영사관에 진입하려는 탈북자를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중국공안이 한국외교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북경주재 알바니아대사관, 독일학교 등 서방외교구역에 진입하여 남한행을 성사시켰다. 8월 26일에는 7명의 탈북자가 중국외교부로 진입하여 난민인정을 요구하다 체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내 외교공관 진입이 탈북자의 국내입국 통로로 활용되자,⁴¹⁹ 중국은 외교공관에 대한 경계를 크게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영사부로 진입하여 일정한 조사과정을 거쳐 제3국 추방의 형태로 국내입국을 시도하는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영사부가 탈북자로 인해 잠정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북경주재 한국영사부가 사실상 탈북자들의 국내입국 경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탈북자 보호정책이 보호를 요청하는 탈북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남북

⁴¹⁹ <<http://www.msnbc.com/news/859189.asp?0sp=v3a4>>.

관계를 고려하여 탈북을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2004년 12월 한국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문브로커들의 불법적인 행동의 단속 및 탈북자 조사절차 강화와 동시에 국내입국 탈북자의 정착지원을 자활 및 자립의 방향으로 현실화하면서 초기 현금지원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탈북자정책을 재조정하였다.

위와 같은 외교공관을 통한 일련의 기획망명사건으로 외교공관의 경비가 강화되면서, 다국적NGO들은 연대하여 해상을 통한 집단탈출 계획을 시도하였으며 2003년 1월 20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 항에서 78명의 탈북자와 관련인들을 체포하였다. 중국외교부 장치웨이 대변인은 1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 공안당국의 ‘보트피플’체포를 확인하면서 탈북자와 이들을 돕는 NGO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국경없는 의사회 등 관련단체들은 중국이 2002년 12월부터 탈북자 단속을 위한 ‘100일 작전’에 들어가 이미 3,200명을 북한에 송환하였으며, 지린(吉林)성 등에 1,300명이 구금상태에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들이 급증하면서 일본 오사카에 본부를 둔 북한민주화단체인 ‘구원하라! 북조선민중·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는 재중 탈북 고아 돕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탈북 어린이들이 2만 명 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내 북한어린이들은 가족해체로 인해 단신 탈북하거나, 부모동반 탈북 후 부모가 병사 혹은 강제송환 되어 홀로 남게 된 경우로 구걸과 절도로 연명하고 있다. 탈북어린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떠돌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의 경우 강제 송환 시 9·27수용소에 7~15일정도 수감된 후 석방⁴²⁰되는 것으로

⁴²⁰ 2004년 북한형법에는 14세 미만인 자의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알려지고 있으며, 특정경우에는 시범적으로 가혹한 처벌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탈북자문제와 관련 중국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것을 매우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중국 정부는 탈북자문제가 관련국과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3국 추방의 형식으로 탈북자의 남한 입국을 묵인하여 왔다. 또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과정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처벌은 가급적 피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탈북자를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하여’ 처리한다는 방침을 취해 왔다. 초기 탈북자에 대해 양자적 측면으로 파악하여 조-중 양국이 상호 송환에 합의 한 것은 중국 측이 탈북자를 국경을 넘어서는 범법자의 차원에서 파악한 것으로 인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식량문제에 따른 생존권 문제를 인권문제 보다는 ‘일시적 경제적 유민’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탈북자 문제가 국제화되고, 중국 외교정책 및 대외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자 중국의 입장은 국제법 원칙에 원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송환과정에서도 일부에서는 탈북자들이 남한 입국 시도로 인한 중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심문기록을 북한에 인계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탈북자문제로 인한 자국내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 대량탈북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탈북자들이 급증하면서 중국당국은 탈북자들의 절도, 인신매매, 밀수 및 살인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회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여 탈북자들을 송환하고 있다.⁴²¹ 또한 북한이 강제송환 이후 정치적 처벌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탈북

자들은 개별적인 정치적 박해의 위험은 줄었으나 북한 내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밀입국자 송환의 경우로 처리하여서는 곤란하다. 즉, 탈북자들은 북한 내의 극심한 식량난을 피해 탈출한 경우로 정치적 난민(mandate refugee)의 지위를 부여받기는 어려우나, 국제사회의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향유민(displaced persons)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최소한의 일시보호(temporary protection)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이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 따르면, 불법이주자(undocumented migrant)라 할지라도 생명권, 노예 및 강제노동금지,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 금지, 사생활 보호권, 이동의 자유, 사상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시정되어야 한다.

⁴²¹ 중국정부는 탈북자의 밀출입국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중국형법 제318조와 제321조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다.

부록 1

납북 및 억류자 명단

1. 납북 및 억류자 현황

구 분	계	어 부	KAL기	I-2정	해경 863함	기 타	
						국내	해외
납 북	3,790	3,692	51	20	2	5	20
억 류	486	435	12	20	2	5	12

* 상기 통계는 제3국을 통한 미확인 납북억류자는 불포함, 사망 확인자는 포함

** 상기 통계에는 '납북자가족모임'에서 요청한 천왕호('75.8.8 납북) 30명과 관계기관 조사결과 추가된 민간인 2명(장세철, 김동식) 및 해경 863함('74.6.28 납북) 2명을 추가

*** 2000년 7월 제3국을 통해 귀환한 이재근씨('70.4, 봉산22호)를 1970년 통계(어부)에서 제외

2. 연도별 납북억류자 수

연 도	억류자수	누 계	연 도	억류자수	누 계
1955	10	10	1973	6	398
1957	2	12	1974	30	428
1958	23	35	1975	31	459
1964	16	51	1977	3	462
1965	22	73	1978	4	466
1966	2	75	1980	1	467
1967	42	117	1985	3	470
1968	131	248	1987	13	483
1969	21	269	1995	1	484
1970	37	306	1999	1	485
1971	20	326	2000	1	486
1972	66	392			

3. 납북억류자 명단

1) 어부

성 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김순귀	47	경기 용진	'55.5.28	어부(대성호)
김장현	44	"	"	"
박표만	41	황해 해주	"	"
유외택	42	"	"	"
유장화	49	경기 용진	"	"
윤성우	41	황해 해주	"	"
이산음	41	"	"	"
정태현	41	"	"	"
조종일	40	"	"	"
황득식	42	경기 용진	"	"
마승섭	44	강원 고성	'57.11.9	어부(덕길호)
김성주	48	경남 통영	"	어부(해룡호)
박동근	33	전북 남원	'58.4.28	어부(명규호)
홍복동	20	경기 용진	"	"
김영복	20	경기 부천	'58.4.29	어부(평화호)
박영근	32	강원 고성	"	"
김명선	47	경기 연백	'58.4.30	어부(다복호)
김창현	32	평북 철산	"	"
한진용	24	경기 부천	"	어부(풍영호)
박세운	19	경기 강화	"	어부(신흥호)
장순종	18	경남 삼천포	'58.5.14	어부(신복2호)
송상인	49	함남	'58.11.7	어부(신명호)
송성락	52	강원 고성	"	"
신광필	37	함남	"	"
박동준	49	함남	"	어부(금구호)
이용택	46	"	"	"
허 준	45	"	"	"
김범주	18	강원 고성	'58.12.6	어부(여성호)
김여훈	18	"	"	"
김명은	46	경북 울릉	"	어부(하영호)
김윤택	34	강원 고성	"	"
엄광섭	46	경북 울릉	"	"
김개탁	28	함남	"	어부(금능호)
윤승범	42	강원 홍천	"	"
김원로	53	강원 고성	"	어부(광영호)
곽종효	36	"	'64.3.1	어부(보승2호)

성 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곽형주	32	강원 고성	'64.3.1	어부(보승2호)
권오동	34	"	"	"
박태길	31	"	"	"
송은석	48	미상	"	"
이종윤	34	강원 고성	"	"
임귀복	47	"	"	"
최동길	17	"	"	"
최문길	23	"	"	"
최석용	43	"	"	"
최준수	39	"	"	"
박기정	26	경기 강화	'64.7.19	어부(강화호)
한상준	28	"	"	"
문성천	38	황해 장연	'64.7.29	어부(부영호)
김광호	22	경남 밀양	'64.10.16	어부(신성2호)
유한복	20	경기 평택	"	"
최동기	41	경북	'65.5.8	어부(광명호)
이정웅	22	경기 용진	'65.5.31	어부(대영호)
나용열	28	인천 동구	'65.10.29	어부(승리호)
현근화	33	강원	"	"
김분임	61	경기 강화	"	어부(용복호)
문정숙	25	"	"	"
정영남	38	"	"	어부(용미호)
정창규	35	경남 통영	'65.11.15	어부(춘곡호)
천태옥	34	경북 영덕	"	"
김경수	18	강원 명주	'65.11.20	어부(명덕호)
김성만	32	강원 양양	"	"
김장원	16	강원 속초	"	"
김정구	19	경북 영덕	"	"
이병기	16	강원 고성	"	"
이창영	18	강원 명주	"	"
주인복	46	강원 고성	"	"
최영중	17	"	"	"
한동순	26	경북 영덕	"	"
서봉래	43	강원 고성	"	어부(덕삼호)
김태윤	50	미상	'65.11.26	어부(대양79호)
김종욱	28	강원 양양	'65.11.30	어부(행영호)
서석민	18	경남 거제	"	"
황창섭	54	미상	'66.1.26	어부(영농호)
박팔만	17	전남 해남	'66.6.24	어부(대성호)
김대곤	27	경북 경주	'67.4.12	어부(천대11호)
김상수	30	미상	"	"

성 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김영일	23	경남 삼천포	'67.4.12	어부(천대11호)
김장훈	31	경북 경주	"	"
김홍일	25	경남 산청	"	"
남복이	36	경북 영덕	"	"
이정식	34	미상	"	"
장길용	27	"	"	"
장영식	33	"	"	"
정학명	37	"	"	"
최명환	34	전남 완도	"	"
최종등	25	경남 거제	"	"
최효길	29	미상	"	"
윤경구	18	충남 서산	'67.5.23	어부(창성호)
홍승균	16	충남 태안	"	"
이성일	17	전북 옥구	'67.5.28	어부(승용호)
김옥준	25	충남 서산	'67.5.29	어부(태영호)
최창의	19	충남 태안	"	"
문경식	16	전북 군산	'67.6.5	어부(풍복호)
최원모	57	"	"	"
김봉수	27	서울 용산	'67.6.15	어부(부성3호)
이기출	18	경북 칠곡	'67.7.22	어부(정진호)
오원섭	41	강원 고성	'67.11.3	어부(어성호)
이진영	25	"	"	어부(거성호)
김지준	37	"	"	어부(금윤호)
박규채	36	경남 남해	"	"
박락선	28	강원 고성	"	"
이창식	29	강원 고성	"	어부(금윤호)
이태수	32	강원 명주	"	"
장재천	26	강원 고성	"	"
김상준	23	강원 고성	"	어부(해양호)
김성재	39	강원 삼척	"	"
마기덕	26	경남 창원	"	"
박능출	37	경남 거제	"	"
홍순권	19	강원 명주	"	"
김남현	27	강원 고성	'67.12.20	어부(청진호)
김성호	29	"	"	"
기양덕	29	"	"	"
오명복	29	강원 명주	"	"
이정해	48	강원 속초	"	"
이춘식	30	강원 고성	"	"
한해진	40	강원 고성	'67.12.25	어부(광명호)
김주철	29	강원 동해	'68.1.6	어부(경호)

성 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양상을	41	강원 명주	'68.1.6	어부(홍익호)
박복택	21	경남 총무	'68.1.11	어부(행덕호)
서수중	27	강원 속초	'68.3.10	어부(기성호)
강명보	18	경남 통영	'68.4.17	어부(창영호)
김학래	26	강원 양양	"	"
김흥록	16	강원 고성	"	"
이영석	18	경남 남해	"	"
이옥진	43	전남 여수	"	"
이태용	49	강원 양양	"	"
정장백	19	강원 고성	"	"
김용봉	17	강원 고성	'68.4.27	어부(종진호)
윤무술	38	"	"	"
임규철	25	강원 강릉	"	"
정연태	27	강원 삼척	"	"
김정일	32	강원 명주	'68.5.9	어부(신진호)
오성재	37	서울 성동	"	"
김홍균	24	강원 명주	'68.5.23	어부(대성호)
임병혁	40	강원 양양	"	"
한기돌	14	강원 명주	"	"
김재구	21	전남 목포	'68.5.29	어부(춘덕3호)
김명학	47	경북 울진	"	어부(성운호)
김수근	32	경북 영일	"	"
박만복	43	강원 명주	"	"
이상원	42	"	"	"
장창수	35	강원 강릉	"	"
공문익	37	경기 강화	'68.6.1	어부(순덕호)
김경두	34	전남 여천	'68.6.6	어부(부길호)
김길오	32	전남 완도	"	"
김일오	26	전남 여천	"	"
박명옥	16	"	"	"
고주봉	30	전남 영암	"	어부(영신호)
김이배	31	전남 진도	"	"
오판철	32	전북 장수	"	"
최동진	20	충남 보령	"	"
고종현	21	경기 부천	"	어부(덕산호)
김용길	18	전남 해남	"	"
서종술	37	경기 부천	"	어부(덕산호)
이선주	26	충남 당진	"	"
이일남	27	경기 부천	"	"
고준수	25	강원 고성	'68.6.8	어부(풍년호)
김병호	17	경남 김해	"	"

성 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김영욱	13	강원 고성	'68.6.8	어부(풍년호)
김용기	19	경북 예천	"	"
신성욱	26	강원 삼척	"	"
박형중	15	전남 고흥	"	"
이운길	13	강원 고성	"	"
전인만	15	"	"	"
조문호	33	"	"	"
주재근	25	"	"	"
최동일	26	전남 완도	"	"
김도경	23	전남 목포	'68.6.12	어부(영신호)
서용식	27	전남 영광	"	"
김광운	36	경기 부천	'68.6.16	어부(해양호)
김광근	24	경기 웅진	'68.6.17	어부(취영호)
손은주	22	경기 부천	"	"
손철순	19	경기 웅진	"	"
김영구	21	경기 강화	"	어부(복성6호)
유병춘	31	인천 동구	"	"
홍상표	20	경기 강화	"	"
김창현	45	인천 중구	'68.6.21	어부(성북2호)
심광식	28	전북 군산	"	"
김진경	37	경기 웅진	'68.6.23	어부(경흥호)
오남문	30	서울	"	"
이기준	27	경기 웅진	"	"
이일환	41	인천 중구	"	"
김태만	25	전남 광주	'68.6.29	어부(경북호)
이상은	21	경기 강화	"	"
차종석	22	전남 신안	"	"
고종환	16	북제주 우도	'68.7.2	어부(금융호)
김남호	18	강원 양양	"	"
김명희	13	경기 가평	"	"
김용수	15	강원 고성	"	"
윤능산	17	북제주 우도	"	"
윤두찬	39	전북 완주	"	"
이은권	42	경남 울산	"	"
주영삼	17	강원 속초	"	"
함태천	29	강원 고성	"	"
곽도상	13	충북 영동	"	어부(신양호)
김응권	19	경남 통영	"	"
박성문	25	강원 고성	"	"
장 면	14	"	"	"
황두호	18	전북 남원	"	"

성 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김철규	14	강원 고성	'68.7.2	어부(창명호)
선우석	52	서울 성동	"	"
이종범	47	강원 고성	"	"
이춘만	31	서울 성동	"	"
정강열	32	강원 고성	"	"
조규영	13	"	"	"
윤귀남	21	전남 진도	'68.7.4	어부(백구17호)
이영철	27	전남 신안	"	"
김진영	48	경남 울주	'68.7.10	어부(태양호)
조석원	15	전북 김제	"	"
강봉운	64	강원 고성	"	어부(만복호)
박흥식	17	경북 영덕	"	"
장진구	13	강원 고성	"	"
최승복	13	"	"	"
최원수	16	경북 영일	"	"
김상윤	35	충북 보은	"	어부(가덕호)
박종업	55	강원 고성	"	"
이해준	34	충남 부여	"	"
전석구	24	강원 인제	"	"
김남국	20	전남 진도	'68.7.12	어부(덕성호)
김춘식	26	전남 신안	"	"
여인억	46	인천 중구	"	"
이양진	23	전남 신안	"	"
김재욱	47	강원 고성	'68.8.6	어부(대복1호)
한택선	35	"	"	"
황명삼	25	경북 울릉	"	"
강명화	25	경남 남해	'68.8.7	어부(덕수2호)
김광수	25	"	"	"
김인철	17	경남 통무	"	"
엄기만	12	강원 속초	"	"
장을선	49	충북 청주	"	"
정한수	37	경남 진양	"	"
함기남	20	강원 고성	'68.10.30	어부(용명호)
김종우	27	경북 월성	"	어부(해진호)
김이득	22	경북 영일	"	어부(영창호)
임재동	29	경남 거제	"	"
진기봉	22	강원 강릉	"	"
전만수	27	강원 고성	"	어부(어재호)
고순철	29	강원 명주	'68.11.7	어부(양진호)
이영기	22	"	"	"
이태운	25	경북 영덕	"	어부(동일호)

성 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김동주	22	강원 명주	'68.11.7	어부(해승호)
문원표	46	"	"	어부(준호)
이기석	26	"	"	어부(원일호)
안수선	21	경북 영덕	'68.11.8	어부(영덕호)
전도민	17	강원 양양	"	어부(수진호)
정연배	42	경남 진주	"	"
김종순	42	강원 고성	"	어부(풍성호)
한종남	19	전남 진도	'69.5.1	어부(신희2호)
이광원	18	전남 신안	'69.5.5	어부(흥덕호)
이동우	27	충남 홍성	'69.6.10	어부(순호)
임판길	31	전북 옥구	"	"
정흥해	28	충남 보령	"	"
이덕표	37	충남 서천	"	어부(신성호)
정오석	30	전북 옥구	"	"
천문석	38	전북 부안	"	"
최두수	35	경남 남해	"	"
강병일	29	충남 당진	'70.4.29	어부(봉산21호)
김태량	27	전남 완도	"	어부(봉산21호)
엄승영	34	경남 울주	"	"
정영철	15	전남 진도	"	"
최종울	19	전남 강진	"	"
박취만	22	경북 포항	"	어부(봉산22호)
황석균	30	충남 태안	"	"
권혁근	33	강원 속초	'70.6.22	어부(금강산호)
김흥동	14	강원 정선	"	"
오관수	28	광주 광산	"	"
이순봉	28	경북 울진	"	"
김일영	36	경남 마산	'70.6.30	어부(남일7호)
사명남	33	경기 응진	'70.7.8	어부(만복1호)
최상일	36	"	"	어부(만복2호)
민경신	33	"	"	어부(무진호)
변호신	33	"	"	"
장춘빈	47	"	"	"
김상대	28	경남 거제	'71.1.6	어부(취영37호)
김인천	27	경기 응진	"	"
김창덕	19	경남 거제	"	"
박길윤	23	경남 남해	"	"
박동순	38	"	"	"
박정구	34	전북 군산	"	"
박천향	42	경남 남해	"	"
송옥천	29	"	"	"

성 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정목살이	28	경남 남해	'71.1.6	어부(취영37호)
정세울	48	경남 거제	"	"
정완상	19	"	"	"
황영식	50	"	"	"
김재수	26	강원 양양	'71.5.14	어부(창동1호)
강흥기	39	전남 여천	'71.12.25	어부(해행1호)
김봉식	32	경남 통영	"	"
황영천	26	경기 가평	"	"
김정옥	26	전남 여천	'72.1.10	어부(등진호)
김계홍	57	전남 완도	'72.2.4	어부(안영35호)
김달영	36	"	"	"
김소용	28	부산 영도	"	"
김철주	39	경남 남해	"	"
박달모	23	"	"	"
박장현	20	전남 여천	"	"
신태용	27	전남 보성	"	"
위춘환	35	전남 완도	"	"
이상록	19	경북 영풍	"	"
이평일	44	전남 여천	"	"
전승철	22	부산 서대신	"	"
정동배	18	서울 종로	"	"
정봉갑	33	경남 남해	"	"
최부영	19	"	"	"
공순경	41	"	"	어부(안영36호)
김동식	36	경북 칠곡	"	"
김두선	33	경남 남해	"	"
김석만	25	전남 보성	"	"
김일봉	21	경남 남해	"	"
김임권	31	"	"	"
김휘남	23	전남 완도	"	"
동병순	18	경남 남해	"	"
배현호	29	"	"	"
박복만	40	경남 통영	"	"
박상국	26	"	"	"
이흥섭	32	경남 남해	"	"
강여진	16	경기 옹진	'72.5.4	어부(금해11호)
김순식	48	경남 김해	'72.5.12	어부(해영2호)
김정길	30	강원 명주	'72.6.9	어부(유풍호)
남무수	32	강원 평창	"	"
남정열	39	강원 속초	"	"
방승도	37	경남 창원	"	"

성 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배민호	48	경남 진해	'72.6.9	어부(유풍호)
이수석	30	강원 속초	"	"
이원재	32	전남 해남	"	"
임창규	19	강원 명주	"	"
최성현	44	경북 경주	"	"
김영식	21	경남 남해	'72.8.14	어부(금성3호)
송래규	35	경북 영일	"	"
김대봉	31	"	'72.8.21	어부(일진6호)
이석룡	38	경남 거제	"	"
김옥률	17	"	'72.12.28	어부(오대양61호)
김용철	45	경기 수원	"	"
김의준	25	경남 거제	"	"
김일만	17	"	"	"
김종원	47	"	"	"
김천구	39	"	"	"
김태준	17	"	"	"
박두남	38	"	"	"
박양수	14	"	"	"
박영석	34	"	"	"
박영중	22	"	"	"
박용갑	32	경남 남해	"	"
서석기	32	경남 거제	"	"
이공희	20	서울 영등포	"	"
이재명	34	경남 거제	"	"
최영근	49	"	"	"
강소동	29	"	"	어부(오대양62호)
박두현	35	"	"	"
서영구	38	부산 영도	"	"
안수영	37	전북 전주	"	"
유경춘	45	경남 거제	"	"
정건목	20	경남 남해	"	"
정도평	26	경남 거제	"	"
정형래	20	"	"	"
김순남	25	경기 용진	'73.7.27	어부(신진1호)
김영희	47	미상	"	"
나기용	52	경기 용진	"	"
서득수	37	경북 상주	"	"
조순래	32	경기 용진	"	"
조인우	18	"	"	어부(신진1호)
김근식	19	전남 진도	'74.2.15	어부(수원32호)
김생림	49	"	"	"

성 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김월근	26	전남 광주	'74.2.15	어부(수원32호)
김용기	34	전남 진도	"	"
김용길	18	전남 완도	"	"
김종관	23	전남 해도	"	"
박경원	31	전남 진도	"	"
송민경	53	경남 남해	"	"
안병진	28	경북 상주	"	"
유용석	22	전북 완주	"	"
이대홍	20	경북 남해	"	"
이성용	28	전남 영암	"	"
이천석	28	경북 영덕	"	"
정유석	30	전남 고흥	"	"
고광희	34	인천 북성	"	어부(수원33호)
기노석	18	전남 무안	"	"
김용건	27	경북 군위	"	"
김재봉	21	전남 진도	"	"
김종식	27	"	"	"
김현남	24	"	"	"
박남주	36	"	"	"
박종주	45	인천 남구	"	"
백홍선	27	전남 장흥	"	"
임태환	44	부산 영도	"	"
장영환	27	경기 군포	"	"
장종윤	35	전남 진도	"	"
최복열	33	"	"	"
최영철	18	충남 청양	"	"
김두익	45	강원 원주	'75.8.8	어부(천왕호)
고남수	29	"	"	"
고명섭	32	강원 강릉	"	"
권용만	41	대구 수성	"	"
권종덕	62	경남 의령	"	"
김구영	49	강원 강릉	"	"
김찬우	46	"	"	"
민기식	65	강원 동해	"	"
박상원	38	강원 강릉	"	"
최종덕	26	"	"	"
허정수	23	전북 김제	"	"
박시동	33	강원 강릉	"	"
박종선	58	강원 원주	"	"
박정출	39	강원 강릉	"	"
박혜영	52	경남 충무	"	"

성 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우재선	31	강원 강릉	'75.8.8	어부(천왕호)
우재학	38	"	"	"
유지용	58	전북 순창	"	"
윤정순	63	경북 영덕	"	"
윤종수	34	충남 서천	"	"
황규오	38	경기 안성	"	"
이구석	51	경북 영덕	"	"
이기하	52	강원 강릉	"	"
이복우	25	경북 영천	"	"
이상운	28	강원 강릉	"	"
이한석	28	서울 성북	"	"
이해운	21	강원 강릉	"	"
임창웅	52	"	"	"
전극표	54	경북 울진	"	"
최육일	36	강원 강릉	"	"
허용호	27	전북 김제	"	"
최장근	35	경남 통무	'77.5.10	어부(통영호)
김환용	22	전남 완도	'80.1.26	어부(해왕7호)
강희근	35	경기 강화	'87.1.15	어부(동진27호)
김순근	44	전남 여수	"	"
김상섭	35	전남 고흥	"	"
김영현	22	부산 진구	"	"
노성호	25	충북 청원	"	"
박광현	38	경남 함양	"	"
양용식	27	전남 담양	"	"
임국재	32	경북 안동	"	"
정일남	30	전남 고흥	"	"
진영호	26	경남 합천	"	"
최종석	40	부산 사하	"	"
추영수	55	인천 동구	"	"

2) 해군 I-2정 승무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도	당시 직업
권덕찬	22	전남 광주	'70.6.5	군인(해군 I-2정)
김기강	28	강원 원주	"	"
김태중	23	경기 평택	"	"
도종무	22	경북 청도	"	"
맹길수	24	전남 해남	"	"
문석영	23	제주	"	"
박재수	23	경남 밀양	"	"
서금성	22	인천 동구	"	"
신영훈	24	서울 중구	"	"
이덕주	29	경남 진양	"	"
이재영	23	전북 정읍	"	"
임성우	37	경북 의성	"	"
전해열	21	경북 청도	"	"
정광모	23	서울 중구	"	"
정수일	41	"	"	"
정원석	24	부산 서구	"	"
조진오	23	부산 해운대	"	"
조태봉	34	경기 연백	"	"
최응호	25	인천 중구	"	"
함영주	24	서울 중구	"	"

3) 해경 863함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도	당시 직업
진종영	30		'74.6.28	순경
신명선	21		"	전투경찰

4) KAL승무원 및 승객

성 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유병하	37	서울 용산	'69.12.11	KAL(기장)
최석만	37	서울 영등포	"	" (부기장)
정경숙	23	서울 중구	"	" (여승무원)
성경희	23	서울 종로	"	" (여승무원)
김봉주	28	충남 아산	"	승객(MBC 카메라기자)
이동기	48	강원 강릉	"	" (자영업)
임철수	50	강원 양구	"	" (회사원)
장기영	43	서울 종로	"	"
채헌덕	38	서울 성북	"	" (의사)
조창희	42	경기 평택	"	" (무직)
최정웅	31	강원 원주	"	" (회사원)
황 원	32	인천 동구	"	" (회사원 미확인)

5) 기 타

성 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유성근	38	충남 연기	'71.4.5	대사관 노무관(서독)
정순섭	36	"	"	무직()
유경희	7	"	"	"
유진희	1	"	"	"
이민교	18	인천	'77.8.12	고교생(전남 흥도)
최승민	16	경기 평택	"	"
고상문	30	서울 성동	'78.4.13	교사(노르웨이)
김영남	17	전북 군산	'78.8.5	고교생(군산 선유도)
이명우	17	충남 천안	'78.8.10	고교생(전남 흥도)
홍진표	17	경기 안성	"	"
신숙자	43	경북 의성	'85.12	무직(서독)
오혜원	21	"	"	"
오규원	18	"	"	"
이재환	25	경남 마산	'87.7.20	유학생(오스트리아)
안승운	50	경북 안동	'95.7.24	목사(중국)
장세철	51	전남 순천	'99.9.17	무역상(중국단동)
김동식	53	경남 진해	'00.1.16	목사(중국연변)

6) 납북자 가족모임 제공 미확인 납북자 명단

성 명	당시 연령	출생지	당시 직업
박성만	50	부산 영도	선장(길용호)
이덕환	56	"	갑판장(")
김광섭	49	부산 중구	기관장(")
이생기	53	"	어부(")
이고태	22	부산 영등	"
양호근	48	경남 통영	"
김두석	36	부산 영도	"
남정식	33	"	"
서알용	29	부산 사하	무선사(길용호)
정복식	40		어부(")
서태봉			"
김분남			어부(희영호)
이민우			선장(대영호)
김양훈	53		어부(")
김영두	51		"
조민철	54		"
김동호	50		"
김창배*			
탁재용*			
전극표*			

* 귀환 납북자 김병도(대영호 선원) 증언

- 1. 12 EU, 北 어린이 구호에 500만 유로 지원
- 1. 13 국가인권위, 올해 첫 1억 5000만 원의 북한인권 예산 별도 책정
- 1. 13 中, 日 NGO회원과 탈북자 2명 구속
- 1. 13~17 日 외무성 대표단, 방북 남북자 송환 교섭
- 1. 14 국가인권위, 연내 中 연변 등지에서 탈북자 실태 조사, 중장기 국가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추진 계획 발표
- 2. 23 탈북자 8명, 베이징 소재 독일학교 진입
- 2. 25 美 국무부,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
- 2. 29~3. 2 북한인권시민연합·헬싱키재단 주최, 제5회 북한인권·난민 국제회의 개최, 한·미·일·영·프 등 참가(폴란드 바르샤바)
- 3. 3 대한불교조계종 ‘북한사찰 단청불사 추진위원회’, 안청 안료 15통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
- 3. 7 기아대책기구, ‘안전한 食水’ 대북지원
- 3. 13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 평양개최 합의
- 3. 13~15 캐롤 벨라미 유엔아동기금 총재 북한 방문
- 3. 14 美 상원 법사위원회, 탈북자 美 수용 위한 탈북난민 구호 법안 통과 보도
- 3. 15 남북 적십자사, 제9차 이산가족 상봉단 후보자(각 200명) 생사 및 주소확인 결과 교환
- 3. 15~4. 23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개최(스위스 제네바)
- 3. 18 남북, 9차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 교환
- 3. 29~4. 3 제9차 이산가족 상봉 개최(금강산), 1진 방문단 147명(3.29~31)·2진 상봉단 486명(4.1~3)
- 4. 15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대북인권결의안 통과(찬성 29, 반대 8, 기권 16), 북한에 인권 개선과 유엔 특별대표 방문 촉구
- 4. 16 대북 비료지원 첫 항차 출발
- 4. 22 평북 용천역, 대규모 폭발사고 발생
- 4. 24 용천역 열차폭발사고 관련 조선중앙통신 보도-사고원인,

- 피해상황, 국제사회 지원요청
4. 24 국제조사단(유엔 중심), 용천사고 1차 보고서 발표
4. 27 남북긴급구호회담 개최(개성)
용천동포돕기본부 공식 출범
4. 29 北, 제5차 형법 개정, 개인소유권 침해에 대한 처벌 및 인
권 보호 위한 죄형법정주의 강화
4. 30~5. 3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 및 체육행사 진행(평양)
5. 3 남측의료대표단(27명), 제6차 평양의학과학도론회 참석
(평양)
5. 4 대한적십자사, 70여 톤의 용천재해지원 제3차 긴급구호물
자 대북수송
5. 4~9 북·일, 피랍 일본인가족 송환 비공식 협상 개최(베이징)
5. 10 대한적십자사, 제2차 복구 자재, 장비 인천, 단둥항을 통해
북송
5. 12 대한적십자사, 제5차 긴급구호물자 북송
5. 24~25 제4차 남북적십자사실무접촉(금강산)
5. 26~29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 베트남에 체류 중인 탈북
자 실태조사
6. 7 김영남, 적십자·적반월회 국제연맹대표단(단장 마르크
니스칼라) 및 독일·북 의원그룹대표단(단장 하르트무트
코쉬크) 각각 면담
6. 16 유엔경제사회이사회 54개 이사국, 대북인권결의안 승인
6. 23 대한적십자사, 대북지원 포함비료 5천 톤 북송(북측 요구
총 20만 톤의 북송완료)
6. 23~26 굿네이버스 대표단(100여명) 방북, 대북지원배분확인
(평양)
6. 26~29 中 국경경비대표단, 방북 중 국경협력협정 체결
7. 비릿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총회 첫 보고에서
탈북자 '난민' 규정 및 보호와 강제추방 금지 필요성 제기
7. 9 中 법원, 탈북자 지원 한국인 무죄 판결

- 7. 11~16 제10차 남북이산가족상봉 개최(금강산), 1진 방문단 471명(7.11~13) · 2진 상봉단 149명(7.14~16)
- 7. 20 대북식량차관 쌀 40만 톤 중 10만 톤 육로로 북송시작
- 7. 21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美 하원 만장일치 통과
- 7. 23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제11차 회의 개최
- 7. 28 동남아 국가 체류 탈북자, 27~28일에 걸쳐 468명 입국(1진 227명, 2진 241명)
- 7. 29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 대규모 탈북자 입국 비난
- 8. 2 北, 국내 일부 민간인의 김일성 조문 불발과 탈북자의 집단 입국에 반발, 남북 장관급 회담 무산
- 8. 3 北 외무성, 탈북자 468명 집단입국관련 베트남 비난
- 8. 11~12 북·일 납치 실무회의 개최(베이징, 주중일본대사관)
- 8. 17 총련, 민단에 탈북자 지원활동 중단 요구
- 8. 31 北, 탈북지원 동남아국 대사 소환
- 9. 4 北, 국제기구에 탈북자 남한행 방지 요청
- 8. 27, 28 北, 국제기구(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HCR), 적십자국제위원회(ICRC))에 탈북자 남한행 방지 요청 서한
- 9. 15 美 국무부, 국제 종교 자유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北, 기독교인들 생체 실험” 보고, 북한 포함 중국, 쿠바, 미얀마, 이란, 수단 등 5개국을 비종교자유 국가로 재지정
- 9. 25~26 북·일 납치문제 실무협의를(베이징)
- 9. 28 美 상원, 2004 북한인권법안 일부 수정, 만장일치 통과
- 9. 28~10. 9 유엔 식량농업기구·세계식량계획(FAO·WFP) 대표단 방북
- 9. 29 탈북자 44명, 베이징 캐나다 대사관 진입(1명 공안에 체포, 44명 진입성공)
- 10. 4 美 하원, 2004 북한인권법안 재통과
- 10. 15 탈북자 2명, 日, 獨 거쳐 美 입국
- 10. 18 부시 대통령, 2004 북한인권법 서명

10. 22 탈북자 29명(여자 23명, 남자 6명, 7세, 8세 어린이 두 명 포함), 베이징한국학교 진입, 한국행 요청
10. 25 탈북자 20명, 베이징 한국총영사관 진입 시도
10. 26 中, 탈북자 65명과 이들을 돕던 한국인 2명 등 67명 연행, 탈북지원 엄벌 표명
10. 27 中 언론, 탈북자 60여명 체포 확인 보도
10. 28 탈북자 1명, 러시아 주재 美 총영사관 진입
탈북 지원단체, 소속 한국인 2명 석방촉구
11. 2 北 한성렬 유엔주재 차석대사, 후속 6자회담 참가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및 북한 인권법 폐지 요구
11. 9~12 북·일 납치문제 실무협의를(평양)
11. 12 북·일 납치실무회의 11. 15까지 연장
11. 17 아서 진 듀이 국무부 인구·난민·이주 담당 차관보, 북한을 집단망명 허용 대상인 '프라이어리티 2' 국가 지정 방침 발표
11. 23 美, 2005년 탈북자 500명 수용 망명 쿼터제 첫 설정 보도
美 의회, 北인권 관련예산 첫 통과, 대사급 북한인권특사 설치 예산법안에 명시
11. 25~27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관련 적십자 실무접촉(금강산)
11. ~12. 北, 美에 북한인권법 조치 요구
12. 1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에 대해 인권 개선 위한 12개 요구사항 발표
12. 2 日학교 진입 탈북자 중 15명 중국 출국
12. 14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 '김동식목사 납북' 北 공작원 개입 단서 파악 집중 수사
日, 북한 인권법 제정 착수 보도
12. 23 中, 탈북자 외국공관 진입 엄중 대처(류젠차오(劉建超) 中 외교부 대변인 발표)

